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 시련의 극복과 체제의 정비
- 2. 귀족사회의 전개와 동요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1. 시련의 극복과 체제의 정비

1) 목종・현종대의 시련과 정비

고려 穆宗·顯宗代는 귀족사회 체제가 발전되어 가던 시기였다. 成宗代에 성립·정비된 내외관제와 통치체제가 이 무렵 자리를 잡아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왕권과 지배귀족이 원만한 협조를 이루게 됨에 따라 국가를 다스려나가는 귀족사회 체제는 文宗朝에 들어서면서 난숙한 모습을 드러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귀족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극복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목종·현종대에 있었던 시련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시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시련과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 갔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이는 前期의 통치체제가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진통과 시련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됨은 물론, 나아가 귀족사회의 발전과정을 파악하는 첩경이 되기도 할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목종대에는 金致陽 난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정치사태와 이에 따른 정국의 변동이 있었다.1) 따라서 김치양 난을 중심으로 목종대의 정치세력의 추이를 살펴보는 일은 그 선행과제가 될 것이며 목종대의 정치적 시련과 현종의 즉위과정, 그리고 이어진 거란족의 침입과 격퇴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종대 정치는 西京勢力이 담당하여 정계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다. 목종 원년(998) 7월에 서경을 鎬京으로 개칭하여 서경의 우위를 나타내려 한 것도

¹⁾ 李泰鎭,〈金致陽亂의 性格-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韓國史研究》17, 1977).

위의 정계 판도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같은 西京優遇 정책은 서경이 원 도읍지임을 표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서경정책은 국왕 스스로에 의해서라기 보다 모후인 景宗妃 獻哀王后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 이 모후의 출신이 서경 세력의 중심인 黃州皇甫氏란 사실이 그러한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현애왕후는 목종 즉위후 태후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나갔다. 洞州 곧 瑞興 출신으로 태후의 외척인 김치양을 등용한 것은 그 출발이었다고 믿어진다.2)

목종대는 황주 황보씨계의 千秋太后를 중심으로 한 서경 세력이 우세를 유지하면서 定宗代 이래 추구된 같은 척족인 忠州劉氏 및 貞州柳氏 계열과 의 유대도 작용하였다. 이 점은 목종대 宰臣이던 徐熙・韓彦恭・韋壽餘・劉 瑨・康兆・崔沆・蔡忠順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목종은 왕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 가운데서 왕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버리지 않았다. 목종 6년(1003)에 과거제 정비 및 강화를 촉구하는 교서3)를 내린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慶州系 유신 崔彦撝의 손자인 최항이나 近畿地方 호족계 출신으로 보이는 채충순4) 등과 같이 목종대는 서경 세력이 중심이 된 왕후족 계열의 세력과, 성종대 이래의 유교적 관인형으로 양성된 부류가 양 세력으로 병존체제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경 세력이 주도하게 된 목종대 이래의 관인 출신들은 이질적인 존재로 전략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기도 하였다 여기에 목종대 정치적 시련의 단초가 움트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목종대는 정치세력상의 변동은 있었지만, 중앙관제 자체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새로이 진출한 왕후족 계열의 대표적 인물도 기성의 관직체계를 통해 현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가 없던 것은 아니었

²⁾ 김치양은 성종대에 승려로서 태후의 거처인 千秋宮을 출입하다가 "자못 추잡한 소문이 있어" 먼 지방에 杖配되어 있었다. 그런데 목종 즉위 후 곧 불러 들여져 閤門通事舍人의 벼슬을 받았고, 몇 년 되지 않는 사이에 벼슬이 뛰어 올라 右僕 射 兼 三司事에 이르렀다. 김치양 계열의 진출이 대단히 두드러진 것은 '백관의 벼슬이 오르고 못 오르고가 모두 그 손에서 나오고 親黨을 布列하였다"(《高麗史》권 127, 列傳 40, 叛逆 1, 金致陽)는 기록으로도 집작할 수 있다.

^{3) 《}高麗史》 권 3, 世家 3, 목종 6년 정월.

⁴⁾ 내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채충순은 蔡靖의 본관이 陰城임을 감안하여 그가 음성인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李泰鎭, 앞의 글).

다. 목종 8년(1005)에 있었던「外官汰去」의 조처가 그것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성종 14년(995)의 지방조직은 왕 2년(983)에 이루어진 5도호부·12목의 체제에 都團練使·團練使·刺使·防禦使의 州를 보태서 이 룬 형태였다.5) 이들 중 목종 때 태거의 대상이 된 것은 도단련사·단련사·자사의 주로서, 성종 14년에 증설된 것 중에는 방어사의 주 한 경우만 남았을 뿐이었다.6) 그런데 남게 된 19개의 防禦鎭使 주의 소재를 살펴보면, 朔方道의 3개 주(高州-고성, 湧州-덕원, 文州-문천)를 제외하고는 모두 關內道· 浿西道 소속으로 이 시기의 정치적 주도세력인 서경족의 본거지로 나타나고 있다.7) 군사적 측면에서 태거의 조처는 서경 세력 자체의 어떤 이점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보인다.8)

목종 8년 외관태거의 조처가 단행될 무렵 김치양은 천추태후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그 2년 전부터 일을 꾸미고 있었다. 태조의 자손으로 유일하게 남은 大良院君은 이 때문에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대량원군이 삼각산 神穴寺에 유폐된 것은 이에 연유한 것이었다. 그런데 김치양은 목종 12년(1009) 정월에 이르러 더 적극적인 정국 변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후의 거처인 천추궁에 불을 내도록 하였다.9) 김치양은 이 사건을 예상되는 반대 세력의 축출 내지는 약화의 한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10)

그러나 김치양 측의 적극적인 공세가 펼쳐지기 전에 국왕이 아파 누움을 칭탁하여 청정을 일체 폐한 가운데 嬖臣 劉忠正의 밀고로 그의 의도가 알려짐으로써,¹¹⁾ 국왕 측의 대책이 앞서게 된다. 이 때 국왕에게서 入衛의 명을 받은이는 康兆였다. 그는 당시 정국의 형세를 이용하여 왕 폐립의 단행까지 결심하고 대량원군을 맞아 들여 옹립하기 위해 一隊를 따로 삼각산으로 보내는 한편, 자신은 주력군을 이끌고 바로 개경으로 들어와 김치양 일당을 제거하였다.

⁵⁾ 李基白,〈高麗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趙明基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1965;《高麗兵制史研究》,一潮閣,1968,191~194等).

^{6) 《}高麗史節要》권 2, 목종 8년 3월.

⁷⁾ 李基白, 앞의 책, 193쪽.

⁸⁾ 李泰鎭, 앞의 글.

^{9) 《}高麗史節要》권 2, 목종 12년 정월 임신.

¹⁰⁾ 李泰鎭, 앞의 글.

^{11) 《}高麗史》 권 93, 列傳 6, 蔡忠順.

이어 대량원군의 즉위가 확실하게 된 다음 목종을 폐위하여 태후와 함께 충주로 내치고 뒤이어 사람을 보내어 죽이게 하였다.12) 이렇듯 강조와 그 일파에의해 목종이 살해됨으로써 정치적 시련은 일단락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뜻대로 대량원군이 곧 顯宗으로 즉위하게 되고 정치의 주도권은 강조가 장악하였다. 최고의 실력자로 부상한 강조는 中臺使로서 近職을 장악한데다 參知政事로서 재신의 열에 들었으며 吏部尚書까지 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종 2년(1011) 정월 왕의 파천 중에 강조가 피납되니 이로 말미암 아 서경 세력은 위축되었다.¹³⁾ 강조의 피납사건은 상대적으로 많은 非西京勢力이 중요 관직을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같은 사정은 강조가 제거된 뒤같은 왕 3년 2월에 있었던 인사발령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위수여-문하시중, 유 진-문하시랑, 최사위-내사시랑평장사, 최 항-이부상서 참지정사, 박충숙-상서좌복야, 채충순-예부상서 등이 그것인데 여기서 현종의 추종세력이 모두 재신급 인사에 등용되고 있음이 주목된다.¹⁴⁾ 따라서 현종 3년부터의 정치체제는 왕정이 일차적으로 앞세워진 것이 특징인데, 이는 목종대 이래의 서경 세력 중심체제가 외척관계나 군권을 배경으로 했던 것과는 대조가 된다. 그리고 때맞추어 제도적 정비가 단행된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즉 현종 3년(1012) 정월에 5都護・75道安撫使의 制¹⁵⁾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목종 8년(1005)에 태거된 성종 14년의 지방조직과 맥이 닿는다는 점에서 현종대의 정치가 성종대의 체제로의 복귀를 추구하면서 나름의틀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처럼 현종대의 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성종대 것을 추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것은 현종대가 왕권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유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현종대에도 커다란 시련이 계속 닥쳐왔다. 거란의 여러 차례에 걸

^{12) 《}高麗史》 권 127, 列傳 40, 叛逆 1, 康兆.

¹³⁾ 卓思政·朴昇·崔昌·魏從政·康隱 등은「康兆之黨」으로 논핵되어 해도에 유배되었다(《高麗史》권 4, 世家 4, 현종 2년 8월 병진).

¹⁴⁾ 李泰鎭은 "위수여·유진은 서경 세력이기는 하나 주류가 아닌 제휴세력 계열 이며, 또 이때는 이미 연로한 축이어서 그 직위 자체가 예우적인 느낌을 준 다"고 하였다(앞의 글, 108~109쪽).

^{15)「75」}道安撫使는「7州」安撫使의 착오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邊太燮,《高麗政治制度史研究》,一潮閣, 1971, 119쪽 및 河炫綱,《高麗地方制度의 研究》,韓國研究院, 1977, 8~9쪽).

친 침입이 바로 그것이다. 현종 원년(1010) 滾는 당시 강조의 정변을 구실삼 아 그 죄를 묻는다는 이유로 고려를 침입했던 것이다.16) 이는 물론 高麗와 宋의 통교를 막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지만,17) 이렇게 시작된 요의 제2차 침 입은 특히 크나큰 시련을 안겨 주었다. 즉, 요군은 興化鎭에서 순검사 楊規 의 강력한 저항을 받자 通州로 진격하였다. 그리고는 고려의 주력부대를 지 휘하던 강조를 붙잡아 살해한 후 개경까지 함락시켰던 것이다. 이로 인해 현 종은 羅州로 피난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편 요군은 홍화진 ㆍ 귀주 ㆍ 통주 · 서경 등을 함락하지 못한 채 개경으로 곧장 진격한 까닭에 병참선이 차단되어 전군이 위험에 빠질 우려도 많았다. 이에 요군은 고려 측의 정전 제의를 받아 들여 현종이 親朝한다는 조건으로 물러갔다. 그러나 현종의 친 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워하는 강동 6주의 반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요는 또 다시 침략을 감행하였다. 현종 6년(1015)정월부터 요의 대군이 행동을 개시하여 같은 왕 9년(1018) 12월 蕭排押(소손녕의 형)의 10만 군이 쳐 들어옴으로써 침략이 본격화되었다. 이 때 고려는 姜邯贊(상원수)・姜民膽(부 원수)이 거느리는 20만 군으로 대항하였고 같은 왕 10년(1091) 2월에 거둔 ଈ 州大捷은 그 통쾌한 끝맺음이 되었던 것이다.18)

이 무렵 對內 정치적 중요 사실을 보면 우선 주목되는 것은 요의 제2차 침입으로 현종이 나주까지 내려 간 것을 전후해서 佛力의 가호를 빌고자 대장경조판을 시작한 일이다. 이 방대한 사업은 몇 대를 거쳐 문종 때 완성되지만 그대부분은 현종대에 조판되었던 것이다. 이는 현종이 특히 죽은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玄化寺를 크게 짓고 宋代에 새로 조판한 金字大藏經 6천 권을 들여다가 경판을 많이 새긴 데서 짐작된다. 19) 이 경판들(初雕大藏經)은 대구 符仁

¹⁶⁾ 金庠基,〈단구와의 항쟁〉(《국사상의 제문제》2, 국사편찬위원회, 1959), 34·138쪽. 한편 池内宏은〈契丹成宗の高麗征伐〉(《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7, 1920; 《滿鮮史研究》中世篇 2, 吉川弘文館, 1937, 227쪽)에서 그 목적이 고려왕의 입조에 있었다고 하였다.

^{17) 《}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12년 8월에 보이는 소위 問罪書에도 침략의 본 뜻이 나타나 있다.

¹⁸⁾ 귀주대첩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요로 하여금 1차 80만, 2 차 40만 군의 대침입이었던 것을 3차 10만 군으로 줄이게 하고, 서경유수 강 감찬 지휘하에 10년간 20만 군을 양성·대비한 고려의 전략전술이 돋보인다.

¹⁹⁾ 이 분야 연구에 근자 朴相國 등이 노력하고 있지만(〈海印寺 大藏經板에 대한

寺에 소장되었다가 고종 19년(1232)경 몽고 침략으로 불타 버렸지만, 그 사이에 義天의 속장경이 보태져서 현존하는 再雕大藏經을 조판하는 바탕이 되었다. 한 편 현종은 유교진흥에도 관심을 보여 薛聰과 崔致遠을 각각 弘儒侯·文昌侯로 봉하고 처음으로 문묘에 종사하니 동방 유현을 배향하는 시초가 되었다.20)

또 戰後 복구사업으로 이러한 교화적 시책과 더불어 개경의 羅城을 축조한 것이 두드러진다. 국초 이래 개경 궁성은 내성만 있고 외성이 없었다. 이는 외관도 그렇지만 거란 침입 때 방위상 허점이 크게 문제되었다. 이에 강감찬의 건의로 현종 초년에 나성을 쌓게 되었다. 王(李)可道의 감독으로 30만인부가 동원되어 현종 20년(1029) 8월에 완성되니 5년 전에 성립된 5部 35坊344里의 5部坊里制와 함께 고려 수도건설의 일단이 완성되고 중앙집권의 큰 진전을 보인 것이다.

현종대에는 또 국력회복을 위한 경제시책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농사를 권장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농업에만 힘쓰도록 노력동원을 줄였다. 누에치기 외에 말기르기에도 법을 정해 마정의 충실을 기하였다. 과세 감면과 물가 조 절에도 나섰으며 특히 義倉收斂法을 실시하여 역대의 구민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으로 중앙관제와 더불어 지방제도의 更正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고려 전시대를 걸쳐 보더라도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먼저 중앙관제를 보면 현종 13년(1022)에 太子師・保와 관속을 두었는데 이는 태자교육제도의 시초를 이룬 것이며, 이 무렵 太卜監을 司天臺로 개칭하여 천문・역서 등을 관장하였는데 이로써 관제의 내실과 진전을 집작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현종 3년(1012) 東京留守를 혁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왕 9년(1018)에는 4도호8목의 지방제도를 정하였다. 즉 安南(全州)・安西(海州)・安北(安州)・安東(慶州)에 도호부를 두고 廣州를 비롯한 忠州・淸州・晋州・尚州・全州・羅州・黃州 등 오늘날까지도 각기 고장의 중심이 되는 8곳에 목사를 파견하였다. 이로써 종래의 10도제는 형식적으로도 점차 사라지게 되고

再考察-그 名稱과 板刻 內容을 中心으로-〉《韓國學報》33, 1983, 참고), 일 반적으로는 池內宏 등 일인 학자의 성과가 아직도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20) 《}高麗史》권 4, 世家 4, 현종 13년 정월·11년 8월. 최근 金鎔坤은〈高麗 顯宗 代의 文廟從祀에 대하여 -崔致遠의 경우를 中心으로-〉(《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528~544쪽)에서 최치원 從祀의 정치적 요인을 해명하였다.

뒤에 소위「五道兩界制」가 성립되는21) 한편으로 앞의 4도호와 양계(서북쪽 경계의 西界와 동북쪽의 東界) 및 8목체제가 오래 계속되었던 것이다. 다만 안동도호부는 현종 21년(1030) 경주가 동경으로 다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의 안동으로 옮겨지고 안남도호부는 현종 13년(1022) 폐지되면서 오늘날 안변의安邊都護府가 대신 올라섰다.

또 戶長·事審官制를 選舉任命制로 하여 정돈하고 현종 15년(1024) 鄕頁 규정을 세워 지방 頁生 차출의 원활을 기하였으며 따로 문무관의 단련을 법제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종 2년(1011)에 都兵馬錄事가 임명되고 이어 6년(1015) 都兵馬使 기록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무렵 도병마사제가 대체적인 조직을 이룬 듯하거니와 자세한 관제는 문종 때 가서 제정되기에 이른다.22) 현종 9년(1018)에는 또 향리직의 정원도 조정되고 기능이 분화하였으며 향리의 공복규정도 마련되었다.

현종대를 계기로 전개된 고려 중기의 체제정비 사업은 德宗·靖宗代에로 이어졌다. 우선 국방시설상으로는 압록강구에서 永興에 이르는 천리장성이 쌓여진 일이다. 이미 전대 이래 발론된 것이지만 덕종 2년(1033) 柳韶가 맡은후 12년 걸려서 정종 10년(1044)에 공사를 마쳤다. 대내적으로는 덕종 3년(1034) 黃周亮의 주관 아래 전대의 역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일찍이 태조에 관한 실록은 많이 정리되어 있었던 듯한데 제2차 거란 침입 때 대궐이 불타다른 문적들과 함께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현종 4년(1031) 최항 등의 참여 하에 태조~목종 사이의 七代事蹟(實錄)을 꾸미기 시작하여 이 때 36권으로 완성하게 된 것이다. 이후 실록 편수사업은 정례화된 듯 정종대에 들어 崔冲이修國史의 소임을 맡아 전대의 실록을 편찬하고 있다. 그리고 정종 8년(1042)과 11년(1045)에는 史書와 禮書가 간인되기도 하며 國子監試 등 과거제의 내실이 뒤따랐다.23) 또 전후하여 隨母法・賑恤制를 비롯한 사회경제 정책도 강구되었다.

²¹⁾ 河炫綱, 앞의 책, 40쪽.

朴龍雲.《高麗時代史 上》(一志社, 1985), 123~130쪽.

²²⁾ 旗田巍、《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法政大學出版局, 1972).

²³⁾ 과거의 監試制 등 진전은 학자간에 이설이 있다(朴龍雲, 앞의 책, 147~148쪽 주 참조).

2) 문종의 체제정비와 전성

11세기 동안은 대체로 고려문화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종대(1043~83) 근 40년 간은 李齊賢의 말대로 왕의 근검과 함께 인재가 등용되고 학문이 숭상되며 정치·경제·문물 제반이 제 구실을 하여 나라가 풍족하고 밖으로는 요·송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태평세월이 계속되었다.²⁴⁾이제 그 문물과 제도 일반의 정비상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시과의 갱정과 녹봉제

초기의 田柴科制는 始定(경종 원년:976)과 改定(목종 원년:998 및 덕종 3년:1034)을 거쳐 문종 3년(1049)에 功蔭田柴法이 생기고 문종 30년(1076)에 전면적으로 更定 완비됨으로써 앞으로의 기준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²⁵⁾

이 更定田柴科는 예전 골격은 그대로 두면서 이전에 비하여 18科에 따르는 結의 차를 수정하여 제1과를 田 100결·柴 50결로 하는 등 차례로 줄이고 柴地는 많이 감소시켜 15과 이하는 아예 제외하였다. 그러나 무반 대우는 크게 높여 상장군을 尚書보다 위인 제3과에 배당하였으니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 散職者가 배제되어 실직 위주로 된 것은 현실적인 집권화의 추세가 반영된 것이었다. 한편 大相 이하 佐丞까지의 향직에 대해서도 전시가 지급된 것, 그리고 과외로「武散階」와「別賜科」가 병설된 것 또한 특이한 것이다. 무산계는 문산계와는 아주 다르게 향리나 耽羅・女眞 족장 등과 老兵・工匠・樂人 등을 우대하여 준 것이었는데 실제 지급 여부에는 미심한 점도 없지 않다.26)

祿俸制는 전시와 병행하여 쌀을 현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태조이래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 문종 30년(1076)에 이르러 정식으로 조절 완비된 것이다. 이 때 후비・종실에서부터 문무반은 물론 權務官・東宮官・西京官 외에 胥吏・공장 등에까지 녹봉이 지급되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규정이 상당히 수

^{24)《}高麗史》 권 9, 世家 9, 文宗.

[《]高麗史節要》 권 5, 文宗末年 史贊.

²⁵⁾ 아래 경제항 참조. 朴龍雲, 앞의 책, 158~171쪽.

²⁶⁾ 旗田巍, 앞의 책, 402~404쪽.

정・추가되기도 하였지만 잡직 이하는 別賜로서 구별되었다.

이리하여 전시과와 녹봉제는 이후 관직과 정원·品秩의 班次를 확정해주게 되고, 이로써 결국 문무양반의 경제적 토대를 상대적으로 우대해주어 중앙 집 권의 실을 거두고 문치적 귀족사회의 확립에 큰 진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2) 개성부와 경기 및 귀족중심 사회

일찍이 松嶽에 수도를 정한 고려는 점차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실을 채워가기 위해 開城府의 설치 및 변경이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주변 군현을 합하여 京畿의 확대를 보게 되었다. 개성부는 이미 성종 14년(995)에 설치된 바 있어 중앙관청의 한 부분을 이루었는데 현종 9년(1018)에는 지방관청으로 바뀌었다가 문종 16년(1062)에 경기의 개편과 함께 그 주관부서로 부활되었다. 이 때 경기 13현으로 형성된 개성부는 문종 23년(1069) 50여 현을 관할하는 확대를 보게 되었으니 이는 오늘의 서울과 경기충북은 물론 강원・황해도까지 포괄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문종대 개성부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특권 귀족세력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재편 결과가 14세기 초엽까지 존속된 것을 보면 고려 귀족정치제도가 일단 완성되었음을 실질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27)

실제로 현종 이래의 安山金氏에 이어 仁州李氏가 독주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李子淵의 고모가 金殷傳의 처가 되어 문종 등의 어머니를 낳음으로써 왕실의 외조모가가 된 후 득세한 상황은 따로 자세히 다루어질 터이지만²⁸⁾ 이자연의 세 딸 모두가 문종의 왕비가 되고 여섯 아들이 다 크게 출세한 것은 물론, 그 왕비들이 3왕과 의천 등 10왕자를 낳은 것은 특이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외척귀족이 유례없이 영화를 독점하여 큰 폐단도 생기게 되었는데 이에 대항하여 과거출신 중심의 신흥 관료귀족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학력 배양이 절실하여 사학 중심의 학벌귀족도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귀족은 지방토호 무리 및 사원세력과 상류층을 이루고 중간층

²⁷⁾ 末松保和、〈高麗開城府考〉(《青丘史草》1, 1965).邊太燮、앞의 책.

²⁸⁾ 다음 장 참조.

서민층 내지 하류 천민층과 더불어 전체적인 계급구성을 보게 되는데 각 계급 간의 위상이 대체로 이 무렵에 정리된 듯하다. 즉 중간층 중 상위인 南班은 궁 중 관원인데 그들의 최고직위인 4품 서열이 갱정 전시과에서 빠지고 7품직 이 하만 남았으며, 이것은 후대 내내 존속되어 《高麗史》에도 百官志에 "南班之職 本限六品"이라고 나온다. 이로 미루어 중앙집권의 강화에 따른 近侍세력의 제한 조직이 상대적으로 중간층의 계급적 지위를 떨어지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농민 軍丁에 있어서 3等戶制의 가능성을 문종 때의 三子 중 一子 許僧法²⁹⁾에서 유추하기도 하지만³⁰⁾ 또 문종 31년(1077)의 其人選上 규제 등에 의거한 三丁一戶 구성 내지 足丁・半丁의 논의는 閑人・白丁 문제와 더불어 많은 학설이 있다.³¹⁾

또, 하류 천인·노비에 관하여 문종 3년(1049)에 도망 私奴를 강력 단속하는 법이 나온 것으로 보아 귀족사회가 무르익어 간 당시 노비의 존재 양상을 짐작하기에 족하다. 천인 노비는 후대까지 벼슬 근처도 갈 수 없음은 물론 姓조차 갖지 못하였는데 귀족들이 중국식 성과 함께 항렬법을 쓰게 된 것은 문종 전후의 일로 짐작된다. 인주 이씨를 비롯하여 경주 김씨·파평 윤씨·해주 최씨 등에서 이러한 관행이 똑같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흔히 혈족내 근친혼을 하여 문종 35년(1081)에는 이를 금지 통제하는 법령이 나오기도하였다. 또 정종 때 제정된 자손 상속법을 이어 문종 22년(1068)에는 자손없는 자의 收養 규정도 마련되었는데 고려시대에는 후대보다 처첩제도가 느슨하고 他姓者의 入養得姓도 가능하였던 것이다.

(3) 법제와 경제유통

문종대의 법제 정비는 즉위 원년(1047)에 착수되었다. 시중 崔冲이 그 해 6월 왕명에 의하여 律官을 모아 律例를 자세히 교정·정리하고 書算業도 교정을 가하였으며 동 8월 사형 판결에는 三覆制를 실시하였다. 왕은 이런 사안

^{29) 《}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13년 8월 정해.

³⁰⁾ 원래 9等戶制에 대한 의심은 深谷敏鐵에 이어서 李丙燾가 언급하고 있지만 근자에 발표된 것으로는 李惠玉, 〈高麗時代 貢賦制의 一研究〉(《韓國史研究》 31, 1980)가 있다.

³¹⁾ 旗田巍의 앞의 책을 비롯하여 韓祐劤・深谷敏鐵・李佑成・武田幸男 및 千寛 宇 등의 연구가 있다.

의 결재 때에 거동을 삼가고 6년(1052)에는 죄인 심문에 법관 3명 이상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였다. 또 문종 10~11년에는 撫問使를 보내어 각 지방관의 성적을 사정하고 按察使・監倉使나 事審主掌使를 시켜 사심관의 민폐 여부를 다스려 나갔다. 국초에 세력이 매우 컸던 사심관이점차 통제를 받게 된 것은 그만큼 중앙집권의 내실이 갖추어진 것을 뜻한다.32) 기인의 選上法이 충실히 시행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한편 풍속제도에도 손을 써서 민심의 돈후를 기하고 특히 養老에 힘쓰며 선왕의 능묘와 전대의 명현 사당의 수호에도 마음을 기울였다. 이런 가운데 문종대의 지방 안정책은 상당한 실적을 올렸고 지방관의 권농을 독려하여 재 해대책을 세밀하게 세우고 조세 감면이나 飢民 구제도 힘쓰며 민간의 고리대 피해를 막는 子母停息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시책은 다 중세 농경국가가 취하는 기본 방책이기도 하지만 《高麗史》食貨志 서두에 문종이 절검 간소를 힘써 창고의 미곡이 남아 돌고 자급자족의 「富庶之治」를 이루었 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더라도 당시의 산업 사정을 추측할 수 있다.33)

이러한 성과는 농업기술의 꾸준한 발전과 수리시설의 계속적인 수축에 힘입은 바가 큰 것이다. 문종대의 구체적인 사례는 延安 臥龍池(남대지)의 중수정도 밖에 안보이지만, 이 전후대까지 포함한다면 삼한 이래의 金堤 碧骨池를 비롯하여 尙州 恭檢池, 密陽 守山堤 등이 개수되어 농업 증산을 실현하게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내 수공업으로 널리 명주·모시 등의 베 생산이 진전됨은 물론 각지의 所에서 금·은 동·철·소금·종이·자기 등이 생산되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무역에도 기여하였다. 문종 32년(1078) 宋使 安燾가 모처럼 고려에 와서 선물 사태를 만나 배에 다 실어 갈 수 없을 정도였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麗·宋 간의 무역 등 외교관계는 매우 친밀했음³⁴⁾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국내 광업생산도 제법 활발했을 터이고 문종 때에 都鹽院의 관제가 정비된 것으로 보아 소금 전매제가 세워지고 어업도 '細民은 海品을

³²⁾ 旗田巍, 앞의 책.

^{33) 《}高麗圖經》 권 16. 倉廩.

^{34) 《}高麗史》 권 9, 世家 9, 문종 32년 7월.

多食한다'고 할 만큼 고기잡이가 성했던 것이다.35)

또 도자기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청자 제작 기법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농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큰 도시를 중심으로 국내상업이 일어나 노점상 같은 墟市가 날마다 열리는 성황까지 보게 되었다.

(4) 불교의 흥성

고려의 숭불과 그에 따른 불교의 생활화는 문종대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왕과 귀족이 정치·경제적으로 불교에 기울어지고 민중은 불교생활에 젖어들어 오히려 속화의 폐단이 커졌으므로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단속령이나오기까지 하였다. 불교는 여러 가지 특권과 특혜 속에서 義天이나 그의 스숭 欄圓과 같이 왕공·귀족자제가 다투어 출가함으로써 승려는 일급귀족이되고 개경에만도「佛寺七十區」라는 대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불교법회가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與王寺는 문종 10년(1056)에 창건되어 12년 동안 2,800칸에 달하는 巨刹로 발전하였다. 성을 두르고 금탑을 쌓은 이 문종의원찰은 지금 터만 확인되고 있지만 그 화려함이나 법회의 성황 등이 전고에유례가 드문 것이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문종 때에 갖가지 불교의식의 절차가 정해지고36) 거란, 송 등과 佛典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에 흥왕사에서는 의천의 속장경과 같은 경판 사업도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왕공·귀족불교의 전성과 더불어 문종의 왕자가 셋이나 출가하였으며 이는 손자대에로이어져 의천 외에 道生・圓明 등 왕자손・小君 고승이 나왔다. 이리하여 문종대만도 圓融・慧炤・智光 등 국사가 배출되었다.

문종의 넷째 아들 大覺國師 의천이 天台宗을 개창하고 속장경을 간행한 사상사·문화사상의 위대한 업적은 따로 상론될 것이므로³⁷⁾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치려 하거니와, 왕자로 송나라에 유학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준비성과 열정, 그에 따라 단시일에 얻어 낸 성과 등은 후세에 길이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왕이 창건한 흥왕사에서 천태종을 강론하여 불교의 일대 혁신

^{35) 《}高麗圖經》 권23, 雜俗.

³⁶⁾ 洪潤植、《韓國佛教思想史研究》(圓光大, 1975).

^{37) 《}한국사》 16,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국사편찬위원회, 1994 간행예정) 참조.

을 기하고 이어 敎藏都監을 두어《新編諸宗敎藏總錄》을 공들여 만들고 마침 내 麗·宋·遼·日의 당대 불교 총결집인 속장경을 간행한 문화·사상사상의 기여는 만고에 빛나는 업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신라승 元曉를 비롯한 20여 명의 대찬술을 모아 그 높은 경지를 재발견 정립하여 대승불교사상 龍樹·馬鳴과 맞겨루게 한 공로38)는 필설을 넘어선 위업임에 틀림없다. 이와같은 신라와 그 문화에 대한 재발견·재창조 노력은 고려문화가 최고경지에도달했던 것을 반영한 예가 된다고 보겠다.

또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적 교류도 볼만하였다. 문종대를 전후한 송과의교류는 특히 두드러지거니와 의천의 노력이 가세하여 불전의 수입과 수출은 괄목할 만한 것이 있었다. 문종 37년(1083)에 송의 대장경이 들어 왔고 그 후에도 많이 전래되었는데 신라 때 들여 왔던 智儼・賢首 등의 화엄학 책은송에 역수출되기도 하였다. 거란과의 불교 교류는 더욱 뜻깊은 의미가 있었다. 거란대장경은 이미 문종 전기에 해당하는 道宗의 淸寧年間(1055~1064)에 완성되자마자 문종 17년(1063)과 26년(1072)에 고려에 들어 왔으며 속장경에는 거란 불경이 많이 들어 있어 본고장에는 없어진 것이 고려대장경에만 전해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의천과 제자 守其 등의 진력으로 원효의 經疏가 요에 전해져 왕의 애독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전 교류는 여·일 간에도 행해져 문종 때 일본승 25명이 와서 현물한 사실도 있었으며 의천의 장경 원본이 오늘날에도 그곳에 전하고 있 는 것³⁹⁾은 당시의 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불교가 이처럼 안팎으로 퍼지면서 문종 13년(1059)에는 한 집에 3구 중 1구는 15세 때 승려가 되도록 허락하는 법이 제정되고 僧科 및 왕사·국사제도도 행하게 되었으며 각종 법회의 성행은 유난스러웠다. 보살계 도량은 문종 때 5회 거행된 것을 비롯하여 왕의 정례적 受戒 행사가 되었으며 여러 가지 명목의 祈福·消災道場이 성행하였다. 특히 仁王經을 내세운 도량과 갖가지 經行은 왕실이 매우 즐겨하던 것으로 그 규모와 빈도가 대단하였거니와, 이 때 몇천 몇만

^{38)《}大覺國師文集》 권 20,續海東教迹. 高翊晉,《韓國古代佛教思想史》(東國大出版部,1989) 참조.

³⁹⁾ 義天日錄을 비롯 몇 권의 殘本이 전하고 있다. 국내에는 松廣寺에 국보로 지 정된 5책 등이 알려져 있다.

명의 승려에게 공양을 베푼 飯僧 행사는 고려불교의 특이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거국적 행사는 연등회나 팔관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40)

한편 이처럼 불교가 크게 장려되고 생활화함에 따라 폐단이 생기고 단속령이 나오기도 하였다. 벌써 문종 10년(1056)에 "절간은 떠들썩하고 불교행사에는 더러운 냄새가 풍기며 중이 속민과 어울려 가축을 기르고 밥장사를 하면서놀아나고 행패를 부리니 엄하게 다스리라"는 사례⁴¹⁾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5) 유교와 사학 및 도서출판

고려의 유교주의 정치는 이미 성종 때부터 기틀을 마련했으며 11세기에 거 란의 침입이 수습되고 문종대 같은 태평세월이 열리면서 문운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문종의 문치 장학과 최충의 사학교육은 특히 큰 계기가 되었다.

원래 고려시대의 유교와 불교는 오랫동안 서로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여 양쪽을 똑같이 중시하고 겸하는 학풍이 흔하였다. 최승로·채충순·의천이 다 그런 이들이었지만 성종 때의 학술진흥이나 광종 이후의 과거제 실시 등으로 점차유교를 많이 공부하게 되어 문종대에 이르면 최충 부자나 鄭倍傑 등 훌륭한 유자가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시가와 문장에 힘쓴 이들이 과거의 고시관(知貢學)을 지내면서 자연 明經科보다 製述科를 중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최충에 의한 사학교육의 시작과 계속적인 홍성은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 새 물꼬를 트게 되었다. 최충은 벼슬을 마친 다음 자기 집에 사학을 열었는데 학도가 운집하자 九齋學堂을 마련하니(문종 9년:1055) 이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시초를 이룬 것이다. 이 사숙이 부진한 관학을 압도하고 대성황을 이루게되자 개경에만도 11개의 유명한 사학이 설립되어 세칭 12徒私學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그중 시중 崔公徒(뒤에 文憲公徒)가 가장 명성을 떨쳤는데 여기에서는 과거 준비를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道學의 중추가 되는 《中庸》에 주목하여도의 연마 등 실천윤리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海東孔子 최충의 영예로운 이름은 累代儒宗으로 대를 물려 가며 학벌귀족42)의 본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⁴⁰⁾ 주 37) 참조.

^{41) 《}高麗史》 권 7. 世家 7. 문종 10년 9월 병신.

⁴²⁾ 朴性鳳, 〈國子監과 私學〉(《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75).

이런 추세에 자극된 듯 문종 17년(1063)에 국자감 격려와 직제 강화가 있었다. 즉 학관의 책임을 논하고 학도의 성적에 따라 진퇴를 정하라는 규제가 내려지고 관계 교관의 직품이 제정되었다.⁴³⁾ 그러나 다음대에 국자감의 정폐론까지 나온 것을 보면 별 진전이 없었던 듯하다.

이처럼 문종 때까지 관학이나 과거제의 정비는 미진한 점도 있었으나 인쇄술의 발달 등 전반적인 문화 기운은 종래의 침체를 넘어선 듯하다. 원래목판 인쇄술은 신라이래 계속 발전되어 온 것이지만 불교·유교서와 의서등의 수요가 늘고 특히 대장경 등의 대규모 사업과 宋板本의 영향이 크게작용하여 정종대부터 經史관계 간행사업이 활발하였다. 문종 10년(1056)에는 서경의 주청으로 秘閣 소장 경사자집류 여러 책을 각각 하나씩 인출하여색에 서경학원에 간직토록 하였으며 또 전국 중요 지방관원들이 의약서와 경사서를 새로 조판하여 비각에 보내 왔다.

이와 같은 도서의 교류는 중앙·지방간만이 아니라 송·일 등 국제간에도 확대되었으니 이는 사학 발달 등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문풍의 향상과 확산의 추세가 그만큼 커진 것을 뜻한다. 의약서가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물론 문종의 병약치료와 직접 관련된 것이지만 이러한 학술의 발달과 교류는 다음대로 계속 이어져 갔다. 무엇보다 당시의 古印本이 오늘날까지 국내외 도서관 등에 전해 온 것은45) 그런 실정을 잘 나타낸 것이다. 이 무렵 지필묵의 발달도 촉진되어 고려의 출판인쇄 문화는 송나라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수준을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6) 풍수지리 사상과 현실작용

신라 말기이래 道詵의 풍수지리설은 일종의 인문지리 사상 내지 국토종합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주목되어 왔거니와 고려시대에는 국운의 성쇠를 좌우

朴贊洙, 《고려교육제도사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43) 《}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문종 17년.

⁴⁴⁾ 독일 Mainz에 있는 Gutenberg박물관은 고려의 인쇄문화를 중시하여 거론하 면서도 이러한 소량 인쇄의 특성을 일러 'steel stamp'라고 평가하고 있다.

⁴⁵⁾ 종래 일본에만 전한 것으로 알려진 초판 대장경 판본이 최근 국내에서도 발 견되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하는 圖讖思想으로서 현실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문종대 이후 문운 전성기에는 직접적인 京都·離宮 건설에 크게 작용하였다.

즉 문종대에 불력과 지덕에 의지하여 나라 이익을 증진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서술한 흥왕사 창건과 더불어 吉地에 巡駐離宮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성강변 객풍 廣德 땅에 長源亭을 짓는 것을 비롯하여 漢山남쪽 한양땅에 남경을 시설하고 서경에는 좌우궁을 지어 西京畿를 설치함으로써 이른바 巡駐三京이 틀을 잡았던 것이다.46)문종 때에만도 지덕이 왕성한곳을 찾아 도읍을 삼거나 혹은 자주 순주하여 흥륭을 기하려는 延基思想의전개상은 실례가 많다.

먼저 장원정의 경우, 전래(道詵) 비기에 '고려 태조의 반도 통일(936) 후 120년 되는 문종 10년(1056)에 개경의 西江 명당에 이궁을 건설하면 基業이 늘어난다'는 설에 의거, 이 정자를 지은 것이라 한다. 도참설을 믿고 이름도 「長源」이라 명명한 문종은 여러 번 이곳에 순행하고 賀詩를 짓게 하였다.

또 10년이 지난 문종 21년(1067)에는 오늘의 서울 땅에 남경을 설치하게된다. 이미 태조 초 평양에 서경이 건설되고 성종 때 경주에 동경이 두어진바 있지만 문종 때 남경을 신설함으로써 지방행정상으로 개경을 빼고도 3경이 생겼다. 이리하여 도참사상의 측면에서는 동경을 제외하는 순주삼경제가마련되게 되었다. 한편 남경(원楊州) 땅은 선사 이래 백제·고구려의 首邑내지 別都였거니와 문종의 남경 설치는 역시 도참비기의 '개국 후 160년(문종대)에 木覓壤(서울남산)에 도읍한다'라는 참위설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숙종대에 남경을 순주 3경으로 재창건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을 보면문종의 순행은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서경의 좌우궁 건설에서도 비슷하였다. 원래 태조 때 서경이 두어지고 중기 인종 때까지 개경과 서경의 양경체제를 유지한 것은 너무나 두드러진 사실이거니와, 명칭상 한때 광종의 西都, 목종의 鎬京 등과 같이 개칭이 있었고 성종 때와 문종 때에는 원 이름대로 복구되기도 하였지만한결같이 중시하는 전통은 계속되었다. 문종 16년(1062)에는 이에 더하여 서경기 4道를 두었으니 기술한 경기 확대와 대응시켜 태조 이래의 分司제도를

⁴⁶⁾ 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乙酉文化社, 1948; 亞細亞文化社, 1980), 128~138\,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서경 내지 서경기제도는 인종 때 妙淸 등의 난 이후 폐지되고 말지만, 문종 35년(1081)에는 서경 본궁(萬壽臺 長樂宮)을 수리할 뿐아니라 도참설에 따라 또 좌우 두 궁을 조영하였다. 이 두 궁은 본궁 좌우 10여 리 되는 곳에 龍宮・珠宮으로 복영된 것이라 하거니와47) 그후 숙종 때의 남경 재건 등과 더불어 지리도참설의 현실작용이 매우 컸음을 잘 보여준다.

(7) 대외문물 교류

여송국교는 요와의 얽힘 때문에 반세기 이상 단절된 상태에 있었으나 문종 연간에 들어 다시 정식으로 열리게 되었다. 즉 문종 25년(1071) 金悌 등을 송 에 보내어 국교를 재개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親宋 준비는 이미 문종 12년 (1058)부터 큰배를 건조하는 등 착실히 추진되고 있었다. 재신들이 반대하여 처음에는 국교가 지연되었으나 앞서부터 송이 고려에 환심을 사는 방책을 세 우고 22년(1068)에는 정식으로 통교를 제의해 와서 이 때 성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요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왕 28년(1074) 金良鑑 등을 보내면서 종래의 동쪽 길, 즉 登州 등 산동반도를 경유하지 않는 남쪽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충청·전라 연안을 끼고 곧바로 남행하여 明州에 배를 대고 송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리하여 문종대를 전후한 여송 양국간의 공사간 무역 거래는 특히 볼만한 것이 있었다. 대표적인 공무역의 예로 문종 32년(1078) 朱使가 가져 온 예물을 보면 막대한 옷가지·구슬류·비단·차·악기 등이 있지만 따로 公的·私的으로 서적과 약재 등이 엄청나게 수입되었다. 즉, 대장경 등 불서를 비롯 유가·도가 및 제자백가서 등이 많이 들어와⁴⁸⁾ 후대에 소문난 愛書愛藏의 나라가 되고 송에 역수출되기도 하였다. 또 약재의 대량수입은 문종 33년(1079)의 한 예만 보아도 100종을 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풍환자이던 문종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지만 여송간 문물교류의 밀접함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수입과 짝하여 수출도 활발하였다. 문종 25년(1071)과 34년(1080)의

⁴⁷⁾ 李丙燾, 위의 책.

⁴⁸⁾ 이런 과정에서 蘇軾이 두 번이나 고려 사신들의 책 구입을 막으라고 上奏했 던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조공무역품의 예를 보면 역시 옷가지·비단·금은의 사치품과 종이·먹 등이며 이 밖에 부채·자개·붓·화문석 등이 송나라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여송간의 公私 사행과 상인 왕래는 역대 어느 왕조들보다 활발한 편이었고 그 중 문종대가 고려 일대를 통해서도 가장 성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가운데 唐樂이 문종 27년(1073) 2월에 들어와 연주되었다거나 송의 저명인사가 많이 귀화한 것도 인상적인 사실이다. 현종대의 周佇는 우선 두고라도 문종 때의 張琬・盧寅 등 6・7인이 유명하며 다음 예종・인종 때에는 胡宗旦・林完 같은 명사까지 들어와 고려 문운에 기여한 바가 컸다.

이처럼 여송관계가 매우 돈독하게 되니 여러 사신을 위한 客館이 설치되었고, 문종 9년(1055)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몇 십 몇 백 명이 어울리는 큰 잔치가 베풀어지기도 하였다. 또 禮成江口는 국제무역항으로서 크게 번성하여 송의 상인 외에 일본 상인·대식국 상인까지 많이 내왕하였다.

한편, 북방민족과는 직접 국경을 접한 관계로 분규가 많은 편이었으나 문물교류 또한 활발하였다. 요와는 문종 연간 내내 弓디門(경계문) 설치(동왕 8~9년:1054~5), 賣買院(무역소) 제의(동왕 16년:1062), 探守院(정찰소) 설치 등으로 긴장관계가 이어졌고 문종 29년(1075)부터는 地界審定 문제로 사신이왔다 갔다 하였다. 이후 互市場인 権場 설치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소위 夾帶무역 등 밀무역을 하면서까지 교역이 계속되고 앞에서 서술한 불교 교류는 영향과 성과가 자못 컸다.

또, 여진과는 현종 이래 많은 교류가 있어 오다가 문종 때부터는 한층 긴밀한 관계가 맺어졌다. 즉, 그들의 歸附가 더욱 잦아 문종 27년(1073)에는 귀순주인 羈縻州를 넘어선 본연의 군현화 논의까지 나왔다. 그리하여 이 해에 여진 장수와 합세하여 북청 三山村의 蕃賊을 친 적도 있고 동서 여진의 來附者가 너무 많아져 문종 35년(1081)에는 赴京 통제규정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후여진이 금나라로 발전하면서 尹瓘의 원정 등 전쟁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고려를 부모의 나라, 상국으로 받들어 그들의 건국시조가 고려인이라는 설화49)도 전하고 있음을 보면 양국간의 긴밀도는 집작하고 남음이 있다.

^{49)《}金史》 권 135, 列傳 73, 外國 下, 高麗.

일본과는 일찍부터 來投者가 많고 또는 생포자의 송환문제도 생겨 피차의 교섭이 빈번하였다. 문종 10년(1056)에는 日本國使가 오고 동 27년(1073)에는 壹岐島 句當官이 사람을 보내 와서 방물을 헌납하기도 하였다.50) 또 같은 해와 그 이듬해에도 일인 수십 인이 토산물을 바치고 하사물을 받아 가는 등 문종 연간의 왕래는 매우 활발하였다. 특히 표류민 관계로도 문종대 내내 접촉이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일본이 적극적인데 비해 고려는 피동적이었다.51) 또 宋醫가 옴에 따라 日醫生의 초청 교섭도 있었으며 일본 상인과 함께 남방물산도 들어 왔다.

이상과 같이 고려사상 11세기는 귀족사회가 무르익어 간 홍륭기·전성기라할 만하였다. 처음에는 큰 국난으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지만 관민이 뜻을 합쳐 이를 극복하고, 특히 문종 전후 반세기는 왕의 노력이 가세하여 태평세월이 오래 지속되고 문물제도가 각 방면으로 다듬어지며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음서제·공음전시법·연줄 혼인관계 등등에 의해 귀족사회가 성숙되면서 페단이 나타나 다음대에는 척족의 발호 난동까지 보기에 이르렀다. 송나라徐극競은 이 무렵 정황을 보고 고려인이 명망있는 가문을 숭상하여 國相은 훈신·척신이 독점했던 사실을 《高麗圖經》에 남겼거니와 문신귀족 편중적 문운의 제도와 운영은 그 후 더욱 굳어져 무신집권기를 맞이하고야 말았다.

〈朴性鳳〉

2. 귀족사회의 전개와 동요

- 1) 이자의의 난과 숙종의 즉위
- (1) 이자의의 난과 그 사상

13대 宣宗이 죽은 뒤 11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獻宗은 몸 또한 허약하여

⁵⁰⁾ 森克己,〈日麗交渉と刀伊賊の來寇〉(《朝鮮學報》37・38, 1966), 105쪽. 《高麗史》권 9, 世家 9, 문종 27년 추7월 병오.

⁵¹⁾ 金庠基, 〈해상의 활동과 문물의 교류〉(《東方史論叢》, 서울大出版部, 1974). 羅鍾宇, 〈高麗前期의 麗・日貿易〉(《圓光史學》1, 1981).

母后인 思肅太后가 垂簾政治를 행하였다.1) 이것은 당시 왕의 존재가 유명무실함을 말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 아래서 당시의 지배세력들은 동요하게 되었고, 마침내 헌종 1년(1095) 7월 경신일에 李資義의 난이 일어났다.2)

선종의 아들이자 헌종의 배다른 아우이며 자신의 생질이었던 漢山侯 昀을 왕위에 추대하려고 하였던 이자의의 난은 《高麗史》의 기록대로만 이해할 수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이자의의 난은 계림공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면서 정적을 제거코자 한, 왕위 찬탈에로의 거보를 내딛기 위한 정치적 조작극으로 보아야 한다³⁾는 기왕의 이해와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이자의의 난은 《高麗史》의 관련 기록에 의해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음의 내용을 통하여 이자의의 난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자.

자의는 재물을 탐하고 무뢰한 용사를 모아 騎射를 일삼으며 항상 말하기를 '主上이 병이 있음에 아침에 어떨지 저녁에 어떨지 모르고 外邸에서 엿보는 자가 있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여 한산후를 받들어 임금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127, 列傳 40, 叛逆 1, 李資義).

위의 내용은 헌종이 병이 있어 왕위를 지키기 어려운데 밖에서 왕위를 넘보는 자가 있으니 너희들은 힘을 다해 선종의 아들이며, 자신의 생질인 한산후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밖에서 넘보는 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高麗史》기록에 의하면 선종의 아들로는 현종과 한산후 형제가 있다. 그렇다면 '밖에서 넘보는 자'는 당시 생존해 있었던 선종의 아우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려시대 왕위계승 규정이라 할 수 있는「訓要十條」의 3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적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비록 일반적인 예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丹朱가 불초함에 堯가 舜애게 禪讓한 것은 참으로 공정한 마음이었던 것이다. 만약에 만 아들이 불초하거든 그 둘째에게 전하여 줄 것이며, 둘째도 불초하거든 형제 가운데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는 자에게 전하여 주어 대통을 계승하게 하라(《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26년 4월).

^{1)《}高麗史》 권 88, 列傳 1, 后妃 1, 恩肅太后 李氏.

^{2) 《}高麗史》권 10. 世家 10. 헌종 원년 7월 경신.

³⁾ 秋萬鎬, 〈李資謙의 軍事基盤理解〉上(《史鄉》 2, 공주사대, 1985), 36쪽.

《高麗史》권 88, 列傳에 의하면 문종은 현종의 딸 仁平王后, 李子淵의 세 딸 仁睿順德王后・仁敬賢妃・仁節賢妃,侍中 金元冲의 딸 仁穆德妃 등과 혼 인하였다. 이 가운데 인예순덕왕후와의 사이에 順宗・宣宗・鷄林公(肅宗)・大 覺國師 煦・常安公 琇・普應僧統 規・金官侯 왜@・卞韓侯 愔・樂浪侯 忱・聰慧首座 璟을,4) 인경현비와의 사이에서 朝鮮公 燾・扶餘公 燧・辰韓公 愉를5) 낳았다. 인예순덕왕후의 소생 가운데 상안공은 현종 1년 3월,6) 금관후는 선종 9년 4월,7) 변한후는 동왕 3년 9월,8) 낙랑후는 문종 37년 4월에9) 각각 죽었으므로 당시에 생존해 있었던 인물은 계림공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경현비의 소생은 이때 전부 생존해 있었다. 따라서 선종의 아우로서 유약한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위를 넘볼 수 있었던 인물은 계림공・조선공・부여공・진화공 등이며10) 이 가운데 제일 맏이였던 계림공이 가장 유력하였다.

이자의의 난의 발생 요인을 왕실과 인주 이씨와의 혼인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자. 왜냐하면 헌종의 모후인 사숙태후와 사촌간이면서도 사숙태후의 수렴정치기간에 이자의는 자신의 생질이었던 한산후를 왕위에 추대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왕실과 인주 이씨와의 혼인관계를 처음 맺은 문종에서 선종까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종 : 인평왕후 김씨(현종의 딸) 인경현비 이씨(이자연의 딸) 인목덕비 김씨(김원충의 딸) 인예순덕왕후 이씨(이자연의 딸) 인절현비 이씨(이자연의 딸)

순종: 貞懿王后 왕씨(平壤公 基의 딸) 宣禧王后 김씨(金良儉의 딸)

^{4)《}高麗史》 권 88, 列傳 1, 后妃 1, 仁睿順德太后 李氏.

^{5) 《}高麗史》 권 88, 列傳 1, 后妃 1, 仁敬賢妃 李氏.

^{6) 《}高麗史》권 90, 列傳 3, 宗室 1, 常安公 琇. 《高麗史》권 10, 世家 10, 현종 1년 3월 신축.

^{7) 《}高麗史》권 90, 列傳 3, 宗室 1, 金官侯 @. 《高麗史》권 10, 世家 10, 선종 9년 4월 병인.

^{8) 《}高麗史》권 90, 列傳 3, 宗室 1, 卞韓侯 愔. 《高麗史》권 10, 世家 10, 선종 3년 9월 정묘.

^{9)《}高麗史》권 90, 列傳 3, 宗室 1, 樂浪侯 忱. 《高麗史》권 9, 世家 9, 문종 37년 4월 을축.

^{10) 《}高麗史節要》권 6, 헌종 1년 7월. 이제현의 찬에 "時人譏宣宗 有寵弟五人 而傳 位孺子 致此亂也"라 하여 상안공도 생존해 있는 듯 기록하였으나, 상안공은 이 당시에 이미 죽고 없었으므로 寵弟는 5인이 아니고 4인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28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長慶宮主 이씨(李顥의 딸)

선종 : 貞信賢妃 이씨(李預의 딸)

元信宮主 이씨(李頲의 딸)

思肅太后 이씨(李碩의 딸)

위에서 나타난 혼인관계를 분석해 보면 문종은 이자연의 세 딸을 맞아 들 였을 뿐만 아니라 金殷傅의 외손녀인 현종의 딸 그리고 靖宗과도 혼인관계를 맺은 바 있는 문하시중 김원충의 딸과도 혼인하였다. 순종은 문종의 아우인 평양공 기의 딸과 경주인 김양검의 딸 및 이자연의 여섯째 아들인 이호의 딸 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선종은 이자연의 셋째 아들인 이석의 딸과 이자연의 아우인 李子祥의 맏아들 이예의 딸을 왕이 되기 전 國原公이었을 때 맞아들 였으며,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 이자연의 맏아들 이정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왕실이 인주 이씨와 중첩되는 혼 인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종실 또는 인주 이씨 이외의 성씨와도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점으로 이는 평소 간과되어 온 것이다. 특히 선종은 인주 이씨라 하여도 문종이 이자연의 세 딸을 맞아들인 것과는 달리 인주 이씨 각 계열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러한 문종에서 선종까지의 혼인관계에 근거하 여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할 듯하다.

왕실이 한 가문과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왕권에 쉽게 접근하여 왕권의 약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외척세력에 대하여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를 억제하고, 나아가서는 왕을 중심으로 왕실의 외척이란 입장에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재되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¹¹⁾ 따라서 선종은 인주 이씨의 각 계열과 혼인관계를 맺어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헌종이 어린나이로 더욱이 병약한 상황에서 즉위하여 모후에 의한 수렴정치가 행해진 당시로서는 명실상부한 왕권의 확립이 요청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아래 헌종을 기준으로 한산후가 왕위 계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한 이자의와 선종을 기준으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의 숙종이 정치적으로 대립하였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숙종의

¹¹⁾ 南仁國,《高麗 肅宗의 即位過程과 王權强化》(《歷史教育論集》5, 경북대사대역사교육과, 1983), 132~133쪽.

위와 같은 입장은 헌종을 고려 역대 왕의 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¹²⁾

다음으로는 이자의가 난을 주도할 수 있었던 그의 세력기반에 대하여 알아보자. 앞서 인용한 내용 가운데 "자의는 재물을 탐하고 무뢰한 용사를 모아 기사로 일삼으며"라는 것을 통해 무뢰한 용사 즉 사병집단¹³⁾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병집단의 소유에는 막대한 경제력이 요구되었는데, 그것은 다음의 내용으로 그의 경제력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적신 이자의 등이 사사로이 미곡을 비축하여 그 수가 鉅萬에 이르는데 이는 모두 백성을 괴롭혀 거두어들인 것이니 모두 관에 몰수하도록 하십시오(《高麗 史》권 127, 列傳 40, 叛逆 1, 李資義).

이자의의 세력기반은 사병집단만이 아니었다. 이는 난이 진압되는 과정을 전후하여 그와 함께 죽음을 당하였거나 유배되었던 인물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인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4)

죽음을 당한 인물:李資義, 閤門祗候 張仲, 中樞院堂後官 崔忠白, 아들 綽, 興王寺大師 智炤, 將軍 崇烈・澤春, 中郎將 郭希, 別將 成甫・成國, 校尉 盧占, 隊正 裵信 등 17인.

유배되었던 인물:平章事 李子威, 少卿 金義英, 司天少監 黄忠現, 奉御 黄榮, 少監 徐晃, 侍御史 王台紹, 祗候 李資訓, 錄事 李景泌・崔淵, 將軍 李甫・吳昌, 郎將 仇賢・良玠, 別將 安鱗・珍奇, 散員 惟寵・崔幸・林自成・侯善・金銭・李 玄孟・姜希白・鄭貞佐 등 50억 인.

위의 내용으로 보아 이자의의 세력은 자신의 가족과 당시 문반 구성원 가운데 극히 일부와 무반의 중·하위집단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자

¹²⁾ 숙종 6년 2월 重光殿에서 서적을 열람하고 서적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印文에 3행 세로 쓰기로 "高麗國十四葉辛巳歳藏書 大宋建中靖國元年 大遼乾統二年"이라는 25자가 새겨져 있다(金庠基,《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205~206쪽). 여기에서 숙종이 15대가 아니라 14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알 수 있다. 숙종이 헌종을 고려 역대 왕의 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은 藤田亮策,〈李子淵とその家系〉下(《青丘學叢》15, 1933), 125~126쪽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¹³⁾ 이들을 사병집단으로 파악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왜냐하면 이보다 후대의 것이지 만 무신집권기의 용사가 무신들의 사적 군사력의 기초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鄭杜熙, 〈高麗 武臣執權期의 武士集團〉《韓國學報》8, 一志社, 1977, 83~84쪽).

^{14)《}高麗史》 권 127, 列傳 40, 叛逆 1, 李資義.

의의 한산후 추대에 직접 참여하였던 그의 가족으로는 아들인 작과 홍왕사 대사 지소 그리고 그와 사촌 간인 李資訓(資凉) 및 종숙 李預¹⁵⁾ 뿐이다. 이것을 인종 때 이자겸의 난에 가담하였던 친족 구성원과 비교하면 그의 부계 친족 내지 그와 「兩側的 親屬關係」(父側과 母側 계보에 대칭적인 범위의 혈족들과 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친속관계를 갖는 친족조직)16)를 가진 어느 쪽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홍왕사 대사 지소가 화를 만난 데 근거하여 이자의의 난에 홍왕사의 승병이 사병적 성격으로 참여하였다고 이해되어 왔다.17) 그러나 이자의의 난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승병의 존재를 입증할 사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홍왕사와 같은 큰절의 주지는 중·소사찰의 경우와는 달리 교종의 최고 승계인 僭統이 담당하였으므로 대사였던 지소는 승병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지소가 살해당한 것은 승병을 동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 작의 죽음이나 이자훈의 유배처럼 이자의의숙청에 희생된 것으로 보는 견해18)도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로 인해이자의의 난에 사원세력이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문종대를 전후하여 경원 이씨 세력과 연결된 法相宗과 왕실과 연결되어 있었던 華嚴宗이 사원세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견해가 있고,19) 이자겸의난 때 그의 아들인 義莊이 玄化寺의 승려를 동원하여 반란에 가담하였음을 감안하면 이자의와 사원세력의 연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20)

한편 문반으로는 평장사 이자위・병부원외랑 金德忠21)・시어사 왕태소・녹

^{15)《}高麗史》 권 95, 列傳 8, 李子淵 附 預.

¹⁶⁾ 盧明鎬, 〈山陰帳籍을 통해 본 17世紀 村落의 血緣樣相〉(《韓國史論》 5, 서울大國史學科, 1979).

^{----. 〈}高麗의 五服親과 親族關係 法制〉(《韓國史研究》31, 1981).

¹⁷⁾ 金潤坤、〈李資謙의 勢力基盤에 대하여〉(《大丘史學》10, 1976).
金光植、〈高麗 肅宗代의 王權과 寺院勢力-鑄錢政策의 배경을 중심으로ー〉 (《白山學報》36, 1989), 116쪽.

¹⁸⁾ 秋萬鎬, 앞의 글, 34~36쪽.

¹⁹⁾ 崔柄憲、〈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韓沽劤博士停年紀念 史 學論叢》、知識産業社、1981).

²⁰⁾ 韓基汶,〈高麗 中期 興王寺의 創建과 華嚴宗團〉(《鄉土文化》5, 慶山鄉土文化 研究會, 1990), 13等.

^{21) 《}高麗史》권 10, 世家 10, 헌종 1년 9월 병신.

사 이경필 등 당시 문반 전체 구성원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이자의에 동조하였다. 선종에서 헌종으로의 교체시기에 중앙정계의 요직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에는 이자위만 "자의와 서로 사귀어 專權用事하였을"22) 뿐 그 외의 인물은보이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무반의 경우도 문반처럼 실질적으로 군사력을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 즉 상장군과 대장군의 존재는 볼 수없고 장군・낭장・별장・교위 등 무반의 중・하위집단만이 참여하였을 뿐이었다. 이자의 세력의 한 부분이었던 문반과 무반의 구성원 분석을 통해 이자의는 당시 정치적 지배세력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국가의 공식적 물리적 강제력인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알수 있다.2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자의의 난은, 인주 이씨와 왕실과의 혼인 관계를 분석한 다음 왕위를 둘러싸고 경원 이씨 일문의 頲ㆍ碩ㆍ顗ㆍ顥 4대 가 사이에 전개된 세력쟁탈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24) 다음과 같이 해석 될 수 있을 듯하다. 즉 이자의의 난의 실체란 선종이 죽은 뒤 어린 나이의 병약한 헌종이 즉위하자 명실상부한 왕권의 확립은 고사하고 헌종의 모후인 사숙태후에 의한 수렴정치가 행해지는 당시 상황 하에서, 헌종을 기준으로 한산후가 왕위 계승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 이자의와 선종을 기준으로 왕 위 계승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 숙종이 왕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이자 의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사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자의의 난은 비록 자신이 소유하였던 사적 군사력과 일부의 가족과 문반. 그 리고 무반의 중ㆍ하위집단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광범위한 지지세력을 확보 하지 못하였으며 국가의 공식적인 군사력을 운용하지 못하였던 한계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당시의 양측 세력의 불균형이라든 가 당대 병권 장악의 우열 등을 고려할 때, 이자의 모반 운운은 숙종 측을 미화하는, 다시 말해서 숙종 측이 조작한 정적 대숙청의 명분이라는 견해는 이자의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해석이라 할 것이다.

^{22) 《}高麗史節要》권 6. 헌종 1년 7월.

²³⁾ 秋萬鎬, 앞의 글, 34~37쪽에서 이자의 세력의 실체를 분석한 다음 헌종 원년 당시 양측의 세력균형은 성립되지 않았으며, 일방적이라 할 만큼 계림공 쪽에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여 이자의 세력의 미약함을 논증하였다.

²⁴⁾ 藤田亮策, 앞의 글, 117쪽.

(2) 숙종의 즉위 과정과 그 성격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계림공과 이자의가 왕위를 둘러싸고 전개했던 갈등 상황²⁵⁾은 이자의의 謀亂, 그리고 계림공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였던 邵台輔가 상장군 王國髦로 하여금 이를 진압케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계림공이 中書수 에 임용되어²⁶⁾ 전권을 장악하였고 같은 해 10일 현종의 선양에 의해 왕위를 계 승함으로써²⁷⁾ 일단락되었다. 계림공이 이자의의 난을 진압하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역시 이자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 여 이에 상응하는 세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할 것이다.

먼저 그의 세력기반으로 이자의가 소유하지 못하였던 국가의 강제적 물리력인 군사권의 장악을 들 수 있다. 이는 헌종 1년 權尚書兵部事로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왕국모²⁸⁾가 소태보의 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入衛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사 高義和로 하여금 이자의와 그의 무리를 제거하게 한 것으로 알 수 있다.²⁹⁾ 숙종과 이들과의 연결 시기는 선종 8년 9월 경인일에 있었던 賞春亭에서의 여진문제 논의에 계림공이 문하시랑평장사 柳洪·좌복야 소태보·상장군 왕국모 등과 함께 참여하였던 사실을들고, 그것은 여진에 대한 공동 대처의식과 왕실 및 국가보전이라는 원론적인 인식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견해³⁰⁾가 있다. 그러나 국가적 현안문제에 대한 뜻이 같았다는 사실만으로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계기로 제시된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계림공과 이들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의 합치 때문일 것이다.³¹⁾ 그밖에 군사력 운용에 실질적으로 참여하

²⁵⁾ 李丙燾, 앞의 책, 159쪽에서는 왕제 漢山侯 昀과 鷄林公 熙를 중심으로 한 왕 위 계승의 투쟁으로 이해 하였다.

^{26) 《}高麗史》 권 10, 世家 10, 헌종 1년 8월 을축.

^{27)《}高麗史》 권 10, 世家 10, 헌종 1년 10월. "制曰 朕承先考遺業 謬卽大位 年當 幼沖體亦病羸 不能撫邦國之權…朕當退居後宮 獲全殘命 乃命近臣金德鈞等 迎 鷄林公熙于宗邸 禪位 遂退居後宮"

^{28) 《}高麗史節要》 권 6, 헌종 1년 1월.

^{29) 《}高麗史》 권 95. 列傳 8. 邵台輔.

³⁰⁾ 金光植, 앞의 글, 117쪽.

³¹⁾ 정치세력의 결집 요인으로 盧明鎬,〈韓安仁一派外 李資謙一派의 族黨勢力-高 麗中期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韓國史論》17, 서울대 國史學科, 1987),

였던 2군 6위의 상장군·대장군 또한 숙종의 지지세력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다음의 인사이동과 숙종 즉위 이후 자신의 지지세력에게 행한 포상책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黃仲寶를 尚書左僕射로, 尹莘傑을 龍虎軍上將軍 兵部尚書로, 黃兪顯을 工部尚書로, 崔迪을 金吾衛上將軍 攝刑部尚書로 하였다(《高麗史》권 11, 世家 11, 숙종 즉위년 10월 경진).

황유현을 鷹揚軍上將軍 戶部尚書로, 최적을 神虎衛上將軍 刑部尚書로, 王惟烈을 金吾衛上將軍 工部尚書로 하였다(《高麗史》권 11, 世家 11, 숙종 1년 1월 정사).

숙종의 또 다른 세력기반으로는 측근세력과 당시 이자의의 세력으로 기능하지 않았던 중앙정계 구성원의 대부분, 그리고 사병세력 내지 상공업 등과관련을 맺고 있었던 인물들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의 諸王子들은 府를 설치하고 典籤・錄事・書藝 등의 관원을 두었는데,32) 계림공 역시 왕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부를 통해 측근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許慶의 예로33)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중앙정계 구성원의 대부분이 숙종의 지지세력이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자의의 난으로 화를 당한 인물이 거의 없으며, 선종 후반에서 헌종 1년에 이르기까지 중앙정계의 요직에 있었던 인물의대다수가 숙종 즉위 이후에도 정계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병세력내지 상공업 등과 관련된 인물들의 존재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밖에 등급을 뛰어 관직을 옮긴 자가 수백 인이며, 工商皂隷로서 顯職을 超授한 자가 있어도 有司가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高麗史》권 11, 世家 11, 숙종 즉위년 10월 경진).

위의 내용은 숙종 즉위년에 있었던 자신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포상조치 내용의 끝 부분이다. 이 가운데 '등급을 뛰어 관직을 옮긴 자'들은 관직에 재 직 중이었던 자로 생각되므로 숙종은 대부분의 관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상조예로서 현직을 초수받은 자'는 종전 세밀한 분 석없이 사병세력으로 이해되었으나,³⁴⁾ 최근에 "거상과 같은 막대한 경제력의

¹⁹⁵쪽에서는 친속관계의 유대와 각자의 사상 등에 따른 입장이나 이해관계의 합치라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32)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33) 《}高麗史》 권 97, 列傳 10, 許慶.

소유상태보다는 보다 미약한 경제력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존재들로서 이들이 숙종의 潛邸 시절에 숙종과 긴밀하였다는 것은 숙종 자신의 상업에 대한 깊은 관심 혹은 상업에서 수취되는 경제력을 그의 기반세력의 토대로 활용되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겠다"35)라고 하여, 이들을 숙종의 경제적 기반으로 이해하려는 견해가 발표되었다.

고려시대의 국내 상업은 관아 도시와 사원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관아도시 중에서도 개성의 市廛 상업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였고, 개성 시전은 중앙정부의 조달상 및 수도를 찾아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상인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활동을 외국무역으로 연결시켜 부를 축적하였다고 한다.36) 그리고 사원의 지원세력으로 기능하였던 豪商・大賈의 존재도 찾아진다.37) 한편 수공업에 의한 상업활동도 관청수공업이나 민간수공업을 막론하고 비교적 활발하였다.38) 그중 관청수공업은 정부의 용도와 수요에 따라 생산활동을 하였는데, 각 관청에는 이를 위해 해당 기술자인 工匠을 전속시켜 놓고 있었다.39)

수도에서 발생한 왕위 계승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였던「工商皂 謙」는 벼슬길에 들어가 사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존재들로서, 工技 이외의 일로 생업을 삼을 수 없었던 공장과, 소유한 부의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상인, 그리고 「조예」라 표현되었지만 일반 백성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이 숙종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자로서 侯·公에 봉해질 때 받았던 식읍 1,000호40)(공에 봉해졌을 때의 식읍 지급 내용은 알 수 없음)와 문종 30년의 녹봉규정에 의한 宗室祿 460석 10두41)와 같은 경제력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숙종은 자신이 소유하였던 경제력을 배경으로 자신의

³⁴⁾ 南仁國, 앞의 글, 135쪽.

³⁵⁾ 金光植, 앞의 글, 117~118쪽.

³⁶⁾ 姜萬吉, 〈商業과 對外貿易〉(《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196~198쪽.

^{37)〈}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302\,

³⁸⁾ 수공업에 대해서는 劉元東, 〈高麗時代의 商工業〉(《韓國文化史大系》2,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65), 姜萬吉〈手工業〉(앞의 책)등 참조.

³⁹⁾ 洪承基, 〈高麗時代의 工匠〉(《震檀學報》 40, 1975).

^{40) 《}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19년 2월 갑인.

^{41)《}高麗史》 권80, 志34, 食貨3, 禄俸.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병집단을 양성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숙종의 즉위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다. 선종사후 왕위 계승 의욕을 지니고 있었던 계림공과 한산후를 추대하려는 이자의사이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양 세력 가운데 왕위계승에 지나치게 간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권 강화에 장애적 요인으로 성장하였던 외척 인주 이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의 안정을 꾀하기위하여 당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소태보와 왕국모 및 2군 6위의 상위집단과 연결되었고, 나아가 당시 중앙정계 대다수 문·무반의 지지를 획득하였던 계림공이 이자의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헌종의 선양이란 형식을 거쳐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420 숙종의 왕위 계승은 「王室中興」 430이라 표현될 만큼 명분상으로도 이자의의 한산후 추대 의도를 압도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3) 왕권강화 정책과 그 의의

숙종은 즉위하던 그 날 元信宮主와 그 아들들인 한산후 형제를 慶源郡으로 유배시키고,44) 소태보를 守太尉 門下待中으로 하는 등의 중앙정계 개편을 단행하였다.45) 이후 그는 재위기간 동안 외척의 발호에 의하여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즉 태자 지위의 강화・義天에 의한 天台宗 개창의 지원・南京 경영・鑄錢政策의 실시・別武班 창설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왕권강화 정책에 대하여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 본 다음 그의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숙종은 문종대 이후 왕실과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어 온 인주 이씨를 중앙 정계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숙종의 재위 동안 중앙정계에서 활약하였던 인물들 로는 李瀕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계림공 시절 혼인하였던 貞州柳氏 柳洪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였을 뿐46) 역대 왕들처럼 여러 명의 비를

⁴²⁾ 南仁國, 앞의 글, 134~135쪽.

^{43)〈}崔繼芳墓誌〉(李蘭暎 編、《韓國金石文追補》,中央大出版部,1968),93等,

^{44) 《}高麗史》 권 11, 世家 11, 숙종 즉위년 10월 경오.

^{45) 《}高麗史》 권 11. 世家 11. 숙종 즉위년 10월 무인.

⁴⁶⁾ 정주 유씨에 대해서는 李樹健, 〈高麗時代 土姓研究〉上(《亞細亞學報》12, 1976,

맞이하지 않았다. 유홍의 정주 유씨가 《宋史》에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성씨집단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지만47) 숙종 당대에는 외척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이는 유홍과 그의 아들 柳仁著의 숙종 당대의 활동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유홍은 문종 25년 給事中·左承宣이 된 이후 中樞院使·參知政事를 거쳐 선 종 7년 2월 門下待郎平章事에 이르렀으나, 동왕 8년 11월 죽었으므로 숙종 재위 시기 동안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유인저도 숙종 다음의 예종대예 蔭職을 제수받아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동왕 3년 예부시에 급제, 8년 참지정사로 죽었기 때문에⁴⁸⁾ 숙종대 그가 외척으로 서 발호한 흔적은 없다. 이와 같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척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은 숙종이 왕권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배 경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왕위 계승권자인 태자의 지위 강화와 관련된조치 즉 詹事府의 강화이다. 첨사부는 현종 13년(1022) 장자 延慶君 欽을 왕태자로 책봉하면서 설치된 것이었으나,49) 하나의 완전한 기구로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첨사부의 관원은 현종 당시 師・保 및 司議郞 1인・司直 1인・通事 2인과 丞・注簿・錄事 각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50) 문종 8년에는 3품관이상의 손・5품관 이상의 아들 20인을 선발하여 東宮侍衛公子로, 5품관 이상의 손・7품관 이상의 아들 10인을 侍衛給事로 하였다. 그리고 동왕 22년 첨사부 관원의 증원과 품계의 확정 및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나51) 이 규정대로 임명된 예는 숙종대까지 찾아 볼 수 없다.

숙종은 3년(1098) 3월 "과인이 망녕되이 凉德으로서 태자를 두었으니 마땅히 震位에 올릴 것이므로 유사에 특명하여 태자첨사부・左春坊・延慶宮司 등의 관부를 갖추고 臣僕과 식읍을 모두 이에 예속케 하라"52) 하여 첨사부・좌춘방・연경궁사 등의 관부를 갖추고 문종 22년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71~72\(\}frac{1}{2}\) \(\frac{1}{2}\)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참조,

^{47) 《}宋史》 권 487, 列傳 246, 外國 3, 高麗.

^{48) 《}高麗史》 권 97, 列傳 10, 柳仁著.

^{49) 《}高麗史節要》권 3. 현종 13년 5월.

^{50)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東宮官.

⁵¹⁾ 위와 같음.

^{52) 《}高麗史》 권 11, 世家 11, 숙종 3년 3월 계해.

궁관원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숙종의 조치는 선종 사후 헌종대 약화된 왕권의 실체를 체험하였던 그로서는 태자에게 보다 안정되게 왕권을 물려주고자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⁵³⁾ 해석되기도 한다.

그리고 첨사부 소속의 관원으로는 소태보·황유현·黃瑩과 같이 숙종 즉위에 공로가 있었던 인물, 당시 중앙정계의 요직에 있었던 金上琦·崔思諏 그리고 尹瓘·文翼·魏繼廷 등 새로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던 인물들이 임명되었는데 이로써도 위에서 언급하였던 숙종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첨사부의 조직을 정비하고 나서 숙종은 5년 1월에 왕자 俁를 왕태자로 책봉하였으며,54) 첨사부와 춘방 소속관원에 대해서 2등급씩 加資하여55) 태자의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중앙정계의 개편, 왕위 계승권자인 태자의 지위 확립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자의의 난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사면조치를 단행하여,56) 이완된 민심을 수습하였다. 그리고 대장군 高文盖·張洪占·李弓濟와 장군 金子珍 등의 변란57)을 사전에 진압함으로써 더욱 왕권강화에 진력할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천에 의한 천태종의 개창 역시 왕권 강화의 한 측면을 지닌 것이었다.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시 불교계의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8) 고려사회는 11세기 이후 현종·문종대를 지나면서 집권적 귀족사회의 골격을 갖추고 차츰 문벌귀족층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려사회는 문벌귀족에 의해 장악되고 불교계도 이들의 영향력 속에서 좌우되는 실정이었다. 당시의 사정은 문벌귀족들이 개경을 중심으로 많은 願堂을 건립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사원 자체를 장악한다든가 심지어 그들의 자제를 대대로 출가시켜 교단 자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59)

⁵³⁾ 南仁國, 앞의 글, 137쪽.

^{54) 《}高麗史》 권 11, 世家 11, 숙종 5년 1월 을미.

^{55) 《}高麗史》 권 11, 世家 11, 숙종 5년 2월 을사.

^{56) 《}高麗史》권 11, 世家 11, 숙종 6년 2월 임자.

^{57) 《}高麗史》 권 96. 列傳 9. 崔思諏.

⁵⁸⁾ 蔡尚植、〈修禪結社 成立의 社會的 基盤〉(《高麗後期佛教史研究》,一潮閣, 1991), 34~35\.

⁵⁹⁾ 許興植,〈佛教와 融合된 社會構造〉(《高麗佛教史研究》,一潮閣, 1986) 참조.

당시 문벌귀족과 결탁되었던 대표적인 교단은 왕실과 연결되었던 화엄종과 경원 이씨세력과 연결된 법상종이었다. 이는 현종대 이후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정비되고 그 지배체제의 운영 주도세력인 문벌귀족이 대두하면서 보수적인 귀족불교의 성격인 법상종이 융성하고, 중앙집권화라는 정치적 배경으로고려초기 이래 성장한 화엄종의 지속60)이라는 이해에 근거한다.61) 반면에 지방사회의 향리층이나 대다수의 농민·천민층은 특정 종파세력과는 괴리된 채독자적인 신앙공동체를 결성하여, 정토신앙·공덕신앙을 기반으로 한 사원의소규모 造塔・鑄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팔관회·연등회 등과 같은 불교와 전통신앙이 결합하고 있는 형태의 신앙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형편이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문벌귀족에 의해 장악된 불교교단이 보수적 경향을 따게 되었을 때 의천이 출현하여 문벌귀족과 결탁된 불교세력에 대한 개혁, 나아가 왕실의 가장 암적인 존재인 문벌귀족 체제에 대하여 왕권강화의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의천의 불교계에 대한 개혁의도와 숙종의 왕권강화 정책이 연결되어 숙종의 강력한 지원하에, 선종대에 착수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완공되지 못하였던62) 國淸寺가 준공되고 국가권력이 개재된 상황에서 선종 승려들의 참여 속에 천태종은 개창되었다.63) 그러나 의천의 노력은 본질적으로 문벌귀족 체제와 동일한 기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와불교계에 대해 전반적인 개혁의 방향으로 안목을 돌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사회, 즉 기층사회에서 널리 유행하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지적649되기도 하였다.

숙종은 대각국사 의천의 "用錢을 시행하면 교환과 운반에 편리하고, 米・

⁶⁰⁾ 崔炳憲, 앞의 글, 참조.

⁶¹⁾ 崔柄憲,〈天台宗의 成立〉(《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77), 81쪽에서 화엄 종과 법상종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민중불교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화엄종이나 법상종은 법성종과 법상종이라는 교리 면에서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지만, 양자 모두 중앙집권 체제의 안정한 운영만을 위주로 하여 기성집단 세력의 유지만을 도모하는 왕실이나 외척세력 및 그와 연결된 문신귀족 등의 지배세력과 지나치게 밀착됨으로 말미암아 일반 민중불교와는 유리도가 심해졌다.

⁶²⁾ 선종대 국청사의 공사와 관련된 정치세력과 사원세력 간의 갈등은 金光植, 앞의 글, 121~127쪽 참조.

⁶³⁾ 許興植 앞의 책, 287쪽.

⁶⁴⁾ 蔡柄植, 앞의 책, 35쪽.

布에서 파생되는 수취 및 교환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고, 녹미의 독촉으로 피해를 입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미곡의 저축으로 인하여 흉년 에 대비할 수 있다"⁶⁵⁾는 주전건의 상소에 따라 동왕 2년(1097) 12월 아래의 교서로서 화폐유통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옛부터 우리나라의 풍속은 소박하고 간략하였는데, 문종대에 이르러 문물과 예약이 융성해졌다. 짐이 선왕의 유업을 이어 받아 장차 민간의 큰 이익되는 일을 일으키려고 하니 鑄錢官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통용케 하도록할 것이다(《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貨幣).

이후 화폐유통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6년 4월 주전도감에서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화폐를 사용하는 이점과 그 편함을 알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종묘에 고하도록 하소서"⁶⁶⁾ 하였고, 같은 해 銀瓶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하였다. 7년 12월에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데는 돈보다더 중요한 것이 없다. 서북 양국에서는 이를 시행한 지 오래되었으나 우리동방만은 아직 행하지 못하였다가 오늘날 비로소 鼓鑄(쇠를 녹여 돈 만드는것)의 법을 만들었다. 그 주조한 돈 1만 5천관을 재추·문무양반·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화폐통용의 시초로 삼게 하라"⁶⁷⁾하였으며, 이때 화폐의 명칭은 海東通寶라고 하였다.

이어서 "처음으로 용전함을 태묘에 고하고 즉시 京城에 左右酒務를 설치하고, 거리의 양쪽에는 신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각각 점포를 두어 화폐사용의이익을 크게 거두도록 할 것이다"68)라고 하였다. 그러나 화폐를 유통시킨지 3년이 되었지만 백성들이 가난하여 활발하게 통용시킬 수가 없었으므로 9년 7월 다시 官錢을 내려 주고, 주현에 명령하여 미곡을 내어 酒食店을 열게 하고, 백성들에게 사고 파는 것을 허락하여 화폐의 유리성을 알도록 하였다.⁽⁵⁹⁾

위와 같은 숙종대의 화폐 유통정책은 의천과 윤관 등의 건의와 郭尚 등의 반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다.70) 숙종대의 주전정책과 관련하여 의천의 주전

^{65)《}大覺國師文集》 권 12, 鑄錢建議上訴.

^{66)《}高麗史》 권 79, 志 33, 食貨 2, 貨幣.

⁶⁷⁾ 위와 같음.

⁶⁸⁾ 위와 같음.

^{69) 《}高麗史》 권 79, 志 33, 食貨 2, 貨幣・권 12, 世家 12, 숙종 9년 7월 신축.

^{70) 《}高麗史》 권 97, 列傳 10, 郭尚,

전의는 "의천이 화폐 사용을 열렬히 주장한 것도 당시 송과의 무역의 발달과 그의 탁월한 식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사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의 수준이 높았고 이를 이용할 필요성에서 주장되지 않았을까 한다"71)는 사원경제적인 면에서의 언급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왕권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성종대나 숙종대의 화폐 유통책은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력 강화와 국가재정 확보라는 정치적·재정적인 필요성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왕권강화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경경영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군사력 강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견해72)나 12세기 고려사회의 내적인 성장과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왕실의 회복·왕권강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도된 국가적 비상사태 하의 국가상업의 이익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구현된 것73)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그 예이다.

숙종대의 남경경영도 지리도참사상을 이용한 왕권강화 정책의 하나였다. 숙종 1년 7월 金謂禪의 남경건설을 주장하는 상소74)로 시작된 남경경영은 柳伸・庾祿崇 등 소수의 반대도 있었지만, 재상과 하위관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배경으로75) 동왕 4년 9월 宰臣과 日官으로 하여금 楊州에 남경을 건설하는 것을 의논케 하였으며, 곧 이어 왕비・원자・양부 관료들이 대각국사와함께 양주에 행차하였다.76) 이후 6년 9월에는 南京開創都監을 설치하고 최사추・윤관・任懿 등을 파견하여 터를 잡게 하였으며,77) 다음달에는 남경이 창건되자 이를 종묘・사직・산천에 고하였다.78) 9년 5월 남경에 궁궐이 완성되고.79) 7월 남경에 행차함으로써80) 남경경영은 일단락되었다.

⁷¹⁾ 許興植, 앞의 책, 10~11쪽.

⁷²⁾ 蔡雄錫、〈高麗前期 貨幣流通의 基盤〉(《韓國文化》9、 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 1988),90~94等。

⁷³⁾ 金光植, 앞의 글, 132~146쪽.

^{74) 《}高麗史節要》권 6. 숙종 1년 7월.

^{75)《}高麗史》권 95, 列傳 8, 柳伸"國家欲移都南京 宰相及庶僚 皆以爲可 伸與左 散騎常侍庾祿崇 獨言其不可."이 내용을 숙종대의 것으로 이해함은, 이병도, 앞의 책 참조.

^{76) 《}高麗史》권 11, 世家 11, 숙종 4년 9월 정묘・윤 9월 을해.

^{77) 《}高麗史》권 11, 世家 11, 숙종 6년 9월 정묘.

^{78) 《}高麗史》 권 11, 世家 11, 숙종 6년 10월 병신.

이러한 숙종의 남경경영은 그의 주전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주전론자의 대표자격이며 숙종의 측근으로 왕권강화를 돕고 있던 대각국사와 윤관이 남경 창선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한다. 숙종의 남경경영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에서는 남경설치의 이유를 "즉위시 인주 이씨세력과의 대결을 위해 서경계통 사람들의힘을 빌었으나, 다시 이들의 견제를 위하여 남경을 설치하여 양자간의 균형을 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왕 자신의 독자적 세력이 미약하고 귀족세력이 강할 때 귀족간 균형을 통해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일종의 미봉책 내지는 과도적 형태라 볼 수 있겠다"81)라고 하여 남경경영을 정치세력의 재편과 관련지워 이해하기도 하였다.

숙종 9년부터 고려와 여진의 군사적 충돌이 시작되었는데, 林幹과 윤관의 정벌이 실패한 이후 그 패인을「敵騎我步」에서 찾은 윤관의 건의에 의해 9년 12월 別武班이 설치되었다.82) 별무반은 약 17만 명 수준이었다고 전하는데, "문무 산관·서리로부터 상인·노복·승려 및 주·부·군·현"83)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이 광범위하였다. 고려시대의 군인들은 피복·무기 등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관례였다.84) 그러나 17만 명 수준이었다고 전해지는 별무반에게 제공되는 전투시의 군량 등 군수물자의 비용은 막대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국가적인 막대한 채정 보충의 필요성이 왕권강화의 기본구도와 연계되면서 주전정책이 전개되었다고 하는 견해85)도 있고, 별무반의 설치가 윤관이라는 숙종 측근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본관체제가 이완되면서「無賴」・「豪俠」의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징병이 실시되면 사회적 통제효과를 가져오고 그러한「無賴豪俠之徒」를 제도권내에 편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국왕을 중심으

^{79) 《}高麗史》권 12. 世家 12. 숙종 9년 5월.

^{80) 《}高麗史》권 12. 世家 12. 숙종 9년 7월 무술.

⁸¹⁾ 權純馨,〈高麗中期 南京에 대한 一考察〉(《郷土서울》49, 서울市史編纂委員會, 1989), 16쪽.

^{82) 《}高麗史》 권 96, 列傳 9, 尹瓘 및 권 81, 志 35, 兵 1, 兵制. 李基白, 〈高麗別武班考〉(《金載元回甲紀念論叢》, 1969). 金塘澤, 〈別武班의 設置와 軍制의 變化〉(《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참조.

^{83) 《}高麗史》 권 81, 志 35, 兵 1, 兵制, 숙종 9년 12월.

⁸⁴⁾ 李基白、〈高麗州縣軍考〉(《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14~216쪽,

⁸⁵⁾ 金光植, 앞의 글, 142~143쪽.

로 한 집권력의 강화를 가져 왔을 것이다⁸⁶⁾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숙종의 별무반 설치를 왕권강화 정책의 하나로 파악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⁸⁷⁾

숙종대에 행해진 왕권강화 정책, 즉 태자 지위의 강화·천태종 개창의 지원·주전정책의 실시·남경경영·별무반의 설치 등은 정치·경제·사상 등 모든 부분에 걸쳐 행하여졌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니는 의의는 보다 안정되고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지향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의 계승에 있었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88) 숙종의 왕권강화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았는데, 그것은 예종 1년 양부·대간 등에 의해 제기되었던 封事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2) 귀족사회 내의 갈등과 이자겸의 난

(1) 예종대 정국의 추이

숙종의 왕권강화 정책의 결과 안정된 왕권을 계승하였던 예종도 전대에 못지 않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는 즉위년(1105) 10월 土庶와 내관 사이의 교통과 청탁행위를 금지시켜¹⁾ 인사행정의 공정성 을 확보하려 하였다. 같은 해 12월 그는 교서를 내려 중앙의 문벌귀족과 연 계된 지방관리들의 謀利害民을 제거하고 이들을 왕권의 규제 아래 둠으로써 지방행정의 일원적 관료화를 시도하였다.²⁾

지금 각도 주군의 司牧으로서 청렴하여 백성을 걱정하고 돌보아 주는 자가 열에 한 둘도 없고, 잇속을 좇고 공명을 낚기만 하여 대체를 해치며, 뇌물을 좋

⁸⁶⁾ 蔡雄錫, 앞의 글, 93쪽.

⁸⁷⁾ 별무반의 설치를 왕권강화책과는 달리 군사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한 李基白은 "별무반의 주 구성원은 토지경작자인 농민(白丁)이며, 이들은 州鎭軍의 일정한 군사 조직 속에 편입되어 전투부대의 주력이 아닌 예비병력에 지나지 않았지만 별무반으로 강제 정발되어 전투부대로 나타난 것은 군역을 세습하는 軍班氏族의 몰락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그 배경으로 한다"하였으며(앞의 글, 49쪽), 金塘澤은 이기백의 견해를 근거로 하면서 "군반씨족의 와해로 인한 국방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이해하였다(앞의 글, 249쪽).

⁸⁸⁾ 南仁國, 앞의 글, 141쪽.

^{1) 《}高麗史》 권 12, 世家 12, 예종 즉위년 10월 경인.

²⁾ 申千湜、〈高麗 中期 教育理念과 國子監 運營〉(《高麗教育制度史研究》, 螢雪出版社, 1983), 53等.

아하고 사리를 꾀하여 생민을 괴롭히므로 백성이 흩어지고 도망하는 자가 서로이어 10호에 9호가 비게 되니 짐은 매우 이를 슬퍼하노라. 이는 실로 고을 수령의 인사고과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이 없기 때문이니 마땅히 명신을 보내어 군현을 순시하고 수령들의 성적을 매겨 알리도록 하라(《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즉위년 12월 갑신).

아울러 예종은 서해도의 儒州·安岳·長淵 등 여러 현에서 주민들이 유망하자 監務官을 파견하여 그들을 안무케 하였더니 드디어 유민이 돌아와 산업이 날로 성하게 되었던 예에 따라, 牛峯·坡平·安州·靑松 등 백성의 유망이 심하였던 군현지역에 감무관을 파견하여3) 貢賦를 장악하고 권농과 유민 평안을 통해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현의 영현화 작업을 행하였다.4) 인사행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행정의 일원적관료화의 시도 및 백성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조치들을 취한 다음, 예종은 보다 바람직한 국가경영을 위하여 양부의 近臣 및 대성의 諫官, 諸司의 知制誥등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진토록 하였다.5) 따라서 그들이 제기하였던 당시의 문제점을 《高麗史》와《高麗史節要》의 기록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 ① 논한 바를 몸소 행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조상의 유훈을 받들어 계승하도록 할 것.
- ② 사철의 기후에 맞추고 하늘에 따르는 월령을 행할 것.
- ③ 종묘와 사직단을 수리하고 이에 따른 그릇과 의복을 갖출 것.
- ④ 天壽寺의 역사를 중지할 것.

^{3) 《}高麗史》 권 12, 世家 12, 예종 1년 4월 경인・3년 7월 신유. 예종 때 파견된 감무관에 대해서는 元昌愛,〈高麗 中・後期 監務增置와 地方制度의 變遷〉(《淸溪史學》1, 1984). 羅格淳,〈高麗時代의 監務에 대한 研究〉(《閔丙河停年紀念史學論叢》1988). 金東洙,〈高麗 中・後期의 監務派遣〉(《全南史學》, 1989). 李仁宰,〈高麗中後期 地方制 改革과 監務〉(《外大史學》3, 1990) 등 참조.

⁴⁾ 李仁宰, 앞의 글, 132~133쪽. 한편 채웅석은 이 때의 감무관 파견이 "실제로 는 속현 지역이 퍼폐되고 그에 따라 유망 등의 형태로 저항이 광범위하게 일 어나자, 그 현상들을 공권력으로 억제하고 안정적인 수취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12·13세기 향촌사회의 변동과 '민'의 대응〉《역사와 현실》3, 1990, 66쪽).

^{5) 《}高麗史》 권 12, 世家 12, 예종 1년 6월 병술.

^{6)《}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1년 7월 신축 및《高麗史節要》권 7, 예종 1년 7월、《高麗史節要》의 내용이《高麗史》의 기록보다 더 상세하다.

- ⑤ 화폐의 사용을 금지할 것.
- ⑥ 복식제도의 문란함을 바로잡을 것.
- (7) 문무관료의 진퇴 즉 인사행정상의 공정을 기할 것.
- ⑧ 을해년 악역을 저질러 유배된 자에 대한 사면조치를 취할 것.
- ⑨ 간음을 범한 승도로 향호에 충당된 자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 ⑩ 중외의 법사에서 문죄하는 세 번의 고문을 가려 할 것.

이상 제기된 열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예종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 것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으로 대별된다. 먼저 긍정적으로 대응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 ①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에 두고 잊지 않고 거의실행하였다" 하였으며, ②와 ③에 대해서는 "有司로 하여금 상세히 알려서시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⑥에 대해서는 "그 복식제도에서 상하가되섞였다는 것은 선대부터 아직 정해진 법이 없었고, 임금과 신하가 백성에게 솔선하여 검소를 행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므로 임금과 신하가 절검을 몸소 행하여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못 백성이 보고 느껴존비의 구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신하들의 검소한 생활을 요구하였다.

⑦에 대해서는 "문무관료가 공도 없이 녹봉만을 탐내고 직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가뭄과 蝗蟲 재해가 자주 이르니, 대거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물러가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요체이다. 그러나 온갖 관직이 지극히 번잡하여 짐이 다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만약 어질고 착한 이가 아랫자리에 있으면 재상이 이를 천거하고 간사하고 탐한 자가 관직에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지 않거든 대간에서 이를 내쫓아라"하여 인사문제에 있어서 재상과 대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8) ⑧에 대해서는 "을해년에 惡逆을 범하여 유배된 자는 마땅히 각각 감형하고 서용할 것이며, 연좌되어 재산을 몰수하고 노예로 삼은 자는 이를 면제하고 노예에 속하지 않은 자도 아울러 돌보아 주라"하였는데, 특히 이들에 대한 서용 조치는 숙종 5년 개경으로 돌

^{7) 《}高麗史節要》권 7. 예종 1년 7월.

⁸⁾ 申千湜, 앞의 책, 51쪽에서는 "문벌로서 관직을 제수받은 자들의 안일한 근무 자세에 대한 규제이며, 동시에 이들의 근면과 태만을 대간으로 하여금 규찰하 게 함으로써 왕권적 차원에서 관료체제의 모순을 지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의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아 왔던 인물들에 대한 혜택으로 이자의의 난에 연루되어 화를 당하였던 자들에게 사면과 서용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치지배세력 내부에 존재하였을 갈등을 해소코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9)

그리고 ③에 대해서는 "승도로서 간음을 범하면 길이 향호에 충당하여 사면을 거쳐도 용서되지 않음은 가혹한 것이니, 마땅히 유사에게 시켜 조사하고 살펴서 군역에 충당케 하라"하였다. 그리고 ⑩에 대해서는 '법사는 짐의 형벌을 조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뜻을 알아서, 이미 죄상을 자백한 자는 죄의 輕重을 논할 것 없이 반드시 고문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한편 수용하지 않았던 ④와 ⑤에 대한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④에 대해서 《高麗史節要》에는 "先考께서 세우기 시작한 것인데, 얼마되지 않아 승하하자 중론이 벌떼같이 일어나 다투어 간하여 말리니, 짐도 그 불가함을 알면서도 다만 선고의 뜻을 따르려고 아직 감히 罷去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짐의 허물이다"라고 하여 천수사의 역을 파하기로, 즉 그들의 견해를 받아 들이는 자세를 취한 듯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高麗史》에는 "천수사의 역사는 집 또한 가부를 아는 바이나 聖考께서 짓기 시작하였을 때를 당하여서는 한사람도 감히 말하는 이가 없더니 승하하신 이후에 중론이 벌때같이 일어나 다투어 간하여 말리려 하니, 짐이 의리로써 생각하여 보건대 지세의 길흉이란이것이 꺼림의 적은 일인 것이니 어찌 선인의 뜻을 따르는 것만 같으리요, 오직 금년 봄의 역사는 짐의 과실이니 마땅히 사면령에 의거하여 삼년 후에 이를 행할 것이다"하여 숙종의 眞殿寺院이었던10 천수사의 역사는 일시 중단할뿐이라 하였지만, 9월 숙종의 왕권강화 정책의 시행에 적극 참여하였던 윤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하여11) 이의 지속적인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⁹⁾ 南仁國,〈高麗 睿宗代 支配勢力의 構成과 動向〉(《歷史教育論集》13·14, 1990), 405쪽. 洪承基는 이 조치의 대상이 된 공노비가 당대에 정치권력의 심층과 연결되어 있었던 당당한 귀족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귀족들에 대한 국왕의 관용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은 최소한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왕의 양보, 국왕에 대한 귀족세력의 우위를 과제로 해서 이루어진 양자 사이의 타협 내지 조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高麗前期의 奴婢政策〉,《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170쪽).

¹⁰⁾ 許興植, 앞의 책, 70~71쪽.

^{11) 《}高麗史節要》 권 7, 예종 1년 9월.

⑤에 대해서는 "화폐를 사용하는 법은 곧 오랜 옛날 제왕이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요, 나의 선고께서 재화를 모으려고한 것은 아니다. 하물며 大遼가 근년에 또 용전을 시작한다 함을 들음에 있어서라. 무릇 한 가지 법을 만들면 많은 비방이 일어나는 까닭에 옛 글에 백성과는 시작할 때 의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뜻밖에 여러 신하는 태조의 유훈에 당과 거란의 풍속의 사용을 금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하여 화폐사용을 배척하나, 그 금하는 바는 대개 풍속과 사치를 말한 것 뿐이니 문물・법도 같은 것이야 중국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선조의 유훈이 금하는 바는 화폐의 사용을 말함이 아님이 분명하다. 지금 마땅히 그만두어야 할 것은 오직 관문과 나루의 商稅 뿐이다"라고 하여 숙종의 주전정책은 재화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富國便民」을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예종은 양부와 대간, 제사의 지제고 등의 건의 내용 가운데 당시 상황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나 준수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그들에게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이나 개선되어야 할 것 및 담당하여야 할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숙종대에 행해진 정책에 대해서는 비록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예종의 대응책은 숙종에 의해 추진되었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결과 별무반이란 별도 부대의 창설로 이어졌던 여진정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음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즉위년 12월에 宰樞와 더불어 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12) 이듬해에는 도병마사에서 군령과 군기의 확립 및 군사전력의 정예화에 관련된 대책을 제시하자 이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다.13) 그러나 예종은 즉위 이후 중앙정국 운영의 주도적위치를 점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 주는 사료는 없지만 예종 즉위 년 11월 문하시중이었던 魏繼廷이 "또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어 침묵

^{12) 《}高麗史節要》 권 7, 예종 즉위년 12월.

^{13) 《}高麗史節要》 권 7, 예종 1년 7월.

으로 일관하여 건의한 바 없었다"¹⁴⁾라고 하고 있음에서 당시 정치지배세력 내부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음과 예종이 제시하였던 교육정책이 어느 누구 의 지지도 받지 못하였음¹⁵⁾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상황 하에서 예종의 혼인이 1년 6월에 28세의 나이로 선종의 딸 延和宮主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의 혼인대상이 종실녀였음은 왕위 계승권자의 혼인에는 적합한 것이었지만,16) 역대 왕들의 혼인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이루어졌음17)과, 현존하는 고려시대 戶口單子의 분석을 통해서 당시인들의 혼인 연령이 20세 이하였음 및 혼인 연령의 파악이 가능한 금석문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혼인 연령이 16세에서 25세 사이였다는 연구성과18)를 감안한다면 그의 혼인은 상당히 늦은 것이었다.

왜 예종의 혼인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19) 즉 숙종은 비록 헌종의 선양에 의하여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고, 즉위 이후에는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숙종은 새로운 외척집단이 앞선 시기의 상환처럼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것을 우려하였거나, 보다 강력한 왕권의 확립에 조력할 수 있는 집단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배세력 내부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혼인대상의 선정에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예종의 경우 그는 왕위 계승권자의 지위를 태자로 책봉되는 순간부터 차지하였으나, 당시 宗室女 거의 대부분이 인주 이씨의 소생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예종은 선종의 딸 연화궁주와의 혼인에 이어 3년 1월에는 이자겸의 딸과 혼인하였다. 예종의 이 혼인은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자겸의

^{14) 《}高麗史》 권 95, 列傳 8, 魏繼廷.

^{15) 《}高麗史節要》권 7, 예종 2년 1월. 《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學校, 예종 2년.

¹⁶⁾ 鄭容淑、("高麗史" '后妃傳'의 檢討〉(《高麗王室族內婚研究》, 새문사, 1988), 43~45쪽 참조.

¹⁷⁾ 鄭容淑, 위의 책, 100~101쪽의 주 40 참조.

¹⁸⁾ 許興植.〈高麗時代의 家族構造〉(《高麗社會史研究》,亞細亞文化社. 1981),309쪽.

¹⁹⁾ 南仁國, 앞의 글, 407쪽.

인주 이씨계열은 숙종 재위기간에 이자의의 난과 숙종의 반인주이씨 정책으로 중앙정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의 이혼인에 대한 기존연구에서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자겸의 장인이자 숙종대에 시중을 역임하였던 최사추나 숙종의 처남이며 자신과 동서였던 柳仁著의 인품과 지위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20) 왕위쟁탈전에서 패배한 이자의와 종형제 사이인 이자겸의 딸과 바로 숙종의 아들인 예종 사이에 혼인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은 왕실과 인주 이씨의 강력한유대가 없이는 왕권의 존립이 위태로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21) 예종이 어리고 그가 경원 이씨의 모든 요구에 대항할힘이 없어 이루어진 것,22) 이 혼인에는 숙종대의 왕권강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성장시켜 온 집단을, 숙종대 정계에서 배제되었던 집단에 대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을 견제하고나아가 자신이 정국 주도의 중심적 위치에 서고자 한 예종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23) 등이다. 혼인에 대한 해석이 어떠하든, 이를 계기로 이자겸의중앙정계에 있어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한편 예종은 선대에 추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여진정벌을 2 년(1107) 12월 논의를 거쳐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王寅日에 여진을 치려 하여 順天館의 남문에 거둥하여 열병하고…왕이 듣고 重光殿 佛龕에 간직하여 두었던 숙종의 誓疏를 꺼내어 양부 대신에게 보이니, 대신들이 받들어 읽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聖考의 遺旨가 깊고 간절함이 이와같은데 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글을 올려 선왕의 뜻을 이어 적을 치기를 청하였다. 왕은 망설이며 결정을 짓지 못하고 崔洪嗣에게 명하여 太廟 에서 점치게 하였더니, 坎의 旣濟卦를 얻었으므로 드디어 출병하기로 정하였다 (《高麗史節要》권 7, 예종 2년 10월 및《高麗史》권 96, 列傳 9, 尹瓘).

이어서 예종은 윤관을 元師로 吳延寵을 副元帥로 임명하여 여진정벌을 단행

²⁰⁾ 朴性鳳、〈高麗 仁宗期의 兩亂과 貴族社會의 推移〉、(邊太變 編《高麗史의 諸間題》、三英社、1986)、162等.

²¹⁾ 金潤坤, 〈高麗 貴族社會의 諸矛盾〉(《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1977), 42~43쪽.

²²⁾ Edward J. Shultz, 〈韓安仁派의 登場과 役割〉(《歷史學報》99·100, 1983), 149等.

²³⁾ 南仁國, 앞의 글, 408쪽.

하였고 그 결과 9성을 개척하였다.²⁴⁾ 여진정벌에 공을 세웠던 윤관은 3년 4월 門下侍中 判尚書吏部事 知軍國重事에 임명되어 관리의 인사권과 병권을 장악하는 최고의 실력자로 등장하였다.²⁵⁾ 그러나 9성의 개척과 더불어 이를 유지하는 문제와 여진과의 빈번한 충돌 그리고 여진의 지속적인 환부 요구에 의한 9성의 처리문제 및 윤관에로의 지나친 권력의 집중현상은 당시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여기에 9성 개척 이후에도 계속된 여진과의 전투에서 윤관·오연총이 패전함에 따라 4년 6월 최홍사·金景庸·任懿 등에 의해 시작된「敗軍之罪」에 대한 책임 추궁이²⁶⁾ 또 하나의 쟁점으로 대두하였다.

이러한「敗軍之罪」의 추궁과 아울러 9성 환부 논의가 시작되었으며,27) 9성의 환부에 대한 처리는 다음달 재추와 대성·제사의 지제고·侍臣·都兵馬判官 이상 문무관리가 회의하여 환부를 결정한 다음²⁸⁾ 이를 여진에게 통보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러나 당시 양부·대간들의 윤관과 오연총의「패군지죄」에 대한 처벌 요구는 계속 유예시켜 오다가, 9성 개척의 공으로 윤관과 오연총에게 부여하였던 功臣號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였다.²⁹⁾

한편 예종은 4년 7월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새로운 인재의 발굴과 양성에 진력하였다. 중앙에서는 국학에 七齋를 설치하고 文의 六齋 즉 麗澤(周易)· 待聘(尚書)·經德(毛詩)·求仁(周禮)·服膺(禮記)·養正(春秋) 등에는 대학생 崔 敏庸 등 70명을 시취해서 각 재에 분거케 하고 武의 講藝齋에는 韓自純 등 8명을 뽑아 교육받게 하였다. 이와 아울러 국학에 양현고를 두어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학사의 신축과 학관의 보장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3京 8枚에 通判 이상 및 지주사·현령으로서 문과 출신자에게 학사의 管勾를 겸직케 하는 등 교육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였을30) 뿐만 아니라 과거

^{24) 《}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2년 12월 병신·3년 2월 무신·3월 경진.

^{25) 《}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3년 4월 임오.

^{26) 《}高麗史節要》 권 7, 예종 4년 6월.

^{27) 《}高麗史》권 13, 世家 13, 예종 4년 6월 병신.

^{28) 《}高麗史》 권 13. 世家 13. 예종 4년 7월 을사.

^{29) 《}高麗史節要》권 7, 예종 5년 12월. 「패군지죄」의 논의 과정은 南仁國, 앞의 글, 411~413쪽 참조.

^{30)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이와 관련해서는 申千湜의 앞의 책과 金

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관료선발 체계를 확립하였다.31)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개편과 과거응시자격의 제도화의 결과 문벌 자제와 일반 자제들의 차등이 불식되고, 실력에 의한 새로운 인재 발굴이 제도화됨으로써 전통적 문벌귀족 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32)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예종 1년에는 수용하지 않았던 천수사의 공역에 대하여 6년 11월 유사의 요청과 7년 2월 간관의 상소를 수용하는³³⁾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예종은 왕 측근 인물의 전횡을 제어하는³⁴⁾ 한편 10년 2월에는 당시 일곱 살에 지나지 않았던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고 동궁관의 관원을 정예화하여 왕위계승권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에도 적극 간여하였다. 10년 5월의 과거에서는 합격자의 대책이 이전 사람의 것을 답습하였다는 낙제자의 소청을 받아 들여 覆試케 하였으며,35) 11년 4월에는 禮部試 합격자 이외의 인물에게도 복시에 응시케 하여 급제자를 선발하는36) 등이 그 예이며, 예종의 이러한 과거에의 간여는 당시 왕권이 거의 절대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37) 그

鎔坤、〈高麗時期 儒教官人層의 思想動向-文宗에서 忠肅王期를 중심으로-〉(《國史館論叢》6, 1989), 78~79쪽 참조.

^{31) 《}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예종 5년 9월. 이에 대한 해석에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許與植은 "①製述・明經의 國子監試에 새로 합격한 자는 국자감에 3년간 소속시킨다. ②入住한 자는 300일이 지나야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다. ③西京은 留守官이 진사를 選上한다. ④鄉貢은 東·南京과 8牧 3都護 등 界首官이 前의 격식대로 선발하여 보낸다"로(《高麗 科學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28쪽), 申千提은 "①은 국자감 재생들의 제술 명경업에 대한 응시요건, ②는 문음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官路에 진출한 자들의 응시요건 ③은 서경 재생들의 응시요건, ④는 항공 즉 지방의 향교에서 수업한 자들의 응시요건"으로(앞의 책, 56쪽), 朴龍雲은 "②제술・명경・諸業에의 新學者는 국자감에 3년간 소속하면서 仕滿三百日 해야 각 業의 監試에 赴擧하는 것을 許하고 ④서경인즉은 유수관이 選上하며, ⑤항공인즉은 東·南京・八牧・三都護 등 계수관이 前式에 의거하여 試選해 申省토록 하였다"(《高麗時代 蔭叙制와 科學制研究》, 一志社, 1990, 184쪽) 등을 들 수 있다.

³²⁾ 申千湜, 앞의 책, 56~61쪽.

^{33) 《}高麗史》권 13, 世家 13, 예종 6년 11월 경신・7년 2월 경술.

^{34) 《}高麗史》 권 13, 世家 13, 예종 8년 2월.

^{35) 《}高麗史》권 14, 世家 14, 예종 10년 5월 정해·권 73, 志 27, 選擧 1, 選場 예종 10년 5월. 복시에 관해서는 柳浩錫, 〈高麗時代의 覆試〉(《全北史學》8, 1984) 참조.

^{36)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選場 예종 11년 4월.

리고 11년의 관제 개편시에는 淸讌·寶文閣을 설치하여 그 당시 文名이 뛰어 난 자들을 소속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經筵³⁸⁾ 활동에 참가케 하여 그들의 정 치적 활동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그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갔다.

이상에서 예종대 정국의 추이를 정리해 보았다. 당시 정국의 전개과정에서 정치 지배세력 내부의 갈등은 윤관과 오연총의 9성 개척과 이로 인한 세력의 결집, 그리고 이들에 대한「패군지죄」추궁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다. 즉 여진정벌의 추진으로 이의 주체적 수행집단인 윤관의 세력결집이 있었고³⁹⁾ 여진정벌 이후 확보된 9성의 환부를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윤관·오연총의「패군지죄」추궁과 맞물려 윤관세력의 해체를 가져 왔다.⁴⁰⁾ 윤관세력의 해체는 당시 정치 지배세력 내부에 어떠한 인물에게 권력의 집중 현상이 초래되었을 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았던 대응세력의 존재를 알려주며, 그들 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이합집산을 보여 준다. 그리고 예종의 왕권강화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이를지자하는 새로운 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들과 기존 세력과의 갈등 역시 있었을 것이나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채 예종대를 마감하였다.⁴¹⁾ 그와 같은 갈등이 현실적으로 표출된 것은 인종 즉위년에 있었던 이자겸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韓安仁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사이의 대립이었다.

(2) 인종의 즉위와 이자겸의 난

인종의 즉위 이후 정치 지배세력 내부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현실화한 것은 인종 즉위년(1122) 12월에 이자겸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한안인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을 제거한 일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는 다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³⁷⁾ 許興植, 앞의 책, 36쪽.

³⁸⁾ 고려시대의 경연에 대해서는 權延雄의 〈高麗時代의 經筵〉(《慶北史學》6, 1982) 이 있다.

³⁹⁾ 鄭修芽,〈尹瓘勢力의 形成一尹瓘의 女眞征伐과 관련된 몇 가지 問題의 檢討를 중심으로-〉(《震檀學報》66, 1988) 참조.

⁴⁰⁾ 鄭修芽, 위의 글과 南仁國, 앞의 글 참조.

⁴¹⁾ 朴性鳳, 앞의 글, 162쪽에서는 "어느 한편에게 권력이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 왕권이 안정되고 외척귀족과 관료귀족 간에 어느 정도 세력균형이 잡혀진 시 기였다"고 하였다.

왕(예종)이 죽자 태자는 어리고 여러 왕제들이 왕위를 넘보았는데, 이자겸이 태자를 받들어 즉위케 하니 이가 인종이다. …자겸의 권세가 날로 성하여 자신에게 아부하지 않는 자는 온갖 꾀로 중상하였다. 왕제 帶方公 俌는 京山府로 유배하고, 平章事 韓安仁은 해도로 귀양을 보냈다가 죽였으며, 崔弘宰・文公美・李永・鄭克永 등 50여 인은 귀양보냈다(《高麗史》권 127, 列傳 40, 叛逆 1, 李資謙).

임인년 4월 僕(예종)가 죽자 여러 아우들이 왕위를 다투었다. 숙종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우가 장남이었다. 자겸이 이미 인종을 즉위시켰는데 작은 아버지 대방공 보가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마침내 문하시랑 평장사 한교여(안인의 초명), 추밀사 문공미와 더불어 계획을 세우고 이에 예부상서 이영·이부시랑 정극영·병부시랑 임존 등 십여 인이 내용하였으나, 일을 치르기도 전에 누설되어 곧 체포되었다. 자겸이 곧 왕에게 간하여 보는 해도에 유배하고 群惡은 죽이고 支黨으로 체포된 자가 수백 인이었다(《高麗圖經》권 8, 人物, 守太師尙書令 李資謙).

이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출신 배경을 근거로 누대 문벌귀족 대 신진 관료 세력의 분열·대립으로 보았거나42) 예종 사후 지나치게 세력이 강대해진 이자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한안인 세력의 도전에서 비롯된 것으로,43) 또는 예종대 이래 외척 내지 문벌들의 부당한 정치 간여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유신들을 제압하고자 가장 대립의 형세를 취해 온 한안인·문공미등을 이자겸 세력이 전격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44) 등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이자겸 및 그 일파의 문벌귀족 세력이 그들에게 도전해 오는 지방출신의 신진관료 세력을 제거·추방하려는 정치적 책동으로,45) 또 다른 경우이자겸 일파와 한안인 일파는 예종대에서 인종대에 걸친 시기의 고려조정의대표적인 세력들로서 전자는 이른바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대귀족에 뿌리를두고 있었고 후자는 중소귀족 내지는 신진세력에 속하는 부류라고 규정한다음 이들 두 세력의 대립에 기인한 것으로46) 해석하기도 한다.

반면에 이 사건이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주 장⁴⁷⁾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종의 추대를 추진하였던 이자겸을 대표로 하는

⁴²⁾ 金潤坤, 앞의 글, 40~50쪽.

⁴³⁾ Edward I. Shultz, 앞의 글, 163쪽.

⁴⁴⁾ 朴性鳳, 앞의 글, 163쪽.

⁴⁵⁾ 姜晋哲, 〈개요〉(《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1977), 2쪽.

⁴⁶⁾ 盧明鎬, 앞의 글, 169쪽.

세력과 보다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지향하면서 대방공 보를 추대하려던 한안인을 대표로 하는 세력 사이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전개된 갈등으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 48) 후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존재는 아래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예종이 즉위하자 侍學한 舊恩으로써 왕과 친밀하여 권세를 부렸고, 왕의 은 총이 점점 더함에 형제와 인척이 모두 그 연줄로써 중요한 지위를 나누어 차지하였고 사대부 중에서 권세와 이익을 따르는 자들이 붙지 않은 자가 없었다(《高麗史》권 97, 列傳 10, 韓安仁).

한편 이자겸을 대표로 하는 세력에 의해 유배되거나 파직당한 인물들은 다음 과 같다.

한안인을 昇州의 甘勿島에 유배하였다가 물에 빠뜨려 죽였다. 문공미는 충주에 유배되었다. 韓柱(惟忠의 舊名)는 한안인의 일당이라 하여 靈光郡 松島로 유배하였다. 또 이영과 정극영은 외지에 유배되었다. 한안인의 형 상서우승 安中·아우 僧 永倫·사촌동생 예부낭중 冲·아내의 아우 시어사 林存·사위 합문지후 李仲若·아들 緽 등 4인, 문공미의 아우 지후 公裕·僧 可觀·극영 누이의 사위 右正言 崔巨鱗·姻姬(사돈) 원외랑 任元濬, 안중의 아들 綸 등 5인, 이영의 아들 元長 등 3인이 모두 연좌되어 유배되었다. …형부에서 또 좌정언李逢原, 司天監 全幹, 殿直 安天餉 등이 늘 한안인의 집에 모여 반드시 음모에가담하였을 것이니 그 직을 박탈하자 하였다(《高麗史》권 97, 列傳 10, 韓安仁).

한안인과 함께 화를 당하였던 인물들 대부분이 가족관계와 혼인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들을 족당세력으로 규정하고, "한안인 일파에 가담한 족당세력은 친족관계가 결코 單系的인 것이 아니고 남녀를 통한 다양한계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촌수로 나타낼 수 있는 親疏 관계의 차이에 의해원친보다는 근친 간에서 결집되고 있는 양측적 친속관계의 특징을 보여 준다"49)라는 견해가 있어 이들의 성격을 이해함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들이하나의 세력으로 결집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는 "구성원간의 혼인과 친족적 유대, 개경 정치무대에 새롭게 등장하여 경험이 없는 많은 경기지역 출

⁴⁷⁾ 金庠基, 앞의 책, 339~340쪽.

⁴⁸⁾ 南仁國、〈高麗 仁宗代 政治支配勢力의 成分과 動向〉(《歷史教育論集》15, 1990), 81~82\.

⁴⁹⁾ 盧明鎬, 앞의 글, 178~183쪽.

신자들 사이의 지역적 유대, 비슷한 교육배경과 대간으로서의 활동, 禪宗과의 유대 등에 의한 것"50)이라거나 "족당세력의 결집에는 친속관계의 유대와 또 다른 결집요인 즉, 각자의 사상 등에 따른 입장이나 이해관계의 합치도 작용하였을 것"51)이라는 등의 견해가 있어 이 시기 정치 지배세력의 결집계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위의 사건을 거치면서 이자겸의 정치적 입지는 보다 확고해졌으며, 그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였던 金仁揆·朴昇中·崔弘宰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와 아울러 이자겸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최홍재를 제거하여⁵²⁾ 정치적·군사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에 반발하는 인물들을 중앙 정계로부터 배제하는 한편,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면서 배타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손자인 인종에게 자신의 셋째 딸을 들이어⁵³⁾ 외조부이자 장인이란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이중적 신분을 확보하였다.

태자로 책봉되어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배우자는 공주 또는 왕실의 여자로 함이 원칙이었는데,54) 인종의 혼인은 이를 무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종의 원칙에서 벗어난 혼인에 대하여, 즉위 당시 14세에 불과하였고 왕위를 둘러싼 불안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자겸의 도움으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혼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55)과 인종의 혼인이 왕위계승과 관련된 사건 이후 이루어졌음과 인종의 혼인 연령이 역대 왕의 그것과비교하여 일렀던 것을 근거로 보다 강력한 왕권의 옹호세력을 필요로 하였던 인종과 배타적인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였던 이자겸의 정치적 목적이 일치함으로써 이루어진 상호 호혜적인 타협책의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56)

⁵⁰⁾ Edward I. Shultz, 앞의 글, 148쪽.

⁵¹⁾ 盧明鎬, 앞의 글, 195쪽. 그는〈高麗時代의 親族組織〉(《國史館論叢》3, 1989), 115~116쪽에서 정치적 세력집단의 결집에는 이해관계나 입장의 합치가 주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여 기왕의 견해를 보완하였다.

^{52) 《}高麗史》권 125, 列傳 38, 姦巨 1, 崔弘宰 및 앞서 인용한 권 127, 李資謙傳의 내용 중 최홍재가 한안인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53) 《}高麗史》 권 127. 列傳 40. 叛逆 1. 李資謙.

⁵⁴⁾ 鄭容淑, 앞의 책, 45쪽.

⁵⁵⁾ 鄭容淑, 위의 책, 44쪽.

⁵⁶⁾ 南仁國, 앞의 글, 83~84쪽.

인종대 초기의 정치상황을 배경으로 한 이자겸 일인으로의 지나친 권력집 중은 예종대 여진정벌 이후 윤관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당시 정치 지배세력 내부에 반윤관세력의 결집을 초래하였던 것처럼⁵⁷⁾ 이자겸에 대한 적극적 내지 소극적 반대세력의 성장을 가져 왔다. 반이자겸세력의 존재는 인종 4년(1126) 2월에 있었던 이자겸과 척준경의 제거 움직임과 이자겸의 난의 발생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알 수 있다.

내시지후 金燦·내시녹사 安甫鱗이 동지추밀원사 智祿延, 상장군 崔卓·吳卓, 대장군 權秀, 장군 高碩 등과 더불어 이자겸과 척준경의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겸과 준경이 병사를 거느리고 궁궐을 침입하였다. 임술일에 궁궐은 불타고, 계해일에 왕을 위협하여 남궁으로 옮기고 안보린·최탁·권수·고석 및 숙위하던 좌복야 洪灌 등 17인을 죽였으며, 나머지 군사들도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4년 2월 신유).

자겸은 녹연 및 오탁의 아들 子升, 석의 아우 甫俊을 죽이고, 찬을 먼 지방에 유배하였다. 녹연과 찬의 처와 아들을 몰수하여 노비로 삼았다(《高麗史》 권 127, 列傳 40, 叛逆 1, 李資謙).

이자겸의 전횡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인종과 인종의 이자겸에 대한 그와 같은 반응을 인지한 인종의 측근이었던 김찬·안보린 등,58) 그리고 이자겸 군사력의 근간이었던 척준경의 전횡에 반발한 상장군 최탁·오탁 등의59) 무신이 연결되어 이자겸과 척준경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 이자겸의 난으로 가는 단초였다. 즉 당시 정계의 원로였던 金仁存과 李公壽 등이 "왕이 외가에서 성장하였으므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지금은 그들의 당여가 조정에 가득한 만큼 경거망동해서는 아니되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60)고 우려했던 것처럼 이자겸과 척준경을 제거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화를 당하였다.

더욱이 이자겸은 김안과 최탁 등에 의하여 화를 당하였던 인물들에게 증 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왕의 측근이었던 내시 25인을 축출하여⁶¹⁾ 일시적이

⁵⁷⁾ 南仁國、〈高麗 睿宗代 支配勢力의 構成과 動向〉(《歴史教育論集》13・14, 1990). 412~413쪽 참조.

^{58) 《}高麗史》 권 127, 列傳 40, 叛逆 1, 李資謙.

⁵⁹⁾ 위와 같음.

^{60) 《}高麗史節要》권 9, 인종 4년 2월.

^{61) 《}高麗史》 권 127, 列傳 40, 叛逆 1, 李資謙.

나마 왕권을 무력화시켰고 이로 인해 인종은 이자겸에게 선위의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금관계도 정치 지배세력 구성원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자겸과 척준경은 사대하기로 결정하는⁶²⁾ 등 국가의 중요 정책마저 자의적으로 처리하였다.

이자겸의 난의 개요는 인종 4년 5월 "이자겸이 군사를 보내어 장차 御寢을 범하려 하자 왕이 비밀히 척준경을 회유하여 자겸을 잡아 가두었다"⁶³⁾와 "이자겸과 처자를 외지에 유배하고 나머지 무리는 원지에 유배하였다"⁶⁴⁾란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화를 당한 인물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이자겸과 처 최씨 및 아들 之允을 靈光에, 之美를 陝州에, 公儀를 珍島에, 之 彦을 巨濟에, 之甫를 三陟에, 義莊을 金州에, 之元을 咸從에 유배하였다. 합문지후 朴彪·文仲經, 直長 朴永, 太史令 梁麟, 冬官正 梁獬, 내시 李叔晨·李芬, 대 장군 金好, 장군 池顥·池福臣, 낭장 崔思琰, 별장 位好, 散員 宋用中 등 30여인 및 官私奴 무릇 90여인을 먼 지역에 유배하였다. …그 親黨 평장사 資德·김인규, 동지추밀원사 金義元·王毅, 예빈경 李資元, 殿中少監 朴孝康, 지후 李存은 모두 수령으로 내렸다(《高麗史》권 127, 列傳 40, 叛逆 1, 李資謙·《高麗史節要》권 9, 인종 4년 5월).

이자겸의 난에서 주목되는 점은 먼저 척준경의 반이자겸화이다. 그는 인종 4년 2월의 사건에서 아들과 아우를 잃었으며, 이자겸과는 사돈 사이였는데, 그가 崔思全의 중재에 의하여 친인종 세력이 되기 전까지는⁽⁵⁾ 이자겸의 강력한 군사적 기반이었다. 그러하였던 척준경의 반이자겸화는 김찬·최탁 등의 거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빛어진 '射宁位 火宮禁 罪當死'라는 국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관련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야기되었다.⁽⁶⁾

이자겸과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하였던 인물의 대강은 위에 제시된 화를 당

^{62) 《}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4년 3월 신유.

^{63) 《}高麗史》 권 15, 世家 15, 인종 4년 5월 을유.

^{64) 《}高麗史》 권 15, 世家 15, 인종 4년 5월 병술.

^{65) 《}高麗史》 권 98, 列傳 11, 崔思全.

^{66) 《}高麗史》 권 127, 列傳 40, 叛逆 1, 李資謙.

南仁國은〈高麗 仁宗代 政治支配勢力의 成分과 動向〉(《歷史教育論集》15, 1990), 86쪽에서 "이자겸과 척준경은 어디까지나 국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권력을 장악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운용하려 하였다. 따라서 척준경의 반이자겸화에는 이자겸이 국왕의 존재를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즉 이자겸의 왕위 찬탈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였는데 참고로제시하여 둔다.

하였던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자겸과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로 연결되었던 친속집단과67) 이자겸이 권세부릴 당시부터 아부하여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켜 온 박승중·許載·崔湜 등68)과 같은 인물, 그리고 이자겸의 제거세력과는 반대의 입장을 가졌던 尹先·金好 등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인물, 왕 측근이면서도 이자겸의 입장에 섰던 내시나 宦者趙寧 및 중·하급관료들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이자겸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집단을 형성하였던 것은, 그들을 결집시킨 요인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자겸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였음에 기인할 것이다. 이는 이자겸의 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자겸의 아들 義莊에 의해서 동원된 불교계 세력 즉 승병집단도이에 가담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⁶⁹⁾ 이에 대하여 완결된 논문은 아니지만, "이자겸의 난은「禁中作亂」제거라는 기치 아래 근왕적 명분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당시 이 난에 가담하였던 隨院僧徒의 활동이「祈神鳳門柱」이후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들이 내세웠던 대의명분과 실제 사이에 나타난 괴리에 회의를 품고 무력활동을 중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70)는 해석도 있다.

이자겸의 인종폐립 주장은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분석해 볼 때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 바 있지만,71)「十八字爲王說」에 근거하여 반왕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는 것이 기왕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자겸의 난의 성격이 그러하다면 이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에 대한 사후 조치가 유배나 외직으로의 貶黜에 그쳤던 점으로 미루어 과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남게 된다. 한편 근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자겸에 의해 인종 초년에 정계에서 축출되거나 죽음을 당하였던 인물들의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⁶⁷⁾ 盧明鎬, 앞의 글, 172~178쪽 참조.

^{68) 《}高麗史》 권 125, 列傳 38, 姦巨 1, 朴昇中.

^{69) 《}高麗史》 권 127, 列傳 40, 叛逆 1, 李資謙.

金潤坤、〈李資謙의 勢力基盤에 대하여〉(《大丘史學》10, 1976).

林英正、〈麗末鮮初의 私兵〉(《韓國史論》,國史編纂委員會,1981).

李相瑄, 〈高麗時代의 隨院僧徒에 대한 고찰〉(《崇實史學》2, 1981) 등 참조.

⁷⁰⁾ 秋萬鎬, 앞의 글, 55쪽.

⁷¹⁾ 藤田亮策、〈李子淵と其の家系〉(《靑丘學叢》13・15, 1933・1934).

라는 의문점이 역시 남는다. 따라서 이자겸의 난은 당시 정치 지배세력 내부에서 권력의 배타적 장악과 이에 대한 반발에서 빚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자겸에 의하여 정계에서 축출되었던 인물들 대부분이 이자겸의 축출 이후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하였거니와이자겸의 난에 연루되었던 인물들도 상당수가 다시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고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정치 지배세력 내부의 갈등은 더욱심화되고 그것으로 인한 새로운 사건발생이 예견되었다.

3) 서경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

(1) 이자겸의 난 이후 정국의 추이

이자겸이 축출된 이후 인종은 이자겸의 두 딸을 폐하고, 任元厚의 딸을 새왕비로 맞이하였으며,1) 추밀원부사 金富軾 등을 송에 보내어2) 송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대외정책의 변화를 가져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종은임원후와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학문적 소양을 기반으로 진출하였던 유신들로 하여금 정국을 주도하게 하였는데,3) 그것은 인종의 즉위 이래 행하여진바 없었던 경연이 다시 재개되었음을4)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자겸의 제거 이후 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질서는 즉각 수립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자겸과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였으나 난에 대한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으로 친인종 세력화하여 이자겸과 그의 지지세력을 제거하였던 척준경과 그의 지지세력이 존재하였으며, 동왕 4년 2월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유배되었던 김찬이 정계에 복귀하고5) 인종의 즉위와 관련하여한안인과 함께 화를 당하였던 문공인·문공유·최유청·한유충 등이 소환되

^{1) 《}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4년 6월 을묘.

^{2) 《}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4년 9월 을축.

³⁾ 朴性凰、〈高麗 仁宗期의 兩亂과 貴族社會의 推移〉(《高麗史의 諸問題》, 1986) 166等.

^{4)《}高麗史》 권 15, 世家 15, 인종 5년 3월 계축・잡인・을묘. 權延雄、〈高麗時代의 經筵〉(《慶北史學》5, 1985) 참조.

^{5) 《}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4년 10월 임자. 《高麗史節要》권 9, 인종 4년 10월.

어 복귀하였을6)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계 축출에 적극 개입하였다가 이자 겸에 의해 유배되었던 최홍재조차 소환되는7) 등,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인물들이 당시 정치 지배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었다.8) 그러한 상황은 이 자겸과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하였던 인물들조차 완전히 정계에서 축출되지 않고 건재하였으며,9) 아니면 척춘경처럼 정치적 입장의 전환을 계기로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었던 인물의 존재10) 등을 통해서도 집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준경은 인종 4년 6월 문하시중에 임용되어 전권을 행사하였고, 그의 발호를 못마땅히 여긴 인종의 입장을 이해하였던 좌정언 鄭知常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핵을 받아 巖墮鳥로 유배되었다.11) 즉 "병오년 봄 2월에 준경이 최식 등과 더불어 대궐을 침범할 적에 주상께서 神鳳門의 문루에 나오셔서 군사에게 효유하는 뜻을 말하니 모두 갑옷을 벗고 환성을 올려 만세를 부르는데, 다만 준경이 조서를 받들지 아니하고 군사를 위협하여 앞으로 날아오는 화살이 주상의 수레 위로 지나가기까지 하였으며 또군사를 이끌고 액문으로 돌입하여 궁궐을 불태웠으며 이튿날 남궁으로 옮겨 앉으시자 측근에 있던 사람을 모두 죽였으니 옛날부터 난신 중에 이와 같은 자는 적었습니다. 5월의 사건(이자겸의 체포를 의미)은 일시의 공로요 2월의 사건은 만세의 죄인이오니 폐하께서 비록 차마 못하시는 마음이 있으셔도어찌 일시의 공으로 만세의 죄를 덮겠습니까"라는 상소가 그것이다. 이 때 최준경의 지지세력이었던 최식・李侯進 등도 함께 유배되었다.

척준경과 그 지지세력의 정계 축출은 위와 같은 정치상황 하에서 인종이이자겸에 의해 화를 당하였던 김찬(安으로 개명)을 통하여 정지상・妙淸・白壽

^{6) 《}高麗史》 권 15. 世家 15. 인종 5년 4월 을유.

^{7) 《}高麗史節要》 권 9, 인종 6년 6월.

⁸⁾ 朴性鳳, 앞의 글, 167쪽.

南仁國、〈高麗 仁宗代 政治支配勢力의 成分과 動向〉(《歷史教育論集》15, 1990), 88쪽 등 참조.

^{9)《}高麗史》권 98, 列傳 11, 高兆基.

¹⁰⁾ 重興宅 (이자겸의 私第)의 執事였던 金義元・崔滋盛과 처음에는 이자겸 지지 세력의 일원이었다가 친인종화하였던 金珦 등을 들 수 있다.

^{11) 《}高麗史節要》권 9, 인종 5년 3월. 《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5년 3월 을묘.

翰 등의 서경 세력과 연계되어서12) 가능하였던 것이다. 비록 척준경의 제거가 정지상으로 대표되는 서경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당시 정치 지배세력의 대부분이 가담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자겸에로의 권력집중이 가져 온 결과를 직접 체험하였던 그들로서는 어느 개인의 국왕을 능가하는 권력 독점을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13)

최준경의 제거 이후 인종은 서경에서 "작년 2월 亂臣賊子들이 틈을 타서일어나 음모가 발각됐으므로 짐은 부득이 다 법으로 다스렸다. 이로부터 잘못을 반성하고 몸을 책하니 덕에 부끄럼이 많다. 이제 日官의 논의로 西都에 행차하여 지난날 허물을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므로 중외에 포고한다"는「惟新之敎」15개 조14)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① 方澤에서 토지의 신에게 제사지내어 四郊의 기운을 맞을 것.
- ② 사신을 지방에 보내어 자사·현령의 잘잘못을 조사하여 그를 포상하거나 좌 천하게 할 것.
- ③ 수레나 복장의 제도를 검약하게 하도록 힘쓸 것.
- ④ 쓸데없는 관원과 급하지 않은 사무를 제거할 것.
- ⑤ 농사일을 힘쓰게 하여 백성의 식량을 풍족하게 할 것.
- ⑥ 侍從官이 모두 한 사람씩 천거하도록 하고, 천거된 사람이 올바른 인물이 아니면 그를 벌할 것.
- (7) 국고의 식량 저축에 힘써서 백성을 구제할 일에 대비할 것.
- ⑧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것에 제도를 세워 일정한 조세와 공물 이외는 함 부로 걷지 못하게 할 것.
- ⑨ 군사를 보살피어 일정한 시기에 훈련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복무하지 않 도록 할 것.

^{12) 《}高麗史》권 127, 列傳 40, 叛逆 1, 妙淸. 姜玉葉, 〈高麗中期 西京勢力의 政治 的 性向〉(《白山學報》36, 1989), 87쪽에서는 인종이 서경세력과 연계될 수 있 었던 것은 그들이 지닌 왕권 지지성향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¹³⁾ 南仁國, 앞의 글, 88~89쪽 참조.

^{14) 《}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5년 3월 무오에는 10개 조만 수록되어 있으며 《高麗史節要》권 9, 인종 5년 3월에는 15개 조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이 15 개조에 대한 분석은 姜聲媛,〈妙淸의 再檢討〉(《國史館論叢》13, 1990), 190~ 191쪽 참조.

- ① 백성을 보살피어 지방에 정착하여 살게 하며 도망하여 흩어지지 않도록 할 것.
- ① 濟危鋪와 大悲院에는 저축을 풍족히 하여 질병에 걸린 자를 구제할 것.
- ① 국고의 묵은 식량을 억지로 빈민에게 나누어 주고서 무리하게 그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또 묵고 썩은 곡식을 백성에게 찧으라고 강요하지 말 것.
- ③ 선비를 선발하는데 詩·賦·論을 쓰게 할 것.
- (4) 모든 고을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확충할 것.
- ⑤ 산림이나 못에서 생산되는 이득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며 침해하지 말 것.

인종의 이와 관련된 배경 설명과 15개 조의 「유신지교」를 "왕권의 회복이나 정치 기강의 확립과 함께 기층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민생 구휼정책을 주로 시행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¹⁵⁾으로 이해하면서 이는 "고려사회에 노정된 정치·사회적 문제를 깊이 통찰한 끝에 국정 전반에 걸쳐일대 정치 쇄신을 이루고자 천명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다"¹⁶⁾거나 또는 "서경에서의 이런 조치는 당시 국운의 융창, 基業 연장의 의도에서 서경에巡駐할 때는 구폐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령으로 재출발함으로써 기업을 새롭게 하고 인심을 쇄신시킨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¹⁷⁾ 등으로 높이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만큼의 실천의 효과를 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일종의 형식적 고전적 虛禮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⁸⁾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그 내용이 두 차례의 정치적 격변을 거친 이후에도 관리의 기강 확립과 백성의 생활안정 및 풍속의교정 등에 관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정국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하여 이로써 인종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¹⁹⁾도 있다.

¹⁵⁾ 朴性鳳, 앞의 글, 175쪽.

¹⁶⁾ 朴性鳳, 위의 글, 173쪽.

¹⁷⁾ 金庠基、〈妙淸의 遷都運動과 稱帝建元論에 대하여〉(《東方史論叢》, 서울大出版部, 1974), 75~76等.

¹⁸⁾ 李丙燾、〈仁宗朝의 妙淸의 西京遷都運動과 그 叛亂〉(《高麗時代의 研究》, 1980), 198等.

인종의 서경 세력과의 연계는 기존 정치 지배세력 내부에 동요를 가져 와인종의 새로운 구상을 적극 지지하는 문공인·林景淸·洪彝敍 등의 집단과이에 반대하는 임원후·김부식·문공유 등의 집단으로 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종의 입장에서는 당시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반대 집단에 대하여 강력한 응징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경 세력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내정개혁을 통해그들을 지지세력화 하는데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종이 이러한대응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종의 새로운 구상에 반대하는 집단에는 새로이 외척이 된 임원후,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추구하다가 화를 당하기도 하였던 문공유 및 당시 정국을 주도하였던 유신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김부식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20)

따라서 인종 10년(1132) 8월 서경 세력의 핵심이었던 묘청에 대한 기존의정치 지배세력의 공세가 있기 전까지의 정치상황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있다. 즉 이자겸의 제거 이후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의 존재와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경 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확실한 지지세력의 확보에 주력하였던 인종과, 자신들의 기득권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련된 인종의 내정개혁21)에는 적극 참여하면서도 인종의 서경세력과의 긴밀한 밀착에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기존의 정치 지배세력과의 세력균형이 유지되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이해는 이 시기에 경연이 활성화되고 대간들의 언론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자겸 등이 탈취하였던 土田과 臧獲을 모두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22) 나아가서는 척준경의 처자에게 직전을 환급하고 이자겸의 아들들인 李之美 형제들에게 편리한 대로 한 곳에 모여 살도록 허락하는23) 등 당시 다양한 정치적성향을 지녔던 인물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 내부에 잔존하였을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등에 기인한다.24)

¹⁹⁾ 南仁國, 앞의 글, 89쪽.

²⁰⁾ 위와 같음.

²¹⁾ 朴性鳳, 앞의 글, 172~179쪽 참조.

^{22) 《}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5년 10월 정묘.

^{23) 《}高麗史》 권 16, 世家 16, 인종 7년 3월 경인.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종은 정치기강의 확립을 통한 臣者의 도리와 君命의 회복 등 왕권의 신장에 주력할 수 있었다.²⁵⁾ 이것은 인종이 승선 鄭沆에게 宋의 《忠義集》을 강독하게 한 것,²⁶⁾ 백관으로 하여금 태조의 《誠百寮書》를 초록하여 그 자손에게 훈계하도록 한 것²⁷⁾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2) 서경천도 논의의 전개와 묘청의 난

묘청·백수한·정지상 등에 의한 서경천도 주장은「西京王氣說」에 의해 인종 6년 8월에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 ① 서경으로 행차하였다. 승 묘청과 分司檢校少監 백수한이 스스로 陰陽의 술법을 안다 하고 허황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시켰다. 정지상은 서경 사람이라 그 말을 깊이 믿고 말하기를 '上京은 터의 힘이 이미 쇠하여 궁궐이 다 타서 남은 것이 없고, 서경에는 王氣가 있으니 마땅히임금이 옮겨 앉아 상경으로 삼아야 된다'하였다. 마침내 근신 김안과 모의하기를 '우리가 만약 왕을 모시고 서도로 옮겨 앉아 상경으로 삼는다면 마땅히 중흥공신이 될 것이니, 다만 일신만이 부귀할 뿐 아니라 자손에게도 무궁한 복이 될 것이다'하였다.
- ② 드디어 말을 퍼뜨려 서로 칭찬하며 근신 홍이서·이중부 및 대신 문공인·임경청이 따라 호응하여 드디어 글을 올려 아뢰기를 '묘청은 성인이요, 백수한도 그 다음이니 국가의 일을 모두 물은 다음에 행하고 그들이 건의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아들인다면, 정치가 이루어지고 일이 잘되어 국가를 가히 보전할 것입니다'하고, 이에 차례로 서명을 청하니 평장사 김부식·참지정사 임원후·승선 이지저들만은 서명하지 않았다. 글월이 올라가니 왕이 비록의심을 가졌으나 여러 사람이 강력하게 말하므로 믿지 않을 수 없었다.
- ③ 마침내 묘청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서경의 林原驛 지세를 관찰하니 이것 이 곧 풍수들이 말하는 큰 꽃 모양의 터입니다. 만약 궁궐을 지어서 거처하 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으며, 금나라가 폐백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 며, 서른 여섯 나라가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하므로 이번 행차가 있었다 (이상 《高麗史節要》권 9, 인종 6년 8월).
- ①의 내용에서 서경천도의 명분으로 기능하였던 것은 풍수지리 도참사상

²⁴⁾ 南仁國, 앞의 글, 89~90쪽 참조.

²⁵⁾ 朴性鳳, 앞의 글, 174쪽 참조.

^{26) 《}高麗史》 권 16. 世家 16. 인종 7년 8월 무신.

^{27) 《}高麗史》 권 16, 世家 16, 인종 9년 5월 병오.

에 의거한 「서경왕기설」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이자겸의 난을 지적하고 있음을, 그리고 인종과 서경세력의 연계에는 앞절에서도 살펴 본 것처럼 인종의 측근이었던 김안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 가운데 "우리들이 만약 왕을 모시고 서도로 옮겨 앉아 상경을삼는다면 마땅히 중흥공신이 될 것이니, 다만 일신만의 부귀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무궁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28》를 통해서 그들 의식의 밑바탕에는 귀족정치에 대한 불만이 흐르고 있음과 천도운동을 통해서 국가를 維新하고 중흥공신이 되자는 것으로 개경에 전통적 생활기반을 가진 문벌귀족의세력을 이 기회에 억눌러 버릴 의도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②의 내용에서는 서경천도와 관련하여 당시 정치 지배세력 내부에서 묘청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집단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서경천도 운동에 참여하였던 집단에 대하여 이자겸 등의 문벌귀족과 부단한 대립과 투쟁을 전개하여 온 세력을, 즉 지방의 토착세력을 배경으로 중앙에 진출한 신진관료군으로 파악하고 당시 신진관료군 중에는 "이 부패한문벌귀족을 정계에서 몰아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에 가담 동조하였던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믿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29)라고 하여 신진관료군으로 그 성격을 규정한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서경천도 운동을 추진하였던 묘청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신진관료군의 대표적 인물로 거론되는 문공인은 묘청을 성인으로, 그의 아우 문공유는 그를 妖人30)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통해 볼 때 신진관료군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지녔다고 볼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③의 내용에서는 서경천도의 또 다른 명분 즉 서경의 임원역지가 大花勢 (보통의 明堂보다 룰륫하고 뛰어난 大明堂·大吉地)31)의 자리라고 하는 풍수지리 사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곳에 궁궐을 지어 천도하면 금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고려의 신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종 초년에 이자겸·최준경 등에 의해 채택되었던 기존의 외교정책 즉 금에 대한 사대정책의 파기를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²⁸⁾ 金潤坤, 〈高麗 貴族社會의 諸矛盾〉(《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1977), 69쪽,

²⁹⁾ 金潤坤, 위의 글, 71쪽.

^{30) 《}高麗史節要》 권 10, 인종 11년 11월.

³¹⁾ 李丙燾, 앞의 책, 201~202쪽 참조.

인종 6년 8월에 있었던 서경천도 주장은 위 ②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인종에 의해 수용되었다. 인종은 다음달 서경에 호종하여 온 재신과 추신에게 명하여 묘청·백수한 등과 함께 임원역 지역에 새 궁궐 지을 터를 보아 정하게 하였으며,32) 11월에는 임원역을 옮기고 신궁을 짓는데 내시낭중 김안으로 하여금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33) 그리고 다음해 2월 서경에 새 궁궐이 이루어지자 인종은 서경에 행차하였다34)는 과정을 통해서 "묘청의 새 궁궐을 짓자는 上言으로부터 약 6개월만의 일로서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을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새 궁궐 창건이 국왕 뿐만 아니라 조정 신료들의지지와 협조 아래 수행된 것임을 짐작케 하는 것"35)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종이 서경의 새 궁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이가 표를 올려 왕을 권하여 황제라 일컫고 원년의 칭호를 정하라 하고, 어떤 이는 표를 올려 劉齊와 동 맹하여 금을 협공해서 멸하기를 청하여36) 「칭제건원론」과 「금국정벌론」이 제기되었다. 인종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에 계속 사신을 파견하여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칭제건원론」과 「금국 정벌론」은 인종 10년에 다시 거론되었는데 이는 다음의 내용으로 알수 있다.

서경의 父老 檢校太師致仕 李濟挺 등 50인이 표를 올려 奪號와 연호를 새로올릴 것을 청하니, 묘청과 정지상의 뜻을 따른 것이다. 정지상 등이 왕을 달래기를 '대동강에 서기가 있으니 이것은 神龍이 침을 토하는 것으로서 천 년에한 번 만나기도 드문 것입니다. 청컨대 위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아래로 백성의 희망을 좇아서 금을 누르도록 하소서'하였다. 왕이 이것을 李之氏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금은 강적이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양부의 대신이上都에 머물러 지키고 있으니 편벽되게 한 두 사람의 말만 듣고 大論을 결단할수 없습니다'하니 왕이 '그렇다'고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0, 인종 10년 3월).

^{32) 《}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6년 9월 병오.

^{33) 《}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6년 11월 무신.

^{34) 《}高麗史》권 16, 世家 16, 인종 7년 2월.

³⁵⁾ 金南奎,〈仁宗代의 西京遷都運動과 西京叛亂〉(《高麗兩界地方史研究》, 새문사, 1989), 86쪽.

^{36) 《}高麗史節要》권 9, 인종 7년 2월. 고려의 대금관계에 대해서는 金潤坤, 앞의 글, 64~65쪽. 朴賢緒,〈北方民族과의 抗爭〉(《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4), 290~328쪽. 姜聲媛, 앞의 글, 187~188쪽 등 참조.

「칭제건원론」은 묘청·정지상 등의 서경 세력에 의해서만 주장된 것은 아니었다.「칭제건원론」의 대표적 주장자는 尹彦頤로 그의「칭제건원」과 관련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中軍(김부식)이 아뢴 바 '언이는 지상으로 더불어 생사를 같이 할 무리관계를 맺게 되어 크고 작은 일을 실로 같이 상의하였습니다. 임자년 西幸 때에 있어 연호를 세우고 황제라 일컬을 것을 청하였으며 또 국학생을 충동하여 前件의 일을 아뢰었으니 대개 大金을 격노케 하여 일이 일어나면 그 사이를 타마음대로 처치하고 외인과 朋黨이 되어 不軌를 꾀하고자 함이니 신하의 뜻이 아닙니다'라 한 것을 뛷이 재삼 읽어 본 뒤에 마음이 편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연호를 세우고자 청한 것은 임금을 높이려는 정성에 근본한 것입니다. 우리본조에 있어서도 태조와 광종의 옛 일이 있으며 과거의 문헌을 상고하건대 비록 신라・발해도 建元을 하였으나 큰 나라에서는 일찍이 군사를 가하지 않았으며 작은 나라도 감히 그 실수인 것을 의논한 일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聖世에와서 도리어 참락한 행위라고 합니까(《高麗史》권 96, 列傳 9, 尹瓘 附 彦頤).

그는 가까이는 고려의 태조와 광종의 예를 들고 멀리는 신라와 발해의 예를 들어 모두 연호를 세웠으나 그렇다고 하여 다른 강대한 나라가 군사를들어 친 일이 없고 약소한 나라로서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논한 일도 없는데 하필 聖世에 도리어 참람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다. 이러한 윤언이의 주장은 '저 嬰退保守主義者요 고루하고 편협한 사대주의자 김부식 일파에게 頂門의 일침을 가한 것이다"37)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서경왕기설」과「대화세설」등에 근거하여 서경의 임원역지에 새 궁궐이 세워지고 이를 계기로 서경천도론이 제기되면서 당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정치 지배세력 내부의 대립을 가져 왔다. 인종 10년 8월에 任元敱(뒤에 元厚로 바꿈)가 "묘청·백수한 등이 그 간특한 꾀를 방자히 하여 괴상스럽고 허탄한 말로써 뭇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혹하게 하는데 한두 명의 대신과 근시들이 그들의 말을 깊이 믿어 위로 주상의 귀를 혹하게 하니, 신은 장차 불측한 환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묘청 등을 저자에 내다 목베어 화근을 근절하도록 하소서"라고 글을 올렸다.38) 이에 대하여 묘청 등은 "주상께

³⁷⁾ 金庠基, 앞의 책, 85쪽.

^{38) 《}高麗史節要》권 10, 인종 10년 8월.

[《]高麗史》 권 95, 列傳 8, 任懿 附 元厚.

서는 마땅히 대화궐에 오랫동안 거처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근시를 보내어 예의를 갖추어 御座를 설치하고 御衣를 모셔 두고는 공경해 받들기 를 주상께서 계신 것 같이 하면 복과 경사가 친히 계신 것과 다름없을 것이 오니 이것을 일러 法事를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이 때 중 서시랑평장사 문공인과 내시 내부원외랑 이중부가 어의를 받들고 서경으로 가서 법사를 행하였음39)을 통해 대립 양상을 알 수 있다.

임원애의 묘청 처벌의 상소에 이어서 이듬해 11월에 李仲과 문공유 등이 상소하여 묘청과 백수한 같은 妖人의 斥遠을 요구하고,40 12년 5월에는 林完이 인종의 求言에 응하여 묘청의 목을 벨 것을 상소하기41에 이르렀다. 인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묘청에 대해 이와 같이 기존 정치 지배세력의 공세가가능하였던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하였을 것42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인종의 적극적인 지지세력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인종과의 연계를 계기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나아가서는 권력마저 장악하려던 서경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기존의 정치 지배세력이 인식하게 되었음을 들고 있다. 다른하나는 비록 서경 세력과의 연계를 통하여 왕권의 강화와 확실한 지지세력의 학보에 주력하였던 인종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경 세력의 정치적 목적이 드러난 이상 서경 세력이라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세력보다는이에 대응하는 기존의 정치 지배세력을 자신의 지지세력화하는 것이 보다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같은 해 9월에 묘청 등이 굳이 西巡을 청하여 역모를 이루고자 하였을 때, 왕은 양부에 이의 가부를 의논케 하였는 데 김부식이 "올 여름에 벼락이 서경의 乾龍殿을 친 것이 길한 징조가 아니 온데 벼락친 그 곳으로 재앙을 피하여 간다는 것이 또한 어긋나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금 추곡을 거두지 않았는데 행차를 출동하면 반드시 벼를 짓밟게 될 것이니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뜻이 아닙니다"하고 아뢰어 간관과

^{39) 《}高麗史節要》 권 10, 인종 10년 11월.

^{40) 《}高麗史節要》권 10. 인종 11년 11월.

^{41) 《}高麗史節要》 권 10, 인종 12년 5월. 《高麗史》 권 98, 列傳 11, 林完.

⁴²⁾ 南仁國, 앞의 글, 91쪽.

함께 상소를 올려 그 불가함을 주장하자, "말한 바가 지당하니 짐이 감히 서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한⁴³⁾ 인종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묘청과 정지상의 뜻에 따라 칭제하고 건원하자는 우정언 黃周瞻의청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이상 이자겸의 제거 후 정치공백기에 나타난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경천도의 이론적 근거로서 풍수지리 도참사상에 근거한 「서경왕기설」과 「대화세설」을 제시하고, 대내적으로는 「청제건원론」을 대외적으로는 「금국정벌론」을 주장하였다고 요약할수 있다. 이 가운데 국왕의 권위 신장과 관련되었던 「청제건원론」은 당시 정치 지배세력의 일부에서도 수용할 만큼 인종도 상당히 호의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 주창된 「청제건원론」이나 「금국정벌론」은 서경 천도를전제로 하고 주장한 것인 만큼44) 기존의 정치 지배세력이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즉 기존의 정치 지배세력들이 이자겸의 난 이후 서경세력에게 빼앗겼던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한 상황이 전개되자, 이에 반발하여 인종 13년(1135) 1월 묘청과 유감 등이 서경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물이 김부식이었다.

묘청의 난 발생과 그에 대한 대응은 다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 ① 무신일에 묘청과 柳旵이 分司侍郎 趙匡 등과 더불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制書를 위조하여 留守와 員僚를 잡아 가두고, 또 僞承宣 金信을 보내어 서북면병마사 李仲 등과 여러 성의 군사·장교와 상경의 사람으로 서경에 있는 자는 귀천을 막론하고 또한 모두 구류하고, 군사를 파견하여 铝嶺을 단절하였으며, 또 사람을 보내 위협하여 여러 성의 군병을 징발하고 국호를 大爲, 기원 연호를 天開라 하였으며 정부의 부서를 정하고 그 군대를 天遣忠義라 이름하였다.
- ② 왕이 재추들을 불러 의논하고 평장사 김부식・참지정사 임원후・추밀원승선 金正純에게 명하여 병부에 앉아 군사를 동원하여 적을 토벌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김부식・임원후를 中軍師로, 김정순・鄭旌淑・盧令 琚・林英・尹彦頤・李瑱・高唐愈・劉英을 그 佐로, 이부상서 金富儀를 左軍師로,金端・李愈・李有開・尹彦旼을 그 佐로,知御史臺事 李周衍을 右軍師 로,陳淑・梁祐忠・陳景甫・王洙를 그 佐로 삼았다(이상《高麗史節要》권 10, 인종 13년 1월).

^{43) 《}高麗史節要》권 10. 인종 12년 9월.

⁴⁴⁾ 金庠基, 앞의 책, 86쪽.

묘청과 조광 등에 의해 주도되었던 서경에서의 반란은 이들을 宣諭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內侍 柳景深・曹晋若・黄文裳 등에 대해 보여 주었던 예우적인 태도를 근거로 왕실에 대한 반역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45) 또는 국호와연호를 제정하면서도 새 황제를 옹립하지 않았던 점과 인종에게 그들 자신의거사 소식을 알렸다는 점 등46)에 근거하여 정권 탈취는 의도하였을지언정 고려왕조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경에서의 반란은 기존 정치 지배세력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되고 그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칭제건원론」과 「금국정벌론」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마련된 하나의 주의주장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해 주게 되었다.47)

서경에서의 반란에 대응하여 인종은 유교적 실천도덕의 실현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을⁴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치 지배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김부식을 중용하여 이의 진압책임자로 하였다. 김부식은 먼저 개경에 있었던 김안·정지상·백수한 등의 서경 세력을 제거하였다.⁴⁹⁾ 서경에서의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하였던 이들의 존재를 통해, 천도를 주장하는 세력 중에서 서경에 거주하고 있었던 즉 서경재지파와 중앙관료로 진출했던 관료파와의 사이에 천도의 방법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는 견해가 있다.⁵⁰⁾

묘청의 난에 대한 평가나 이 당시 제기되었던 「칭제건원론」과 「금국정벌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묘청의 입장도 아니고 김부식의 입장도 아닌 제삼자적 입장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따라서 김부식 일파와 묘청 일파 모두는 분열된 귀족사회에서 그들 자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⁴⁵⁾ 瀬野馬熊, 〈高麗妙淸の亂に就いて〉(《瀬野馬熊遺稿》, 1936), 30쪽.

⁴⁶⁾ 李丙燾, 앞의 책, 231쪽. 金潤媛, 앞의 글, 77쪽. 姜聲緩, 앞의 글, 194쪽.

⁴⁷⁾ 南仁國, 앞의 글, 92~93쪽.

⁴⁸⁾ 金鎔坤、〈高麗時期 儒教官人層의 思想動向-文宗에서 忠肅王期를중심으로-〉(《國史館論叢》6,1989),82零 참조.

^{49) 《}高麗史》권 16. 世家 16. 인종 13년 1월 갑인.

⁵⁰⁾ 金潤坤, 앞의 글, 78쪽. 한편 鄭求福, 〈金富軾〉(《韓國史市民講座》9, 1991), 125쪽에 "우유부단한 인종이 출정 후에 어떤 사주를 받아 번복하는 조처를 내릴 것을 염려해 묘청의 배후 세력인 이들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수단방법으로서, 하나는 고식적인 의타주의에 의한 현상의 유지를 원하였고, 하나는 저돌적인 배타주의에 의한 현상타파를 원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 러므로 "묘청과 김부식을 독립과 사대로 규정하고 이를 선과 악의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견해라고 할 수 없다"51)고 하는 접근방 법이 타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묘청의 난은 이듬해 2월에 진압되는 과정에서 전술·전략을 둘러싸고 정벌군 내부에 이견이 존재하였지만,52) 이를 조정하면서 진압에 성공하였다. 그 당시 천도를 통해 서경 세력을 다시금 새롭게 하려는 묘청 등의 재지적성향의 세력과, 중앙정치계에서 서경천도의 원칙에는 동조했으나 난으로까지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정지상·백수한 등의 온건파, 그리고 그들을제거할 때 김부식과 함께 출정하고 있는 김정순을 비롯한 보다 왕권 안정을추구한 기존의 서경 세력권이라 할 수 있는 세 집단으로 분열하여 난이 평정되었다는 견해53)가 있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묘청이 난을 일으키자 "이자겸이 발호할 때에 丙午의 소란을 겪었으며, 임금이 타는 수레는 파천하고 궁궐은 불에 타서 祖宗의 위임을 욕되게 하여, 매양 基業을 연장하고 넓힐 것을 걱정하던 차에 마침 음양학을 하는 사람이 서경으로부터 왔고 더욱이 좌우에서 추천을 더하여 큰 현인으로 대우하였다. 짐이 진실로 밝지 못하니 드디어 그 말에 현혹되어 대화의 새 궁궐을 창건하여 조상의 기업의 중흥을 꾀하였다"54)라는 인종의 자기 변명이 포함된 조서가 반포되었다. 이후 유교적 실천도덕의 실현을 통하여 왕권의 강화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경에서의 반란을 진압하여 인종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획득하였던 김부식에 의해 정계가 주도되면서, 서경 세력과 연계되었던 문공인・임경청 등과 연계되었을 것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인물, 예컨대 윤언이・한유충 등에 대한 정리작업이 행해졌다.

김부식이 주도하는 정치 상황 아래에서도 그에 의해 축출되었던 윤언이가 6 년만에 김부식에 의해 제기되었던 정지상과의 연계를 부정하고, 청제건원의 정

⁵¹⁾ 李基白. 〈三國史記論〉(《文學과 知性》26. 1976) 참조.

^{52) 《}高麗史》권 98, 列傳 11, 金富軾 참조.

⁵³⁾ 姜玉葉, 앞의 글, 89쪽.

^{54) 《}高麗史節要》 권 10, 인종 13년 2월.

당성을 주장하면서 중앙정계의 복귀를 갈망하는 謝恩文을 올리고, 김부식은 "혹 부귀에 연연하여 물러가지 않으면 낚시밥을 탐내다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니, 마땅히 늙은 모습을 수습하여 어진 이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겠습니다"55)라는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는 등의 긴장관계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서 서경반란을 진압하고 난 후 신지배층과 문벌 귀족이 협력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56)

인종 즉위 당시부터 정국을 이끌었던 지배세력이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 관계의 합치에 의해 하나 하나의 세력으로 결속되어 그 대립과 갈등을 표 출했던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거치면서 기존 지배질서의 동요를 가져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왕의 권위 또한 무시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 의종대의 정치혼란

의종은 인종 4년 이자겸의 난과 13년 묘청의 난을 거친 다음 유교적 실천 도덕의 실현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김부식에 의해 주도된 정치 상황을 계승하면서 인종 24년(1146) 2월 즉위하였다. 그가 계승할 당시의 왕권은 "고려 국초부터 역대 왕들이 서경 경영에 주력하여 서경 세력을 육성함으로써 개경 세력과 서로 대립 견제시켜 그 힘의 균형 위에 어느 정도 왕권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으나, 묘청의 난 진압에 따르는 서경 세력의 몰락으로 그러한 힘의 균형은 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개경에 기반을 둔 문신세력은 더욱 드세어지고, 반면에 왕권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다"1)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려는 왕실의 권위 회복과 왕권의 안정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왕실의 권위 회복과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였어야 할 의종은 그의 즉위과

^{55)《}東文選》 권 42, 表箋, 乞致仕表.

⁵⁶⁾ Edward J. Shultz, 〈韓安仁派의 登場과 役割〉(《歴史學報》99・100, 1983), 171쪽. 南仁國, 앞의 글, 93~94쪽.

¹⁾ 河炫綱,〈高麗 毅宗代의 性格〉(《東方學志》26, 延世大 國學研究院, 1981), 4쪽.

정에서부터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한 차례의 갈등을 겪은 다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처음에 태후가 次子를 사랑하여 세워 태자를 삼고자 하였으므로 왕(의종)이이를 워망하였다(《高麗史》권 88. 列傳 1. 后妃 1. 恭睿太后 任氏).

처음 의종이 元子가 되었을 때 襲明이 侍讀하였는데, 인종이 원자로서 책임을 능히 당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태후 역시 次子를 사랑하여 장차 세워 태자를 삼으려 하거늘 습명이 마음을 다하여 調護하였기 때문에 폐하지 않게 되었다(《高麗史》권 98, 列傳 11, 鄭襲明).

위의 내용으로 보면 의종은 위에서 언급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반면에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인물로는 차자 즉 大寧侯 暻이 적임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인종과 恭睿太后 임씨의 태자 교체 의도는 훈요 10조 가운데 3조의 내용인 왕위 계승규정에 근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의종은 정습명의 調護에 힘입어 태자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었으며, 인종 24년 2월 정묘에 인종의 遺詔에 의하여 대관전에서 즉위하였다.

즉위 이후 의종은 당시 대간들의 '伏閣言事三日'이란 언론활동으로 정치지배세력들의 집요한 정치공세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2)계속되는 모역 음모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즉 서경인 李淑・柳赫 등이 金의 祭奠使가 돌아갈 때 附書하여 "대국의 군사가 바로 서경에 이르면 청컨대 내응하겠다"3)고 하였다. 당시 서경 잔존세력의 향배를 알려 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도 하고 인종대 묘청의 난 이후 서경은 왕실을 지지하는 세력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4)과, 李深・智之用 등이 송나라 사람 張喆 등과 모의하고 송의 태사 秦檜에게 글을 통하기를 "만약 금을 치겠다는 명목으로 길을 고려에 빌리기만 하면, 우리가 내용할 터이니 그러면 고려도 가히 도모할수 있다"5)고 한 사건의 발생으로 미루어 집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당시 정치 지배세력들의 대간활동으로 미루어 짐

²⁾ 河炫綱, 위의 글, 4~5쪽.

^{3) 《}高麗史》권 17, 世家 17, 의종 1년 11월 병자.

⁴⁾ 河炫綱, 앞의 글, 5쪽.

^{5) 《}高麗史節要》 권 17, 의종 2년 10월 정묘.

작되는 집요한 정치적 공세가 있었고, 신변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도 모두 조기에 수습될 정도로 당시의 정국은 인종대 공신인 김부식·임원후를 정점으로 한 권력구조가 유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종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데 마땅히 말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지칭된 정습명의 보필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종의 신임을 받고 그의 자문 역할을 하였던 정습명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의종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를 의종이 꺼리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그는 金存中・鄭誠에 의해 정계에서 축출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70 전개되고, 의종은 諫臣에게 "이제부터 매일 조회를 보고자 하니, 무릇 맞대고 간쟁하는 일을 그만 두도록 하라" 80는 조치를 내리게 된 5년(1151) 4월 이후부터는 의종과 연계된 김존중·정합이 정국우영을 주도하게 되었다.

의종 5년 윤 4월 宦者 정함을 閣門祗候에 임용하고, 김존중·정함에 의해 대령후 경과 鄭敘에 대한 논죄가 시작되면서 정국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 ① 정함을 權知閤門祗候로 삼으니 어사대에서 宦者로서 朝官에 참여한 사실은 옛 제도에 없는 일이라 하여 간하여도 듣지 않아 대관이 다시 나오지 않으니 대관을 불러 타이르기를 '이미 정함의 합문지후 임명을 도로 거두었다'하니 대관이 절하고 사례하였다.
- ② 이때 왕의 아우 대령후 경이 도량이 있어 인심을 얻었다. 정함이 대간을 모함하려 은밀히 散員 鄭壽開를 꾀어서 臺省과 李份 등이 왕을 원망해 경을 추대해서 왕을 삼으려 꾀한다고 무고하므로, 왕이 이에 현혹되어 諫臣을 제거하고자 하니 김존중이 간하여 말리고 유사로 하여금 심문할 것을 청하여 심문하니 과연 증거가 없었다. 수개는 얼굴에 刺字하여 흑산도로 귀양보내고, 빈은 雲梯縣으로 유배하였다.
- ③ 함이 죄를 면하려고 하여 또 참소하기를 '외척과 朝臣이 대령후의 집에 출입한다는 것이 진실로 거짓말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존중이 또한 태후 여동생의 남편 내시낭중 정서, 태후의 아우인 승선 任克正과 더불어 틈이 있었다. 서는 성질이 경박하고 재예가 있었으며, 대령후와 사귐을 맺고 서로 노닐었는데, 존중과 함 등이 유언비어를 꾸며서 아뢰니 왕 또한 의심하였다(이상《高麗史節要》권 11, 의종 5년 윤4월 및《高麗史》권 122,

⁶⁾ 黄秉晟、〈高麗 毅宗代의 政治實態와 武人亂〉(《慶熙史學》14, 1987), 234쪽.

^{7) 《}高麗史》권 17, 世家 17, 의종 5년 3월 임진 및 권 98, 列傳 11, 鄭襲明. 《高麗史節要》권 11, 의종 5년 3월.

^{8) 《}高麗史》 권 17. 世家 17. 의종 5년 4월 임인.

列傳 35, 宦者, 鄭誠).

환관 정함의 합문지후 임용을 둘러싸고 전개된 의종과 대간의 갈등은 그의 고신에 대한 서경⁹⁾ 여부를 둘러싸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정서와 대령후에 대한 탄핵은 5월 諫議 王軾과 起居注 李元膺 등의 상소를 시작으로¹⁰⁾ 재상 崔惟淸·文公元·庾弼 등과 간관 崔子英·왕식 등의 논죄를 거쳐,¹¹⁾ 정서는 동래로 유배되고 대령후의 府는 과해지고, 정서의 매부였던 최유청과李綽升이 외직으로 좌천되었으므로, 마침내 김존중과 정함의 정국 운영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다. 이 때 정함과 김존중의 위상은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알 수 있다. 정함의 권력 천단에 대한 반발로 낭장 崔淑淸이 정함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¹²⁾ 김존중은 정함과 더불어 결탁하고 크게 권력을 쓰면서 자기에게 붙는 자는 승진시키고 동조하지 않는 자는 배척하니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 모두 그 집에 몰려가서 재산이 거만에 이르고, 그 형제들과 친척들이 권세를 믿고 교만 방자하였다¹³⁾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정함・김존중에 의해 야기된 대령후와 정서의 탄핵사건에 대한 해석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관계 요로 특히 대간직의 인적 구성을 보면 최유청·문공유·문공인과 같은 한안인파로 불리는 예종대 신진 측근세력들은 대간의 상위직에 있었다. 또 한 부류는 김존중·왕식·이원응들로서 이들은 당시 문벌귀족적 배경이 없는 대신 인종대 과거에 급제한 후 의종이 태자였을 때 春宮侍讀으로 가까이 지냈던 인연으로 의종의 즉위와 함께 그의 측근에서 총애를 받아 성장했던 김존중을 대표로 하는세력집단이 존재하였는데, 이들 사이에 발생한 대립으로 보는 것이다.14)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바로 정서와 대령후의 역모사건으로

⁹⁾ 署經에 대해서는 金龍德、〈高麗時代의 署經에 대하여〉(《李丙燾華甲紀念論叢》,一 潮閣, 1956) 및 朴龍雲、《高麗時代 臺諫制度研究》, 一志社, 1980, 85~90等) 참조.

^{10) 《}高麗史節要》권 11, 의종 5년 5월. 《高麗史》권 17, 世家 17, 의종 5년 5월 정미.

^{11)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5년 5월.

^{12) 《}高麗史》 권 122. 列傳 35. 宦者. 鄭誠.

^{13) 《}高麗史》권 123, 列傳 36, 嬖幸 1, 金存中. 《高麗史節要》권 11, 의종 10년 3월.

¹⁴⁾ Edward J. Shultz, 앞의 글, 175쪽.

인한 비행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 보다는 의종대 등장한 또 다른 신진의 측근 세력, 즉 김존중 계열이 최유청을 원로로 하고 있던 구측근세력에 대해 도전한 것이며, 정서는 한갖 희생양에 지나지 않아 사실은 의종의 아우로서 도량으로 인심을 얻고 있던 대령후에 대한 왕의 열등의식을 이용한 측근 김존중계열의 정국주도권 획득을 위한 계략이었던 것으로 정서와 대령후의 역모가아니라 출신 성분이 다른 의종 측근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써 이해하는 것이다.15) 또 다른 하나는 외착세력의 증대를 막고 유력한 종친을 축출하여 강력한 통치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종의 의도와 직결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6)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의종으로 하여금 기존의 정치질서에 의존하기보다의종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치집단의 성격을 지닌 측근세력을 형성하게하였고, 당시 정치 지배세력들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소가 이어져 마침내 6년 7월에는 내시 14인과 茶房 5인을 내쫓기에 이르렀다.17)그러나 다음달에 정함이 다시 소환되어 내시에 충당됨으로써,18)의종에 의해 채택되었던 권력의 유용 방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위와 같은 운영 방식은 의종 5년 이후 정함과 함께 정국을 주도하였던 김 존중이 10년 3월 죽은 후에도 지속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의종은 점장이 내시 榮儀의 "대궐 동쪽에 새로 翼闕을 이룩하면, 가히 기업을 연장할 것입니다"라는 건의를 받아 들여 아우 翼陽侯의 집을 탈취하였을19)뿐만 아니라 즉위 당시부터 의종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존재하였던 대령후 경을 천안부로 귀양을 보내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였다.20) 이 때 정서와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로 연결되었던 최유청・임극정・김이영・이작승 같은 인물들도 함께 중앙정계에서 축출되었는데,21) 이들은 의종 24년 무신란이 발생할 때까지 중

¹⁵⁾ 朴漢男,〈崔惟清의 生涯와 詩文分析〉(《國史館論叢》24, 1991), 139・142쪽.

¹⁶⁾ 黃秉晟, 앞의 글, 239쪽.

^{17) 《}高麗史》권 17, 世家 17, 의종 6년 7월 을묘. 《高麗史節要》권 11, 의종 11년 4월 · 7월.

^{18)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6년 8월.

^{19)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11년 1월.

^{20) 《}高麗史》 권 18, 世家 18, 의종 11년 2월 무신.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11년 2월. 《高麗史》 권 90, 列傳 3, 宗室 1, 大寧侯 暻.

^{21) 《}高麗史節要》 권 11, 인종 11년 2월.

앙 정계로 복귀하지 못하였다. 의종의 대령후에 대한 조치는 "왕이 본래 도참을 믿어 여러 형제와 우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²²²⁾라고 평가되는데, 왕실의 藩屛이 되는 왕제들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의종이 왕권 강화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의종 11년(1157) 5월 다시 정함을 權知閤門祗候로 삼았으며,²³⁾ 정함의 고신에 대한 서경을 둘러싸고 당시의 정치 지배세력의 구성원과 대립하였다. 의종의 이와 같은 조치에 宰臣과 諫官이 그 불가함을 논쟁 고집하니, 의종은 "경들이 짐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짐은 먹는 것이 달지 않고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고 하면서 서경을 고집하였다. 이에 평장사 崔允儀・우간의 崔應淸과 좌승선 직문하성 李元膺・우승선 좌간의대부 李公升 등이 서명하여 정함은 조정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정함은 권세와 은총이 날로 성한 바 되어 친척들이 많이 조정에 들어서고, 官奴 王光就・白子端을 천거하여 우익으로 삼아서 번갈아 참소하여 조신을 모멸하고 민간을 침해하니, 환관들이 국법을 어지럽게 함이 이 때보다 심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²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어 참고된다. 즉 정함·백선 연·왕광취 등이 의종대에 권력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의종의 총애와 비호의 결과였으며, 이들은 전적으로 국왕의 총애에 의지하면서 국왕의 이익을 대변하여 국왕의 권력을 대변하는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寵臣으로, 이들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운영의 방식을 寵臣制라할 수 있다면, 이는 의종이 왕권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총신제의 시행은 이들에게 일정한 역할의 수행을 기대하는 한편,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해 가는 현실에서는 귀족들에 대한 하나의 도전을 의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려사회의 위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25)

鄭誠의 고신에 대한 서경을 둘러 싸고 의종과 당시 정치 지배세력의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그에 대한 의종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22) 《}高麗史》 권 90, 列傳 3, 宗室 1, 大寧侯 暻.

^{23) 《}高麗史節要》권 11. 의종 11년 5월.

^{24)《}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11년 11월.《高麗史》 권 122, 列傳 35, 宦者, 鄭誠.

²⁵⁾ 洪承基,《高麗 貴族社會와 奴婢》(一潮閣, 1983), 175~176쪽.

정함은 과인이 포대기에 싸여 있을 시절부터 정성껏 보호하여 오늘에 이르 렀기 때문에, 권지합문지후를 제수하여 그 공로를 갚으려 했더니,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되 경들이 고신에 서명하지 않으니 이는 실로 신하로서 임금을 사랑 하는 도리가 아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모두 죽여서 것을 담글 것이다(《高麗史節要》권 11, 의종 12년 6월).

이런 의종의 주장에 당시 정치 지배세력의 대응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정함의 선조는 聖祖께서 개국하실 때에 명을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아 노예에 충당시키고 종류를 구별지어 조정의 반열에 서지 못하도록 하였사온데, 이제 현달한 직위에 임명하시어 태조의 공신의 후예로 하여금 도리어 명을 거역한 종류에게 하인의 부림을 받게 하시니, 이는 태조께서 법을 세워 후세에 전하신 뜻에 어긋나오니 한 당을 이룬 자도 또한 서인으로 계급을 낮추소서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1, 의종 12년 6월).

위와 같은 의종과 당시 인물들 간의 대립은 정함의 관직 삭제,26) 정함의 삭직을 청한 인물에 대한 좌천,27) 그리고 다시 임명되는28) 과정을 반복한 끝에 정함이 왕에게 盛饌을 올리고 옷을 바치자 권세가 환관에게 있다니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29) 정함의 고신 서경을 둘러싸고 전개된 국왕과 당시 정치 지배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은 국왕이나 정치 지배세력 어느 쪽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의종은 음양 비축의 설을 지나치게 믿어 매양 행재소에서 승려와 도사 수백 명을 모아 놓고 항상 齋醮를 베푸니 허비되는 것이 한이 없어 내탕의 저축이 탕갈되었으며, 또 많은 개인 집을 빼앗아서 별궁으로 삼고 재물을 토색해 들였는데, 이를 이름하여 別貢이라 하고 환관으로 감독케 하니 이를 빙자하고 사리를 영위하였다"는 것이다.30) 다른 하나는 "왕은 간관들이 崔光鈞의 고신에 서명하지 않는다 하여, 諫議 李知深・給事中 朴育和 등을 불러

^{26)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2년 7월.

^{27) 《}高麗史節要》권 11. 의종 12년 8월.

^{28) 《}高麗史節要》권 11. 의종 12년 9월.

^{29) 《}高麗史節要》권 11, 의종 13년 1월. 《高麗史》권 122, 列傳 35, 宦者, 鄭誠.

^{30)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16년 3월.

서명하기를 독촉하니 낭관들이 두려워해서 '예 예'하고 물러났다. 이 때에 宮人 無比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광균이 그의 사위가 되어 그 인연으로 갑자기 式目錄事에 임명되니 사대부들이 이를 갈지 않는 자가 없었다. 어느 사람이 간관을 조롱하기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司諫이요 말없는 것은 正言이요 말더듬는 것이 諫議이다. 유유히 날을 보내고 무엇을 논했던고' 하였다"는 것이다.31) 이러한 상황 하에서 총애를 받던 궁녀가 媚道로서 닭을 그린 그림을 몰래 왕의 요 속에 넣었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32)

왕의 잦은 행차로 호종한 朝官과 호위하는 군사들은 밥을 먹지도 못하고 길을 잃어 쓰러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어 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환관 백선연과 궁인 무비의 추문을 논하고, 左常侍 崔褎偁 중요한 직위를 맡아 권세가 중외를 주름잡고 탐욕이 한없어 자기에게 붙좇지 않는 자는 반드시 중상하고 鉅萬의 재산을 모았다 고 지적한 文克謙에게 오히려 좌천이란 인사 조치로 대응하였다.33)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관리의 인사권 행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었으니, 환관과 결탁 하여 관직에 임명된 이후 그들의 뜻을 받들기를 노복 같이 하는가 하면34) 왕 측근의 내시들은 서로 다투어 진귀한 물품을 바치는 데 열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35)

당시의 국정 운영이 파행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종은 국가의 운영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는 다음의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의종 21년(1167) 1월 奉恩寺에 갔다가 밤에 돌아와 觀風樓에 이르렀을 때, 좌승선 김돈중의 말이 본래 길이 잘들지 않은 데다 징과 북소리에 더욱 놀라 한 기사의 화살통을 들이받아서 화살이 튀어나와 輦 옆에 떨어진 일이 있었을 때, 궁으로 돌아와 계엄을 펴고府兵을 동원하여 불의의 일에 대비하면서 자신의 아우 대령후 경의 家童에게

^{31)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16년 6월.

^{32) 《}高麗史節要》 권 18, 의종 16년 9월 신축.

^{33)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17년 8월.

[《]高麗史》 권 99, 列傳 12, 文克謙.

^{34)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17년 9월.

^{35) 《}高麗史》 권 18, 世家 18, 의종 19년 4월 갑신

그 혐의를 두고 그들을 참수하였다는 것이 그 한 사례이다.36) 그리고 22년 3월 서경에 행차하였을 때 왕의 아우 翼陽侯와 平凉侯가 자못 인심을 얻었기때문에 왕이 변란이 있을까 의심하여 거처를 피하였다는 것이 또 다른 사례이다.37)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의종은 즉위 이후 계속적으로 자신의 아우들이 왕위에 도전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가 한다.

의종은 같은 해 3월 서경에 행차하여. 장차 낡은 것은 고치고 새로운 것 은 정하여 다시 王化를 부흥코자 하여 옛 성인이 경계한 유훈과 당시의 폐 단을 구제할 사무를 채택하여 새로운 政숙을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陰陽의 奉順・佛事의 崇重・沙門의 歸敬・三寶의 保護・仙風의 薄尚・民物의 救恤 등 6조로 구성되었다.38) 6조의 내용은 상당히 관념적인 것으로 현실정치와 관련된 것은 찾을 수 없다. 이 6조의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이 불교·음양 설·선풍에 대한 것으로 정치에 대한 의종의 성격은 반유교적이었다. …그것 은 당시 왕권을 제약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문신귀족 세력은 거의가 유 교적 지식인이었다. 따라서 고려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 다. 그러므로 기존 문신귀족 세력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의종은 그들의 정치 활동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유교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질 수 없었다. 즉 문신귀족 세력에 대한 반감이 바로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한다"39)라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국주도권이 의종과 그의 측근세력에 있었음과 대표적 문신세력들은 정함의 고신 서경과 관련되 거나, 정서ㆍ대령후의 사건에 연루되어 정계에서 축출되었음 등을 감안한다 면 이러한 해석이 타당할지는 의문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의종대 정국 혼란의 큰 요인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였던 의종과 정치권을 파행적으로 이끌어 간 의종 측근세력들의 전

^{36) 《}高麗史》권 18, 世家 18, 의종 21년 1월 계축.

[《]高麗史節要》권 11. 의종 21년 1월.

^{37) 《}高麗史》권 18, 世家 18, 의종 22년 3일 정축. 《高麗史節要》권 11. 의종 22년 3월.

^{38) 《}高麗史》권 18, 世家 18, 의종 22년 3월 무자. 《高麗史節要》권 11, 의종 22년 3월에는 "9조의 新令을 반포하였다"라 하여 《高麗史》보다 3조가 더 있음을 보여 주지만 자세한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³⁹⁾ 河炫綱, 앞의 글, 12~13쪽.

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시 정치 지배세력들은 정상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보다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여 정국 불안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의종과 집권 귀족층은 유착관계가 아니라 대립・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이며,400 당시 귀족세력들은 또 그들대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대립・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410 무신에 의한 문신정권의 붕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南仁國〉

⁴⁰⁾ 河炫綱, 〈武臣政變은 왜 일어났는가〉(《韓國史市民講座》8, 一潮閣, 1991), 12쪽.

⁴¹⁾ 河炫綱, 위의 글, 14쪽.

찾 아 보 기

[7]

가격 價格 193, 195 가격의식 家格意識 193 가관 可觀 253 가내 수공업 家內手工業 217 가문의 측미 家門의 側微 92 가사제도 家舍制度 159 가산관료제(설) 家産官僚制(說) 184, 190, 191 가산국가 家産國家 183,191 가산제 家産制 191 가장 家狀 189 가야산맥 伽倻山脈 62 가은현 加恩縣 14.64 가음 家蔭 195,197 각연사통일대사탑비 覺淵寺通一大師塔 강화현 江華縣 123 碑 105 간의 諫議 274, 277, 278 간의대부 諫議大夫 176 간쟁 諫諍 147 간천군 杆天軍 38 감무관 監務官 243 감물도 甘勿島 253 감수국사 監修國史 171 감찰사헌 監察司憲 178 감찰어사 監察御史 174 감창사 監倉使 217 갑곶 甲串 91,92 갑과 甲科 103 갑사 甲士 90 강감찬 姜邯贊 211, 212 강공훤 姜公萱 133 강길 康吉 25

강남도 江南道 151 강동 6주 江東六州 173,211 강례 康禮 115 강릉김씨 江陵金氏 202 강릉왕씨 江陵王氏 127 강민첨 姜民瞻 211 강소성 江蘇省 19 강예재 講藝齋 강유영 康柔英 37 183, 강조 康兆 208~211 강조의 정변 康兆의 政變 6 강조의 피납사건 康兆의 被拉事件 210 강주 康州 12, 20, 22, 28, 34, 35, 45, 54, $60 \sim 63, 126$ 강주 降州 81 강주장군 康州將軍 126,130 강충 康忠 20 강회 講會 160 강희백 姜希白 229 개경 開京 4,43,44,69,73,74,79,93, 95, 105, 126, 144, 168, 209, 211, 218, 222 개경파 開京派 7 개국공신 開國功臣 121, 124 개국사 開國寺 93 개령군 開寧君 177 개보 開寶 117 개성 開城 19, 20, 21, 69, 133 개성부 開城府 215 개성 왕씨 開城王氏 203 개심사 석탑기 開心寺石塔記 96 개정전시과 改定田柴科 6 개주 開州 69 개지변(울산) 皆知邊(蔚山) 54 개청 開淸 72

개태사 開泰寺 73,112 경상도 慶尚道 22,33,164 개풍 開豊 222 《경상도지리지》 《慶尙道地理志》 150 갱정전시과 更定田柴科 경서 經書 214 153 거란 契丹 $71, 95, 115, 116, 154 \sim 156,$ 경성 京城 239 경소 經疏 171, 172, 210, 218, 219 219 거란대장경 契丹大藏經 경순왕김부 敬順王 金傅 34, 35, 63, 219 거란의 침입 契丹의 侵入 96, 155, 79, 86, 88, 109, 121, 128, 156, 166 171, 172 경애왕 景哀王 30, 33, 34, 55, 56, 63 거서(거창) 居西(居昌) 경연 經筵 33, (63) 251, 262 거자 擧子 경원군 慶源郡 189 235 거제 巨濟 경원(인주) 이씨 慶源(仁州)李氏 (200), 256 건국시조 설화 建國始祖說話 231, 238 224 건룡전 乾龍殿 267 경유 慶猷 72 건화 乾化 80 경종 景宗 5, 25, 26, 85, 116~118, 122, 검교개국남 檢校開國男 71 144, 154, 157, 158 검교병부상서 檢校兵部尚書 172 경종 景琮 31 검교태사치사 檢校太師致仕 경종의 배향공신 景宗의 配享功臣 177 265 검무 檢務 경주 慶州 173 16, 33, 34, 75, 92, 212, 213 견권 堅權 37, 45 경주 김씨 慶州金氏 87, 202, 203, 216 견금 堅金 25 경주 배씨 慶州裵氏 143 견달 見達 경주 세력 慶州勢力 38, 39 154 83 견서 堅書 경주 최씨 慶州崔氏 165, 203 견주 見州 21 경천애민 敬天愛民 77.78 경학박사 經學博士 견훤 甄萱 $1, 3, 12 \sim 16, 21 \sim 24, 28 \sim$ 152, 153 $39, 44, 55 \sim 65, 130, 134, 156, 164, 165$ 경행 經行 219 결혼정책 結婚政策 41,43,125 경화궁부인 임씨 慶和宮夫人 林氏 격신 謙信 112 계림공(숙종) 鷄林公(肅宗) 226,(227), 경 卿 82 232, 233, 235 경관 京官 《계백료서》《誠百寮書》 180 263 경군 京軍 계서제 階序制 191 164, 187 경기 京畿 215 계천인 季川人 25 경기도 京畿道 74 고구려 高句麗 $15\sim21,67\sim71,222$ 경덕왕 景德王 고구려 부흥운동 高句麗 復興運動 69 84 경덕재(모시) 經德齋(毛詩) 249 고구려 유민 高句麗遺民 경도건설 京都建設 고당유 高唐愈 268 경령전판관 景靈殿判官 180 고려 高麗 2, 16, 19, 22, 23, 28~41, 48~ 경명왕 景明王 55 52, 56~63, 68, 73, 77, 84 경보 慶甫 고려대장경 高麗大藏經 219 72 경산부(벽진) 京山府(碧珍) 《고려도경》《高麗圖經》 68, 143, 225 34, 252 경상 卿相 108,110 《고려사》 《高麗史》 67, 68, 91, 92,

133, 149, 164, 165 곡성현 谷城縣 142 《고려사》백관지 《高麗史》百官志 골암성 鶻巖城 28 공검지 恭檢池 106, 147, 216 217 《고려사》식화지 《高麗史》食貨志 공관어사 工官御史 147.178 공기 보장 工技寶藏 217 106, 107 《고려사》열전 《高麗史》列傳 공달 功達 183, 33 184 공덕신앙 功德信仰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67, 86, 공덕재 功德齋 158, 159 공란 公欄 162 144, 149, 156 《고려사》지리지 《高麗史》地理志 공무역 公貿易 223 공문박사 攻文博士 171,173 150 《고려사》최승로전 《高麗史》崔承老傳 공복 公服 104 156 공복의 제정 公服의 制定 105, 117 고려사회 高麗社會 204 공복제도 公服制度 120 《고려사》후비(열)전 《高麗史》后妃(列) 공부경 工部卿 71 (41), 127공부상서 工部尚書 233 공빈령 供賓令 고려식 관계 高麗式 官階 135 174 공사사행 公私使行 고려왕 高麗王 67 224 고려의 귀족사회 高麗의 貴族社會 7,8 공산(동수) 公山(桐藪) 34, (56), 63 고려 태조 高麗 太祖 2,3,39,40,50~ 공상조예 工商皂隷 233, 234 공수전 公須田 57, 64, 66 149 고립정책 孤立政策 공식사절 公式使節 163 57 고문개 高文盖 237 공신 功臣 103, 197 (고)보준 (高)甫俊 공암허씨 孔巖許氏 255 203 고비 姑比 36 공역 貢役 159 고사갈이성(문경) 高思葛伊城(聞慶) 54, 공예태후 恭睿太后 272 63 공원 貢院 189 고석 高碩 255 공음전(시) 功蔭田(柴) 181, (192, 194, 고승 대덕 高僧 大德 198, 199, 200) 73 고왕자 古王子 51 공음전시법 功蔭田柴法 200, 214, 225 고울부(영천) 高鬱府(永川) 30, 34, 45, 공음전제도 功蔭田制度 182 54, 63, 134 공작 公爵 192 고응 高凝 공작선 孔雀扇 123 33 고의화 高義和 232 공장 工匠 214, 234 고이도성 皐夷島城 공주 公州 26, 148 21,60 공직 龔直 고주 高州 116, 209 31, 57 고주 鼓鑄 공해전 公廨田 239 149 고창 古昌 30, 35, 36, 64 공훤 公萱 38, 55 고창군 高敞郡 61 과거관료 科學官僚 123, 183 고창전투 高昌戰鬪 30,31,32 과거 수석합격자 科學首席合格者

광업 鑛業 과거 응시자격 科擧應試資格 185, 217 186, 188, 189 광유후 光儒侯 189 과거 응시제도 科學應試制度 광종 光宗 5, 85, 93, 99, 100, 122, 124, 187 과거(제) 科擧(制) (8), 123, (152), 153, 157, 158 광종의 개혁(정치) 光宗의 改革(政治) 181. (183, 184, 189, 190), 198. (208, 221) 과거제(도)의 실시 科擧制(度)의 實施 (102), 114103, 109(116) 광주 廣州 21, 22, 24, 41, 81, 87, 148, 과시 科試 183, 185, 190 212 광주 光州 과업 科業 188 60, 61 광주 왕씨 廣州王氏 곽상 郭尚 239 127 곽희 郭希 229 광주원군 廣州院君 88, 90 관경 官景 광주원부인 廣州院夫人 41 29, 43 관계 官階 135, 148 광평성 廣評省 81, 83, 127, 132, 147 관내도 關內道 151,209 광평시랑 廣評侍郎 33,81,84,101,115 관료귀족 官僚貴族 215 광평시중 廣評侍中 83, 84 관료제(사회) 官僚制(社會) (183), 190. 광평원외랑 廣評員外郞 172 광학보 廣學寶 191 93 관료제설 官僚制說 광해주(춘주) 光海州(春州) 43,142 8, 184, 185 관무 官茂 37 괴양(산) 槐壤(山) (21), 22, 24, 81 관반제 官班制 12 교서 敎書 168 관아도시 官衙都市 교선일치 敎禪一致 234 114 관족 冠族 139 교위 校尉 229, 231 교육제도 敎育制度 관준 寬駿 25 152 관직귀족 官職貴族 교장도감 敎藏都監 194 219 관직의 대유 官職의 帶有 194 교종 敎宗 72, 74, 112 관직의 세습 官職의 世襲 180 구당관 句當官 225 관품 官品 194 구민책 救民策 212 관풍루 觀風樓 278 구사(경산) 仇史(慶山) 30, 55, 57 관학 官學 구사군 仇史郡 34, 62 220, 221 관헌 官憲 구성 龜城 95 37 관흔 官昕 59 9성 개척 九城開拓 249, 251 광군 光軍 96, 97, 98 9성 환부 九城還付 249 광군사 光軍司 95~98 구신숙장 舊臣宿將 116, 117 광군 30만 光軍 30萬 95,116 구인재(주례) 求仁齋(周禮) 249 광덕 光德 101, 115, 222 9재학당 九齋學堂 9주 5소경제 九州五小京制 광무제 유수 光武帝 劉秀 140, 141 24 광문원 光文院 175, 176 구진 具鎭 83 광세 廣世 37 구현 仇賢 229 광양 光陽 74 구휼정책 救恤政策 261 광양 김씨 光陽金氏 국가결합 國家結合 202 139

국가연방 國家聯邦 140 궁인 宮人 278 국가연합 國家聯合 139, 140 권무관 權務官 214 국도 國都 권수 權秀 255 70 국사 國師 73, 112, 114, 218 권신 權信 105, 118 국사제도 國師制度 219 권신 權愼 45 국상 國相 권열 權說 28 203 국원(충주) 國原(忠州) 권직 權直 95 국원공 國原公 228 권행 權幸 30 국자감 國子監 153, 221 권호 權豪 139 귀법사 歸法寺 113, 114, 117, 175 국자감시 國子監試 213 국자학 國子學 192, 194 귀부 歸附 2, 126, 130, 131, 134, 224 국청사 國淸寺 귀족(가문) 貴族(家門) 192~194, 238 99, 국초의 공역자 國初의 功役者 (195, 200, 202, 203), 204 100 귀족관료 貴族官僚 194 국학 國學 151, 153, 249 귀족관인사회 貴族官人社會 184 군기주부 軍器注簿 200 귀족불교 貴族佛敎 218 군반제설 軍班制說 귀족사회 貴族社會 187 193, 207, 215, 216, 군벌 軍閥 225 11 군부 軍部 106 귀족정치 貴族政治 203 군사동맹 軍事同盟 귀족제 貴族制 55 192, 193, 198 군사적 편제 軍事的 編制 151,155 귀족제사회 貴族制社會 192, 195, 198, 군사정책 軍事政策 40, 58, 61, 65, 66 200, 202, 204 군수저적 軍需儲積 107 귀족제설 貴族制說 8, 184, 198, 200 군신관계 君臣關係 130, 134 귀주 龜州 211 군신적 상하관계 君臣的 上下關係 130 귀주대첩 龜州大捷 211 군웅 群雄 11 귀향죄 歸鄉罪 181,182 군인 軍人 귀화인 歸化人 187 $103, 109 \sim 111, 157,$ 군자사 軍資寺 107 165 군정 軍丁 19 규환 圭奐 29,62 균로 均老 군진세력(가) 軍鎭勢力(家) 13 71 균여 均如 군태수 郡太守 14 $111 \sim 114, 117, 120$ 군현의 내속관계 郡縣의 來屬關係 135 근기지방 近畿地方 군현의 승강 郡縣의 陞降 143 근시세력 近侍勢力 216 군현제의 정비 郡縣制의 整備 148 근신 近臣 121, 123, 163 근을어 斤乙於 굴산 堀山 159 궁구문 弓口門 근직 近職 224 210 궁궐수영도감 宮闕修營都監 112 근친결혼 近親結婚 127 궁예 弓裔 1~3,12~34,41,43,46,54, 근품성(예천군 산양면) 近品城(禮泉郡 $60, 62, 67 \sim 72, 77 \sim 84, 131, 132$ 山陽面) 35,58 궁예 躬乂 67 금 金 224

금강 金剛 김부식 金富軾 190, 203, 258, 262, 263, 36 금관후 비 金官侯 @ 227 $266 \sim 271,273$ 금국정벌론 金國征伐論 265, 268, 269 김부의 金富儀 268 김상 金相 63 금산사 金山寺 36, 39, 59, 65, 85 21, 22, 26, 36, (60) 금성(군) 錦城(郡) 김상기 金上琦 237 금성(김화)태수 金城(金化)太守 21 김서 金舒 31 금유(검무) 今有(檢務) 143 김선평 金宣平 30 금자대장경 金字大藏經 211 김순식 金順式 12,81 김신 金神 금주 金州 256 71급사중 給事中 236,277 김신 金信 268 급전제 給田制 199 김심언 金審言 $155, 166, 168 \sim 170,$ 긍양 兢讓 72. 172, 174, 178, 203 궁준 兢俊 35, 37, 59 김심언의 봉사 金審言의 封事 155, 기거주 起居注 274 166, 167, 169 기미주 羈縻州 224 김악 金渥 64 기병 騎兵 38 김안 金安 255, 263, 264, 265, 269 기언 奇言 김양감 金良鑑 37 202, 223 기인 其人 김양검 金良儉 227, 228 44 기인선상 其人選上 216 (김)억렴 (金)億廉 41 기인의 선상법 其人의 選上法 김언규 金言規 25,82 217기인제 其人制 3,143,144 김예 金乂 43 227, 228 기인제도 其人制度 41,43,128,134 김원충 金元冲 기청제 祈晴祭 김위제 金謂磾 111 240 기훤 箕萱 12, 14 김은부 金殷傅 7, 202, 228 길강충 吉康忠 김의영 金義英 229 길환 吉奐 59 김의원 金義元 256 김경신 金敬信 26 김이영 金貽永 275 김경용 金景庸 김인규 金仁揆 202, 249 254 김극종 金克宗 김인위 金因渭 38 202 김근겸 金勤謙 25 김인존 金仁存 202, 255 김긍률 金兢律 82, 85 김자진 金子珍 237 김전 金錢 229 김단 金端 268 김덕충 金德忠 김정순 金正純 230 268, 270 김돈중 金敦中 190, 278 김정언 金廷彦 김제 金悌 (김)동정 金東靖 27 223 김락 金樂 김제 金堤 45, 56, 63 217김률 金律 김존중 金存中 273~275 62 김봉모 金鳳毛 203 김주원 金周元 12, 26, 27 김봉휴 金封休 김찬 金燦 255~259, 263~265, 269 35 김부 金傅 30, 41, 43, 56, 121 김책 金策 111

김책 金幘 17 김철 金鐵 37 김취려 金就礪 202 김치양 金致陽 208, 209 김치양의 난 金致陽의 亂 6, 207 김태서 金台瑞 203 김행도 金行濤 59, 84, 133 김행과 金行波 84 김헌창 金憲昌 13 김헌창과 범문의 난 金憲昌과 梵文의 27 김호 金好 256, 257 김훈 金訓 179

[_]

나당연합군 羅唐聯合軍 51 70, 212 나성 羅城 나주 羅州 6, 18, 21, 22, 41, 58, 60, 72, 79, 90, 148, 211, 212 나주대행대시중 羅州大行臺侍中 83 나주 오씨 羅州吳氏 79, 127 낙동강 洛東江 22, 33 낙랑공주 樂浪公主 35, 86 낙랑후 침 樂浪侯忱 227 낙릉군 樂陵郡 116 낙양 洛陽 154 난원 爛圓 218 222, 223, 235, 240, 241 남경 南京 남경개창도감 南京開創都監 240 남경건설 南京建設 240 남경경영 南京經營 240, 241 남미질부 南彌秩夫 54 남반 南班 216 남방물산 南方物産 225 남북용인 南北庸人 108, 110, 111, 117 남산 南山 222 남양 南陽 141 남양호족 南陽豪族 140 남작 男爵 192

남중국 南中國 50,51 남진정책 南進政策 $33, 58, 61 \sim 66$ 남평문씨 南平文氏 202 남해 南海 146 낭비성 娘臂城 24 낭산도 狼山島 146 낭자곡 娘子谷 24 낭장 郎將 229, 231, 256 내고 內庫 102 내군 內軍 106 내도량 內道場 115 내봉사 內奉史 82 내봉성 內奉省 147 내봉성령 內奉省令 105 내부시 內府寺 107 내부원외랑 內府員外郎 내사령 內史令 41, 123, 175 내사문하성 內史門下省 155, 170, 172, 178 내사성 內史省 147 내사시랑 內史侍郞 210 내사시랑평장사 內史侍郞平章事 200 내선 內禪 5,99 내속노비 內屬奴婢 161 내수 內豎 124 내시 內侍 $255 \sim 257, 269, 275$ 내시랑중 內侍郞中 265, 273 내시록사 內侍錄事 255 내시지후 內侍祗侯 255 내원 內院 28 123 내의령 內議令 내의승지사인 內議承旨舍人 175 내의시랑 內議侍郎 115, 171, 172 내제석사 內帝釋寺 73 내천왕사 內天王寺 145 노대부 우보 魯大夫 羽父 88 노령거 盧令琚 268 노비 奴婢 162 노비안검법 奴婢按檢法 102,103,116, 118, 163

담제 禪祭

145

당 고조 唐 高祖 151

당대등 堂大等 137,149

노비안검법의 실시 奴婢按檢法의 實施 당성(남양) 唐城(南陽) 21, 22 107, 122 당성진 唐城鎭 노예제 奴隷制 182 당 숙종 唐 肅宗 20 노인 盧寅 224 당악 唐樂 224 노점 盧占 당우 唐虞 229 153 노포 老浦 35, 60 당의 3성체제 唐의 三省體制 노혁 盧奕 170 당 태종 唐 太宗 49, 102, 151 녹봉제 祿俸制 214,215 대가 大家 139 녹사 綠事 229, 230, 233 대각국사 大覺國師 218, 241 녹삼 綠衫 (대각국사) 의천 (大覺國師) 義天 104 녹삼층 綠衫層 104,120 218, 219, 235, 237, 238, 240, 243 녹읍 祿邑 31, 137 대각국사 후 大覺國師 煦 《논어》 《論語》 161,165 대간 臺諫 178, 190, 191, 246 농민반란 農民叛亂 142 대간직 臺諫職 170 누에고치 212 대감 大監 173 능달 能達 25, 37 대고 大賈 234 능문 能文 대고려 강경책 對高麗强硬策 30, 34, 36, 45, 54, 63 능산 能山 대공 大功 145 143 대광 大匡 29, 37, 81, 86, 94, 99, 123 능선 能宣 146 능식 能式 대광현 大光顯 71,156 26, 35, 60 능식 能寔 대구 大邱 211 45 능창 能昌 17 대내정책 對內政策 40,41,46 능필 能弼 대도호부 大都護府 70,84 38 능현 能玄 대등 大等 45 137, 149 능환 能與 36, 39 대량(합천) 大良(陝川) 30,55,57 대량군(성) 大良郡(城) 58, 62, (63, 64) 대량원군 大良院君 209,210 [=] 대령후(경) 大寧侯(暻) $272 \sim 279$ 대령후의 역모사건 大寧侯의 逆謀事件 다련군 多憐君 79 274 다방 茶房 275 대마도 對馬島 51 단련사 團練使 151 대명주원부인 왕씨 大溟洲院夫人 王氏 단림 端林 29 단사 單使 28, 44 대목왕후(황보씨) 大穆王后(皇甫氏) 단삼 丹衫 104, 120 (85), 86, (103, 111), 163 단삼층 丹衫層 124 대민정책 對民政策 40, 46, 65, 78 단주(장단) 湍州(長湍) 175, 179 대방공 보 帶方公 俌 252, 253 달고 達姑 37,38

대복모 大福暮 71

101

50

대봉은사 大奉恩寺

대부소경 大府少卿

대비원 大悲院 261 도령 都領(令) 27 대빙재(상서) 待聘齋(尚書) 249 도병마록사 都兵馬錄史 213 대사 大赦 47 도병마사 都兵馬使 213, 246 대상 大相 31, 37, 38, 50, 101, 105, 118, 도병마관관 都兵馬判官 249 도생 道生 218 214 도선 道詵 대성 臺省 243, 273 74, 75, 221 대성 大姓 139,164 도선비기 道詵秘記 222 대・소상 大・小祥 145 도안군 道安郡 26 대・소서원부인 김씨 大・小西院夫人 도염원 都鹽院 217 金氏 132 도자기생산 陶磁器生産 218 대승 大丞 29,84 도종 道宗 219 대승불교 大乘佛敎 219 도참 圖讖 276 대식국 大食國 224 도참사상 圖讖思想 98,222 대심리 大審理 71 도참설 圖讖說 75,157 대야성(합천) 大耶城(陜川) 34,35,62 도침 道琛 51 대외정책 對外政策 40 도학 道學 220 대원균 大元鈞 71 도항경 都航卿 104 대위 大爲 268 도항사 都航司 104 대유범 大儒範 71 도호부사 都護府使 151 대장 大將 56 독권관 讀卷官 123 대장경 大藏經 145, 173, 175, 219 돌산 突山 35,60 대장경의 조판 大藏經의 雕板 6,211 동경(경주) 東京(慶州) 69,154,155, 대장군 大將軍 38, 223, 231, 233, 237, 213, 222 255, 256 동경유수 東京留守 212 대정 隊正 97,229 동계 東界 213 대조영 大祚榮 71 동관정 冬官正 256 대족 大族 139 동궁관 東宮官 214 대종 욱 戴宗 旭 144 동궁기실 東宮記室 43,77 동궁시위공자 東宮侍衛公子 대호족정책 對豪族政策 40,41 236 대호족 포섭정책 對豪族包攝政策 29 동래 東萊 274 대화균 大和鈞 71 동래군후 東萊郡侯 123 동명 東明 70 대화세 大花勢 264 대화세설 大花勢說 266, 268 동산원부인 박씨 東山院夫人 朴氏 41 덕성진 德成鎭 96 동서여진 東西女眞 224 덕술 德述 동양원부인 유씨 東陽院夫人 庾氏 38 179, 180 덕종 德宗 42 동여진 東女眞 덕진포 德眞浦 21,22 97 덕창진 德昌鎭 94,96 동이전 東夷傳 68 도단련사 都團練使 209 동족국가 同族國家 71 도독부 都督府 32 동주 洞州 84, 133, 178, 208

동진정책 東進政策 33, 36, 62, 64 둔전 屯田 137 등주 登州 20, 223

마군 馬軍 27.37 마군장군 馬軍將軍 23, 25, 26, 28 마난 麻煖 마리산 摩利山 115 마명 馬鳴 219 마성 馬城 38 마진 摩震 2, 17, 24, 67, 69 마헐탄 馬歇灘 164 막스 웨버(Max Weber) 183 만부교 萬夫橋 만세 萬歲 37 만수대 萬壽臺 223 말갈족 靺鞨族 말기르기 212 매곡성주 홍술 昧谷城主 洪術 130 매곡현 昧谷縣 31 매매원 賣買院 224 매조성 買曹城 45 면천 沔川 80 명경 明經 103.185 명경과(업) 明經科(業) 186,220 명경업감시 明經業監試 187 명길 明吉 25,38 《명사》 《明史》 68 명식 明式 64 179 명종 明宗 명주 溟州 12, 23, 26~28, 34, 37, 38, 43, 45, 83, 156, 223 명주군왕 溟州郡王 27 명주세력 溟州勢力 27 명주장군 溟州將軍 126 명지성 命旨城 29,45,59 명호를 개정 名號를 改定 150 모두간 冒豆干 71

모화사상 慕華思想 150 모화주의자 慕華主義者 163 목멱양 木覓壤 222 목종 배향공신 穆宗配享功臣 176 목종 폐시 穆宗 廢弒 6 목판인쇄술 木版印刷術 221 몽량원부인 박씨 夢良院夫人 朴氏 42 묘청 妙淸 7,259,262~270 묘청의 난 妙淸의 亂 7,223,263,268~ 272 무 武(혜종) 37,79,81,82,83,85,92 무공공신 武功功臣 178 무뢰호협지도 無賴豪俠之徒 241 무력주의 武力主義 53,66 무문사 撫問使 217 무반 武班 120 무비 無比 278 무산계 武散階 97, 147, 148, 214 무산계 29등급 武散階 29等級 148 무신란 武臣亂 275 무신집권기 武臣執權期 225 무역사절 貿易使節 163 무역활동 貿易活動 19.20 무의 태자책봉 武의 太子冊封 무차수륙회 無遮水陸會 114 문경 聞慶 63 문공미 文公美 252,253 문공왕후 文恭王后 85 문공원 文公元 202,274 (문)공유 (文)公裕 (253), 258, 262, 264, 267, 274 문공인 文公仁 202, 258, 262, 263, 264, 267, 270, 274 문극겸 文克謙 278 문묘종사 文廟從祀 212 문・무산계의 정비 文・武散階의 整備 155, 181 문반 文班 120, 121, 198 문벌귀족 門閥貴族 137, 138, 204 문사 文士 51, 108, 117

문사층 文士層 110 126, 129 문산계 文散階 147,148 박승 朴昇 71 문성왕후 文成王后 85 (박) 승경 (朴) 承景 177 문수사 文殊寺 박승중 朴昇中 73 254, 257 문식 文植 박암 朴巖 25 51 문신관료 文臣官僚 122,124 박양유 朴良柔 170, 171, 178 박어 朴漁 문신관료층 文臣官僚層 122,123 71 문원대왕 정 文元大王 貞 86 박영 朴永 256 문의 文義 박영규 朴英規 37, 41, 85 31 문익 文翼 박유 朴儒 237 43, 81 문적교류 文籍交流 박육화 朴育和 219 277 문종비 文宗妃 박인량 朴寅亮 202 203 문주 文州 박질영 朴質榮 209 84, 133 문중경 文仲經 256 박평진 博平鎭 116 문창후 文昌侯 212 박표 朴彪 256 문하시랑 門下侍郎 180.210 박효렴 朴孝廉 256 문하시랑평장사 門下侍郞平章事 171, 반승 飯僧 219 232, 236, 252 반신라정책 反新羅政策 17, 54 문하시중 門下侍中 179, 180, 210, 228 반왕건 反王建 24 문헌공도 文憲公徒 220 반정 半丁 216 문혜왕후 文惠王后 반혁명사건 反革命事件 23 86 물장성 物藏省 106 발어참성 勃禦塹城 민관어사 民官御事 176 발해 渤海 67, 71, 72, 110, 156 미륵불 彌勒佛 17 방생소 放生所 115 미륵향도 彌勒香徒 96 방어사 防禦使 209 민생 안정책 民生安定策 46,65 방어(진)사 防禦(鎭)使 151, (209) 민애왕 閔哀王 13 방우 邦祐 97 방포 方袍 민장 民長 143 17 민족통일정책 民族統一政策 39,40,46, 배신 裵信 229 66 배융교위 陪戎校尉 97 민지 閔漬 75 배총규 裵悤規 25 민합 閔郃 33 배현경 裵玄慶 18, 45, 77, 128, 133, 밀양 密陽 142, 143 127 백관의 공복 百官의 公服 백사유 白思柔 111, 170, 173 [日] 백서성 白書省 82 백선연 白善淵 박릉 博陵 96 백선장군 百船將軍 22 박수경 朴守卿

백성군(안성) 白城郡(安城)

백수한 白壽翰 259, 263, 265~270

31

 $37, 42, 94 \sim 99, 177$

박수문 朴守文 42,82,83,94,96,98

박술희 朴述熙 4,80,82,83,87,89~93,

백옥삼 白玉衫 143 보천 寶泉 106 백자단 白子端 276 보천군 補天軍 37 백작 伯爵 보첩류 譜帖類 121 192 백정 白丁 187 《보한집》《補閑集》 75 복부경 福府卿 백제 百濟 16, 19, 51, 68, 222 50 백주(배천) 白州(白川) 70,71,84,178 복서 卜筮 175 벌열 閥閥 200 복수(법)의 허용 復讐(法)의 許容 범문 梵文 13, 27 118, (123) 범패 梵唄 복시 覆試 152, 250 17 복신 福信 법상종 法相宗 112, 230, 238 51 법왕사 法王寺 73 복업 卜業 103 법인국사 탄문 法印國師 坦文 109 복응재(예기) 服膺齋(禮記) 복지겸 卜智謙 18, 23, 25, 45, 77, 142 벽골지 碧骨池 217 벽진군 碧珍郡 29, 45, 54, 62, 142 복합언사 3일 伏閤言事三日 272 변한후 음 卞韓侯 愔 227 본관 本貫 181, 189 별공 別貢 277 봉건제 封建制 182 별도 別都 222 봉박 封駁 147 별무반 別武班 235, 241, 242, 246 봉사 奉事 242 봉사2조 奉事二條 별사 別賜 215 174 별사과 別賜科 214 봉어 奉御 229 별장 別將 229, 231, 256 봉은사 奉恩寺 278 별호를 제정 別號를 制定 149 봉작 封爵 192 봉주 鳳州 병관어사 兵官御事 147, 172, 175 70.84 **병** 早 兵部 80, 125, 127, 128, 133, 137, 부 府 233, 274 149 부경 통제규정 赴京 統制規程 병부령 兵部令 80 부곡(인) 部曲(人) 149, (185), 188, 189 병부상서 兵部尚書 233 부국강병 富國强兵 78 병부시랑 兵部侍郎 175,252 부달 富達 39 부병 府兵 병부원외랑 兵部員外郞 230 278 병사 兵史 186 부병정 副兵正 186 병산 瓶山 30 부약(김화) 夫若(金化) 26 병오의 소란 丙午의 騷亂 270 부여 扶餘 68 병정 兵正 부여공 수 扶餘公 燧 227 186 보문각 寶文閣 251 부여풍 扶餘豊 51 부인사 符仁寺 보병 步兵 38 212 부창정 副倉正 보살계 도량 菩薩戒道場 219 186 보오 保伍 부호장 副戶長 143 43, 149, 186, 189 보원사 普願寺 114 부호정 副戶正 186, 189 보은 報恩 부호층 富豪層 11 31 보응승통 규 普應僧統 規 227 부흥운동 復興運動 51

북계 北界 171 4도호 四都護 213 북미질부 北彌秩夫 54 4도호 8목 四都護八牧 212 북방민족 北方民族 37, 116, 151, 224 사립학교의 시초 私立學校의 始初 220 북원(원주) 北原(原州) 1,14 사면령 赦免令 118 북중국 北中國 51 사명 詞命 108, 172 북진정책 北進政策 67,69,71,84,98 4무외사 四無畏士 72 북청 北靑 224 사민 徙民 84 분사 分司 168 사벌주 沙伐州 1,14 분사검교소감 分司檢校少監 사병 司兵 149 263 분사시랑 分司侍郎 사병 私兵 268 14, 126, 129, 137 분사제도 分司制度 222 사병집단 私兵集團 229 불교법회 佛敎法會 4색 공복제 四色公服制 120 218 불교의식 佛敎儀式 218 사선(서) 司膳(署) 121 불명경보 佛名經寶 93 사성정책 賜姓政策 41, 43, 125 불법 佛法 73 사숙태후 이씨 思肅太后 李氏 226~ 불보 佛寶 158, 159 228, 230 사신객관 使臣客館 불사70구 佛寺七十區 218 224 불우의 남설 佛宇의 濫設 159 사심관 事審官 43, 79, 128, 152 불일사 佛日寺 101 사심관제(도) 事審官制(度) 3,(41, 불전의 교류 佛典의 交流 218, 219 43, 128, 134, 143, 144), 213 비각 秘閣 221 사심주장사 事審主掌使 217 비로자나의 참회법 毘盧庶那의 懺悔法 사은문 謝恩文 271 사의랑 司議郞 114 236 비보사탑 裨補寺塔 사인 舍人 136 76 비삼 緋衫 104, 120 사정 司政 71 비서랑 秘書郞 109 4조 四祖 189 사직 司直 비장 裨將 14 160, 236 빈객 賓客 사창 司倉 149 136 사천감 司天監 빈공진사 賓貢進士 253 95 사천공봉 司天供俸 87 [人] 사천관 司天官 100, 121 사천대 司天臺 100, 121, 212 사천소감 司天少監 229 사간 司諫 278 사학교육 私學敎育 220 사경 寫經 159, 160

4고가자 四考加資

사굴산파 闍崛山派

사나사 舍那寺 73

사괴 砂塊

사교 四郊

사노 私奴

180

72

143

260

216

사학12도 私學12徒

삭방도 朔方道

산남도 山南道

사헌 司憲 167, 168

산관 散官 120,199

삭방 골암성수 朔方鶻巖城帥

189

151, 209

151

45

상속법 相續法 216 산동반도 山東半島 19 산업 算業 상시 常侍 172 187 산원 散員 229, 256, 273 상안공 수 常安公 琇 227 상장군 上將軍 179, 231, 232, 233, 255 산직 散職 197, 214 삼각산 三角山 172,209 상종 相宗 112 3경 三京 222, 249 상주 尙州 14, 28, 33, 34, 45, 53, 58, 61 《삼국사기》지리지 《三國史記》地理志 \sim 63, 66, 148, 212, 217 상주국 上柱國 175 《삼국유사》《三國遺事》 상평창 常平倉 146,166 68, 164 3군 三軍 37,38 서강 西江 222 삼귀사 三歸寺 113 서경 西京(평양) 4,69,70,74,76,84, 삼년산성 三年山城 92~96, 98, 105, 144, 155, 157, 168, 172, 176, 59 3등호제 三等戶制 216 $177, 207, 208, 221 \sim 223, 279$ 3복제 三覆制 216 서경경영 西京經營 3,271 삼산촌 三山村 224 서경관 西京官 214 삼성 三性 112 **서경기4도** 西京畿四道 3성(6조)체제 三省(六曹)體制 서경기제도 西京畿制度 147 3성제 三省制 6 서경사헌 西京司憲 170 삼순 三順 37 서경세력 西京勢力 84,99,154,207, 삼중대광 三重大匡 42,94 209, 210 삼척 三陟 27,96,256 서경왕기설 西京王氣說 $263 \sim 268$ 삼한 三韓 60,70 서경우대책 西京遇待策 154 삼한공신 三韓功臣 121, 159, 162,177, 서경우우정책 西京優遇政策 208 서경재성 西京在城 178 94 삼한통일 三韓統一 77 서경천도(계획) 西京遷都(計劃) 4,94, 3황 5제 三皇 五帝 146 (95), 97, (98, 154, 157), 263, 270 상경종사 上京從仕 25 서경천도운동 西京遷都運動 7,264 서경학원 西京學院 상군사 上軍使 221 177 상당현 上黨縣 서계 西界 213 서공 徐恭 상도 上都 265 180 상부(보) 尚父 37,57,109 서궁 徐兢 203, 225 상부(보)도성령 尚父都省令 서눌 徐訥 180 121 상비군 常備軍 96 서도 西都 105, 222, 260 상사찬 上沙粲 20 서리 胥吏 189, 190, 214 상서도성 尚書都省 147 서목 徐穆 172 상서우승 尚書右丞 253 서봉 徐逢 101 상서6부(의 성립) 尚書六部(의 成立) 서북면병마사 西北面兵馬使 268 155 서산업 書算業 216 상서좌복야 尚書左僕射 서서원 瑞書院 233 77 상선원 尙膳院 121 서순 西巡 267

서업 書業 187 성수 星宿 160 서예 書藝 233 성신 聖臣 167 서울 215 성종 性宗 112 서원소경 西原小京 24 성종 成宗 6,77,144~147,152~156, 서전원부인 西殿院夫人 80 168, 172, 176, 177 성종대의 지배세력 成宗代의 支配勢力 서필 徐弼 111, 172, 180, 203 서하 임씨 西河林氏 197 178, 181 서행 西幸 266, 268 성종 배향공신 成宗 配享功臣 170, 서황 徐晃 229 172, 174, 178 서흥 김씨 瑞興金氏 127 성종14년의 군현제 개혁 成宗 十四年의 서희 徐熙 111, 115, 147, 170~178, 郡縣制改革 151, 155 203, 208 성종의 유교정책 成宗의 儒敎政策 182 서희계열 徐熙系列 182 성주 星州 61~64,66 성주 城主 12, 14, 22, 125, 142 석산 石山 30 선관어사 選官御事 147 성천(화천) 狌川(華川) 26 선덕왕 宣德王 13.26 성패론 成敗論 92 세공액 歲貢額 100 선문 9산 禪門九山 74 선산 善山 63 세달사 世達寺 16,27 선상 選上 128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선장 宣長 24,26 142, 143, 150 선종 善宗 소 昭 82~88, 92, 98, 99 16, 68 선종 禪宗 12, 22, 72, 74, 75, 254 소 所 217 선종비 宣宗妃 202 소감 少監 229 선필 善弼 30, 34, 54 소경 小京 16,137 선회 善會 115, 158 소경 小卿 104,229 선희 善希 27 소공 小功 145 선희왕후 김씨 宣禧王后 金氏 227 소광주원부인 왕씨 小廣州院夫人 王氏 41 설문우 薛文遇 101 설신우 薛神祐 147, 170, 172 소군 小君 218 설정규 薛廷珪 77 소금 전매제 鹽專賣制 218 설총 薛聰 172,212 소목(제도) 昭穆(制度) 145,(166) 성국 成國 229 소무개 蘇無蓋 97 소배압 蕭排押 성달 城達 29, 45 211 성당의 선진문화 盛唐의 先進文化 19 소부시 小府寺 106,107 소손녕 蕭遜寧 성랑 省郞 170 173, 176, 211 성묘소정 成廟所定 150 소장 小將 29 성무부인 박씨 聖茂夫人 朴氏 42 소주부 小主簿 104 성문법 成文法 140 소태보 邵台輔 232, 235, 237 성보 成甫 229 속장경 續藏經 218, 219 성상융회사상 性相融會思想 111,112 속환 贖還 102

송 誦 177 순종비 順宗妃 202 송과 거란의 전쟁 宋과 契丹의 戰爭 순주 順州 28,64,134 순주이궁 巡駐離宮 222 155 송도 松島 순주3경제 巡駐三京制 222 253 송사 宋使 217,223순질 筍質 101,123 송생 松生 30, 32, 36, 56, 64 순천박씨 順天朴氏 86,127 송승연 宋承演 153 순화별호의 제정 淳化別號의 制定 150 송악 松岳 2, 17, 19, 20, 21, 22, 26, 47, 술희 述希 37 72, 75, 132, 215 **숭렬・택춘 崇烈・澤春** 229 송악군 松岳郡 숭선사 崇善寺 101 송용중 宋用中 256 승과 僧科 219 송의 宋醫 225 승선 承宣 263, 273 송 태조 宋 太祖 172 승주 昇州 41, 85, 148, 253 송 태종 宋 太宗 150 승통 僧統 230 승화현인 承化縣人 173 송판본 宋板本 221 수계행사 受戒行事 219 시마 緦麻 145 수군 水軍 21, 22, 35, 58, 60 시무 28조 時務 28條 77, 88, 154~166, 수기 守其 219 170, 171, 179, 180 94 수덕순역의 설 水德順逆의 說 시무책 時務策 103 수도건설 首都建設 212 시어사 侍御史 229, 230, 253 수렴정치 垂簾政治 시위군 侍衛軍 106, 118, 159, 161 227 수리시설 水利施設 217 시전 市廛 234 시정전시과 始定田柴科 5,120,121, 수모법 隨母法 213 수미강 須彌康 62 124 수산제 守山堤 217 시정 7사 時政 7事 174 수서 隋書 68 시중 侍中 22, 84, 127, 132, 133, 177 수양규정 收養規定 216 시찬 時贊 115 수 양제 隋 煬帝 49 278 식목록사 式目錄事 수원 守元 식음 食邑 27, 35, 37, 137, 171, 234 28, 29, 43 식회 式會 수원승도 隨院僧徒 257 100 수위성씨집단 首位姓氏集團 82 신강 信康 37, 100 수주 이씨 樹州李氏 202 신검 神劍 27, 36~39, 65, 85, 156 수주 최씨 水州崔氏 202 신광보살 神光菩薩 17 순관 巡官 143 신농씨 神農氏 145 순군랑중 徇軍郞中 82,128,133 신덕 新德 순군리 徇軍吏 24,133 신덕왕 神德王 22 순군부 徇軍部 80, 106, 127, 128,133 신덕전 神德殿 순군사 徇軍使 31 신도성 信都城 116 순손 順孫 146 신라 新羅 17, 19, 21, 30, 34, 35, 52, 56, 순식 順式 23, 26, 27, 28, 34, 43, 45, 72 63, 68, 77

신라계열 新羅系列 121, 123, 124 신라계 유신 新羅系 儒臣 170 신라 9주 新羅 9州 61 신란궁 神鸞宮 35 신란궁부인 神鸞宮夫人 86 신라문화 新羅文化 19 신라방 新羅坊 20 신라소 新羅所 20 신명(순성)태후 유씨 神明(順成)太后 劉 氏 (41), 42, (82, 86) 신무왕 神武王 13 신법상 사상 新法相思想 112 신봉문 神鳳門 259 신분제사회 身分制社會 183, 192 신성왕태후 김씨 神成王太后 金氏 41 신숙경 申崇謙 18, 45, 56, 77, 133, 142 신정왕(태)후 황보씨 神靜王(太)后 皇甫 氏 42, (85) 신종 神宗 179 신주 信州 133 신주원부인 강씨 信州院夫人 姜氏 87 《신증동국여지승람》《增東國輿地勝覽》 81 신지 新池 115 신진관료군 新進官僚群 105 신진관료층 新進官僚層 111, 120 신진문신관료 新進文臣官僚 124 신질 申質 123 신천 강씨 信川康氏 87 《신편제종교장총록》 《新編諸宗教臟總 錄》 219 신혈사 神穴寺 209 신혜왕후 유씨 神惠王后 柳氏 41 신흥사 新興寺 신훤 莘菅 24 10도제 10道制 151, 212 12도 12道 168 12도사학 12徒私學 220 12목 12牧 146, 149, 152, 153, 168, 209 18과 18科 214

심팔자위왕설 十八字爲王說 257 쌍기 雙冀 101~103,107~110,116, 117,157,165,172 쌍철 雙哲 110

[0]

아자개 阿字盖 28, 45, 53, 62 아지태 모함사건 阿志泰 謀陷事件 18 아차 阿次 25 아찬 阿粲 22, 28, 33, 54, 126 악공 樂工 185, 188 악인 樂人 214 안남(전주) 安南(全州) 212, 213 안도 安燾 217 안동(경주) 安東(慶州) 33, 34, 62, 212 안동대결전 安東大決戰 56 안동부 安東府 134 안린 安鱗 229 안민정책 安民政策 46,65 안변도호부 安邊都護附 213 안보린 安甫鱗 255 안북(안주) 安北(安州) 212 안삭진 安朔鎭 116 안산 김씨 安山金氏 202, 215 안서(해주) 安西(海州) 212 안악 安岳 243 안정숙의공주 安貞淑儀公主 42, 86 안주 安州 212, 243 안찰사 按察使 217 안천향 安天餉 253 알찬 關粲 암타도 巖墮島 259 압록강 鴨綠江 213 압해현 壓海縣 17 애견 愛堅 27, 44 애노 哀奴 1.14 애복 哀福 36 애술 哀述 38 애진 哀珍 37

양개 良玠 229	여택재(주역) 麗澤齋(周易) 249
양검 良劍 36, 38, 39, 65	연경군 흠 延慶君 欽 236
0 L 2000 00, 00, 00	현경군 등 延慶右 新 230 연경궁사 延慶宮司 236
양경(체)제 兩京(體)制 69,(222)	연기사상 延基思想 222
양계 兩界 213	연등(회) 燃燈(會) (73, 159, 160), 176,
양규 楊規 211	(177, 220, 238)
양 균왕 梁 鈞王 67,69	연산 連山 59, 73, 112
양근군(현) 楊根郡(縣) 81	연산진(청원군 문의면) 燕山鎭(淸原郡
양근 함(왕)씨 楊根 咸(王)氏 87,92	文義面) 59
양길 梁吉 1, 12, 14, 26	연수원 延壽院 121
양대업 兩大業 185	연안 延安 217
양린 梁麟 256	연운 16주 燕雲 16州 154
양문 良文 29, 34, 45, 62	연인관계(연줄혼인) 連姻關係 195,
양민정책 養民政策 46,65	202, 225
양반사회 兩班社會 204	《연조귀감》 《掾曹龜鑑》 142
양산 陽山 59,64	연주 連珠 37,45
양소업 楊昭業 50	연합국가 聯合國家 140
양우충 梁祐忠 268	연합국가 聯合國家 140 연합정권 聯合政權 139,140
양연 楊演 111	연합정부 聯合政府 139,140
양정재(춘추) 養正齋(春秋) 249	연합체제 聯合體制 140
양주 楊州 21, 37, 148, 222, 240	연화궁주 延和宮主 247
양지 楊志 64	열평 列評 70,84
양천지법 良賤之法 159	염상 廉湘 45,82
양측적 친속관계 兩側的 親屬關係	염주 鹽州 84
230, 253	염해현(신안군 임자면) 鹽海縣(新安郡
양해 梁獬 256	荏子面) 59
양현고 養賢庫 249	염흔 康昕 57
어사대 御史臺 170	영경 英景 56
어사도성 御事都省 147, 170, 178	영광(군) 靈光(郡) (253), 256
언양김씨 彦陽金氏 202	영광 김씨 靈光金氏 203
여계 呂繼 101	영군장군 領軍將軍 25
여송국교 麗宋國交 223	영길 英吉 27
	영남도 嶺南道 151
217	영동도 嶺東道 151
여엄 麗嚴 72	영명사 永明寺 172
여진 女眞 214,224	영삭진 寧朔鎮 116
여진의 무고 女眞의 誣告 155	영순 英順 36
여진정벌 女眞征伐 246	영식 令式 38
여진 추장 女眞酋長 148	영안(안동) 永安(安東) 32, 36, 56, 64
여철 如鐵 159	영안성(촌) 永安城(村) 20
I C 2H390 100	0 E 0 (E) /N × 20(11) 40

영암 靈岩 왕국모 王國髦 232,235 74, 175 영유 英儒 37 왕규 王規 4,41,81~93,98,99,100, 영의 榮儀 109, 121, 126, 128, 157 275 영직 英直 37 왕동 王同 105, 118 영창 英昌 왕랑 王郎 35, 60 141 영흥 永興 70, 213 왕륜사 王輪寺 73 예부시 禮部試 152, 236, 250 왕봉규 王逢規 12,28 예비군 豫備軍 96 왕사 王師 73, 114, 219 예성강 禮成江 72, 222, 224 왕선 王詵 118 왕수 王洙 예식 例食 99, 165 268 예안진 禮安鎭 왕순식 王順式 37, 38, 81, 83, 126, 129 35 예화부인 왕씨 禮和夫人 王氏 왕승의 모반 王承의 謀叛 124 41 5대 10국시대 五代十國時代 49 왕식 王軾 274 5도양계제 5道兩界制 213 왕식렴 王式廉 4,70,84,91~98,157 (209), 210 5도호(부) 5都護(府) 왕신 王信 57 오룡사 법경대사 五龍寺 法鏡大師 83 왕연 王演 101 5묘제 五廟制 145,155 (왕)예 (王)乂 26, 27, 37, 41 5백나한재 五百羅漢齋 왕위계승전 王位繼承戰 114 5복(제도) 五服(制度) 왕위쟁탈전 王位爭奪戰 145, 155 79 5부방리제 五部坊里制 212 왕유(유) 王柔(儒) 41,77,81,131 오어곡성 烏於谷城 64 왕유열 王惟烈 233 오연총 吳延寵 248, 249, 251 왕육 王育 112 오월국 吳越國 49, 50, 51, 59, 109 왕융 王融 101, 109, 117, 122, 170, 174 5월의 사건 五月의 事件 왕의 王毅 259 256 (오)자승 (吳)子升 255 왕(이)가도 王(李)可道 179, 202, 212 5조정적평 五朝政績評 156, 158, 165 왕중유 王仲儒 50 왕철 王鐵 오창 吳昌 229 133 왕충 王忠 오탁 吳卓 255 59,64 오행 五行 왕태소 王台紹 93 229, 230 오흥 吳興 71 왕함윤 王含允 38 옥룡사 玉龍寺 74 외교정책 外交政策 40,48~54,58,66 와룡지(남대지) 臥龍池(南大池) 217 외관태거 外官汰去 209 완산(주)(전주) 完山(州)(全州) 외척귀족 外戚貴族 (14),215 38, 39 외향 外鄕 90 요 堯 82~92.99 왕거 王擧 111 왕건 王建 2, 12, 16~37, 41, 60, 68, 72 요 遼 211, 222 \sim 77, 82 \sim 85, 110, 127, 132, 143 요의 2차 침입 遼의 二次侵入 211 왕경 王景 41, 131 용건 龍建 20, 21, 22, 75 왕경 王瓊 50 용검 龍劍 36, 38, 39, 65 왕광취 王光就 용덕 龍德 276 67, 69

용수 龍樹 위호 位好 256 219 용주 湧州 209 위화진 威化鎭 116 유 伷 106 용주(예천군 용궁면) 龍州(醴泉郡 龍宮 유감 柳旵 268 面) 35, 55, 63 우 俁 237, 252 유경심 柳景深 269 우간의대부 右諫議大夫 173 유교 儒教 77, 78, 160 우문정치 右文政治 109 유교적인 애민사상 儒敎的인 愛民思想 우보궐 右補闕 174 146 우봉 又奉 38,39 유교적 정치이념 儒敎的 政治理念 169, 우봉 牛峯 243 우족 右族 139 유교적 중앙집권체제 儒教的 中央執權 體制 144, 150, 151 우천군 佑天軍 37 운제현 雲梯縣 273 유교정책 儒敎政策 177,178 운주 運州 24, 32, 33, 35, 58, 59, 64 유교정치이념 儒敎政治理念 76,162, 울진 蔚珍 27 164, 170 웅주 熊州 24.33.58.59 유권열 劉權說 83, 105, 133 웅진 熊津 32, 36, 64 유검필 庾黔弼 25, 26, 35, 37, 38, 42, 원구단 圓丘壇 145 58, 59, 81, 156 76, 101, 237 원당 願堂 유긍달 劉兢達 41, 82, 83 원명 圓明 218 유길권 劉吉權 82 원보 元甫 37,71,100,123 유덕영 柳德英 133 원봉 元奉(逢) 28, 34, 45, 62, 64, 134 유록숭 庾祿崇 240 원봉성 학생 元鳳省學生 88,165 유문 有文 63 원성왕 元聖王 26 유방헌 柳邦憲 111,170,173 원신궁주 元信宮主 235 유수(관) 留守(官) 151, (154), 268 원윤 元尹 28, 37, 38, 100, 104, 134 유신 諛臣 167, 181, 203, 208, 240 원융 圓融 218 유신 儒臣 170 유신성 劉新城 83,105 원장태자 元莊太子 86 원종 元宗 1,14 유신지교 惟新之敎 260,261 원종대사비 元宗大師碑 109 유암사 遊巖寺 113 원통사 圓通寺 73 유언유 劉彦儒 170,175 원효 元曉 219 유영 劉英 268 월경원부인 박씨 月鏡院夫人 朴氏 42 유외출신 流外出身 184 월령 月令 160.166.169 유은 劉隱 115 위계정 魏繼廷 237, 246 유인저 柳仁著 236,248 위민정책 爲民政策 46,65 유제 劉齊 265 위봉루 威鳳樓 유주 儒州 103 243 위수여 韋壽餘 121, 123, 208, 210 유진 劉瑨 208, 210 위진남북조 魏晋南北朝 137 유천궁 柳天弓 41 위진남북조시대 魏晋南北朝時代 136 유총 惟寵 229

유충정 劉忠正 209 의제가족 관계 擬制家族 關係 유필 庾弼 274 의창수렴법 義倉收斂法 212 유학사상 儒學思想 74 의창제도 義倉制度 146 유학승 儒學僧 72 의천의 속장경 義天의 續藏經 의학박사 醫學博士 152, 153 유혁 柳赫 272 유협 遊俠 136 의형대 義刑臺 120 유홍 柳洪 202, 232, 235, 236 의화왕후 임씨 義和王后 林氏 유화정책 宥和政策 53,62,65 이겸의 李謙宜 170,177,179 이경필 李景泌 229,231 6관 6官 168 6두품(계열) 六頭品(系列) 165, 169, 이곡 李穀 190 171, (178, 181) 이공수 李公壽 255 이공승 李公升 179,276 6부 6部 147 6정 6사 六正六邪 167, 170, 174 (이)공의 (李)公儀 256 윤관 尹瓘 203, 224, 237~251,255 2군 6위 二軍六衛 233,235 윤선 尹瑄 28,45 이궁제 李弓濟 237 윤선 尹先 257 이달 伊達 29 윤신걸 尹莘傑 233 이몽유 李夢游 109, 170, 174, 175 이보 李甫 229 윤언민 尹彦旼 268 윤언이 尹彦頤 266, 268, 270 이봉원 李逢原 253 윤웅 閏雄 28, 34, 45, 54, 62, 126, 130 이분 李芬 256 윤전 尹全 27,44 이빈 李份 273 윤질 尹質 50 (이)석 (李)碩 228,231 율업 律業 187 이숙 李淑 272 은계종 隱繼宗 71 이숙신 李叔晨 256 은술 殷述 38 이심 李深 272 은천현 銀川縣 178 이양 李陽 155, 166, 169, 170, 174, 176 음보 蔭補 198 이엄 李嚴 72 음서 蔭叙 180, 197, 198 이영 李永 252, 253 음서제(도) 蔭叙制(度) 8,180,(181), 이예 李預 202, 230 183, 184, 195, (196), 197, 198, 225 이오 李瀕 235 음양 비축의 설 陰陽 秘祝의 說 277 이원응 李元膺 274,276 음양오행 陰陽五行 93 (이)원장 (李)元長 253 음양오행설 陰陽五行說 160, 166,169 이위 李瑋 202 음직 蔭職 196.197.236 이유 李愈 268 (이)의 (李)顗 200, 202, 231 이유개 李有開 268 이(유)척량 李(柳)陟良 133 의동 儀同 163 의성부원부인 홍씨 義城府院夫人 洪氏 이자겸 李資謙 7, 202, 230, 242, 247, 42 $251 \sim 262, 264, 270, 271$ 의업 醫業 이자상 李子祥 228 186 의장 義莊 230, 256, 257 이자연 李子淵 200, 202, 215, 227, 228

이자원 李資元 256 인예순덕왕후 仁睿順德王后 227 이자위 李子威 229, 230, 231 인왕경 仁王經 219 이자의 李資義 $225 \sim 237, 245, 248$ 인일 仁一 37 이자훈(자량) 李資訓(資凉) 229,(230) 인절현비 仁節賢妃 227 (이)작 李綽 인주 이씨 仁州李氏 7,215,216,227. 229, (230) 이작승 李綽升 228, 231, 235, 241, 247, 248 274, 275 (이)전 (李)顓 200 인평왕후 仁平王后 227 이정 李頲 202, 228 일강 一康 28, 54, 62, 126 이제정 李濟挺 일관 日官 240, 260 265 이제현 李齊賢 88, 98, 214 일기도 壹岐島 225 이존 李存 일길간 一吉干 57 256 이주연 李周衍 일길찬 一吉粲 268 33 170, 178 일리천 一利川 이주헌 李周憲 37 이중 李仲 267, 268 일리천전투 一利川戰鬪 29,130 이중부 李仲孚 263, 267 일모산성 一牟山城 32,36,59,64 이중약 李仲若 253 일본국사 日本國使 225 이지미 李之美 (256), 262일선군(선산) 一善郡(善山) 37 이지백 李知白 170, 176, 177, 178 일어진 昵於鎭 34, 54 이지심 李知深 일의생 日醫生 277 225 (이)지언 (李)之彦 임간 林幹 256 241 (이)지원 (李)之元 임경청 林景淸 256 262, 263, 270 (이)지윤 (李)之允 256 임극정 任克正 273, 275 이지저 李之氐 임명필 林明弼 263, 265 80.81 (이)지포 (李)之浦 임언 林彦 256 50 이직(자) 吏職(者) 142, 149 임영 林英 268 이진 李瑱 268 임완 林完 224, 267 이찬 伊飡 36 임원역 林原驛 263, 264, 265 임원준 任元濬 이천서씨 利川徐氏 180, 203 253 이천전투 利川戰鬪 임원후(애) 任元厚(敱) 27 202, 258, 262, 이총언 李悤言 142 263, 266, 267, 268, 273 이현맹 李玄孟 229 임의 任懿 240, 247 (이)호 (李)顥 (200), 202, 228, (231) 임자성 林自成 229 이흔암 伊昕巖 임장부 林長富 24, 28, 45 97 이흥우 李興祐 115 임존 林存 252, 253 이희능 李希能 임존군 任存郡 177 익령 翼嶺 27 임춘길 林春吉 24, 25, 26, 45, 133 익양후 翼陽侯 임춘길 모반사건 林春吉 謀叛事件 31 275, 279 인경현비 仁敬賢妃 227 임희 林曦 80 인과응보설 因果應報說 114 입양득성 入養得姓 216 인목덕비 仁穆德妃 227

116

장평진 長平鎭

[ㅈ]

자모정식법 子母停息法 217 자사 6조 刺史六條 167, 168, 170, 174 자삼(층) 紫衫(層) 104, 120, 121, 124 자운사 慈雲寺 73 《자치통감》《資治通鑑》 67, 69 자황포 柘黃袍 80 작위귀족 爵位貴族 192 작제건 作帝建 20 잡류 雜類 188, 285 잡업 雜業 120, 186 잡업감시 雜業監試 187 잡업계층 雜業階層 121 잡직 雜職 215 장경궁주 이씨 長慶宮主 李氏 장군 將軍 12, 14, 21, 38, 43, 54, 125, 142, 229, 231, 237, 255, 256 장길 張吉 30 장단 한씨 長湍韓氏 179 장두 莊頭 137 장락궁 長樂宮 223 장리 將吏 18 장리 長吏 143 장명 長命 29, 43, 126, 129 장병 掌兵 133 장보고 張保皐 12,13,20 장빈 張彬 50 장언징 張彦澄 51 장연 張淵 243 장완 張琬 224 장원 莊園 14, 73 장원정 長源亭 222 장위부 掌衛部 106 장작(소)감 將作(少)監 101 장전 長田 149 장정 @丁 188 장중 張仲 229

장철 張喆

272

장홍점 張洪占 237 장화왕후 오씨 莊和王后 吳氏 41,79, 80, 132 장획 臧獲 262 재보 宰輔 202 재상 宰相 203 재성 在城 70 재신 宰臣 197, 208 재암성 載巖城 30,34,54 재조대장경 再雕大藏經 212 재초 齋醮 277 재쇠 齋衰 145 재추 宰樞 191 재충 在忠 63 재회 齋會 113, 114 저수봉 猪首峯 저족 猪足 26 적전 籍田 145 적전례 籍田禮 155, 176 전간 全幹 253 전공지 田拱之 111 전병권 典兵權 134 전보인 全輔仁 153 전수도감 轉輸都監 107 전시과 田柴科 181, 215 전시과제 田柴科制 전운사 轉運使 143 전이산 轉伊山 35,60 전장 田莊 137 전전군 殿前軍 108 전제정치 專制政治 157 전주 全州 148, 173, 212 전주 유씨 全州柳氏 전중성 殿中省 121 절도순관대리평사 節度巡官大理評事 101 절령 岊嶺 268 절영도 絶影島 33

정강왕 定康王

13

정토신앙 淨土信仰 238 정겸유 鄭謙儒 148, 170, 178 정관의 치 貞觀의 治 100 정함 鄭誠 273~277, 279 《정관정요》 《貞觀政要》 100, 116, 156 정항 鄭沆 263 정광 正匡 112 제단사 諸壇史 186 정규음서 定規蔭叙 197 제석원 帝釋院 정극영 鄭克永 252, 253 제술 製述 185 정근 正近 71 제술과 製述科 189,220 정기대감 精騎大監 22 제술업 製述業 186,189 정덕왕후 유씨 貞德王后 柳氏 42,86 제위보 濟危寶 113 정략결혼 政略結婚 82,131 제위포 濟危鋪 261 정령 政令 279 제1차 거란의 침입 第1次 契丹의 侵入 정목부인 왕씨 貞穆夫人 王氏 41 6 제전사 祭奠使 272 정문 鄭文 188,189 정문 旌門 146 조간 助杆 38 정배걸 鄭倍傑 189, 219 조공무역품 朝貢貿易品 224 정서 鄭叙 273, 274, 275, 279 조광 趙匡 268.269 조령 趙寧 257 정서의 탄핵사건 鄭叙의 彈劾事件 274 정수 正秀 113 조물군 曹物郡 55, 58, 63 정수개 鄭壽開 273 조물군 전투 曹物郡戰鬪 29,86 정습명 鄭襲明 272, 273 조물성 曹物城 64 정승 政丞 35 소선광도朝鮮公 燾22228조선국공朝鮮國公202 조선공 도 朝鮮公 燾 227 정신현비 이씨 貞信賢妃 李氏 조영 趙英 정안 임씨 定安任氏 202 146 정언 正言 278 조예 皂隷 234 조익 趙翌 109,117 조장 租藏 143,173 정우현 鄭又玄 169, 170, 174, 178 정윤(태자) 正胤(태자) 37 조지린 趙之遴 170,178 정의왕후 貞懿王后 227 조진약 曺晋若 269 정전 丁田 137 정정숙 鄭旌淑 268 조충 趙冲 202 정정좌 鄭貞佐 229 족정 足丁 216 정조 正朝 32, 37, 38 종묘 宗廟 160 정종 定宗 5,91~98,154~158 종부시 宗簿寺 121 정종 靖宗 179 종실록 宗室祿 234 정주 貞州 133 종적 宗籍 71 정주유씨 貞州柳氏 87, 122, 127, 202, 종희 宗熙 38 208, 235, 236 좌우주무 左右酒務 239 정지상 鄭知常 259, 263, 265, 266, 268, 좌우집정 겸내사령제 左右執政兼內史令 269, 270 制 124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 淨土寺法鏡大 좌ㆍ우집정제 左ㆍ右執政制 123 師慈燈塔碑 83,105 좌춘방 左春坊 236

주군의 별호 州郡의 別號 150	중앙집권적 귀족정치 中央執權的 貴族
주궁 珠宮 223	政治 162, 164, 170
주농경 主農卿 177	중앙집권적 유교정치 中央執權的 儒敎
주례 周禮 166	政治 178
주목 州牧 148	중앙집권적 정치형태 中央執權的 政治
주몽 朱蒙 17,68	形態 160
주부 注簿 236	중앙집권체제의 완성 中央執權體制의
주부군현사 州府郡縣史 186	完成 147
중서시랑평장사 中書侍郞平章事 267	《중용》 《中庸》 220
《주역》 《周易》 161	중원경 中原京 82
주이 朱异 163	중원군 中原郡 83
주저 周佇 224	중원도 中原道 151
주전관 鑄錢官 239	중원부 中原府 82
주전도감 鑄錢都監 239	중추원 中樞院 170, 175, 178
주전정책 鑄錢政策 235, 242	중페비사 重幣卑辭 2
주현제 州縣制 151	중화 中和 133
죽령 竹嶺 64	중화정책 中華政策 178, 182
죽전 竹箭 33	증통국사 證通國師 86
죽주 竹州 14,84	지계심정문제 地界審定問題 224
조라 從自 27	지공거 知貢擧 103, 109, 117, 123, 170~
준풍 峻豊 105, 115, 118	175, 178, 183, 220
준행 俊行 32	지광 智光 218
준홍 俊弘 83, 105, 118	지덕쇠왕설 地德衰王說 7
준홍・왕동 참소사건 俊弘・王同讒訴	지록연 智祿延 255
事件 106	지리도참사상 地理圖讖思想 240
중간층 中間層 216	지리도참설 地理圖讖說 223
중관 中官 124	지리산 智異山 33
중광전 重光殿 89,97,248	지방관의 파견 地方官의 派遣 155
중국계 귀화인 中國系 歸化人 157,165	지방군 地方軍 96
중군 中軍 38	지방분권 地方分權 140
중군사 中軍使 177	지방제도 地方制度 212
주군수 中軍帥 268	지방제도 地方制度 212 지방조직 地方組織 209,210 지방토호 地方土豪 215
중단경 中壇卿 104	지방토호 地方土豪 215
중대광 重大匡 94	지방통제책 地方統制策 134
중대사 中臺使 210	지방향리직 地方鄕吏職 155
중랑장 中郎將 229	지방향리직의 개편 地方鄕吏職의 改編
중령군 中領軍 163	155
중생사 衆生寺 164	지복신 池福臣 256
중서령 中書令 232	지소 智炤 229
중앙군 中央軍 96	지식계급 知識階級 22

지엄 智儼 219 질영 質榮 84 지장사 地藏寺 73 집사성 執事省 77 지전 紙田 집정 執政 118 149 지지용 智之用 272 [ㅊ] 지호 池顥 256 지훤 池萱 61 찬유 璨幽 72 직달 直達 31 찬행 撰行 48 직량 直良 63 참위 讖緯 직명 直明 30, 36, 56 참위설 讖緯說 222 직산 최씨 稷山崔氏 203 참지정사 參知政事 171, 176, 210, 236, 진경보 陳景甫 268 263, 268 진골 眞骨 13, 24, 26, 27, 166, 204 참쇠 斬衰 145 진골 귀족 眞骨貴族 1,75 창부 倉部 125, 137, 149 진관선사비문 眞觀禪師碑文 122 창사 倉史 186 진긍 晋兢 111 채충순 蔡忠順 208, 210, 219 진기 珍奇 229 책명사 冊命使 115 진도 珍島 21, 256 처첩제도 **妻妾制度** 216 진도군 珍島郡 60 척준경 拓俊京 255, 256, 258, 259, 260, 진례(금산) 進禮(錦山) 262, 264 진림 陳林 71 천개 天開 268 진보 眞寶 34, 54, 62 천거 薦擧 181 진보성주 眞寶城主 29,45 천견충의 天遣忠義 진사 進士 185 천고 天鼓 93 진사시험 進士試驗 123 천덕전 天德殿 97 진선 陳瑄 24, 26, 45 천리장성 千里長城 213 진성여왕 眞聖女王 13, 14, 16, 20, 26, 천무군 天武軍 37 72 천문 天文 175 진숙 陳淑 268 천불도량 千佛道場 114 진위 震位 236 천선사 天禪寺 73 진전사원 眞殿寺院 245 천수 天授 2,19,67 진주 眞州 33, 39, 62 천수사 天壽寺 243, 245, 250 진주 鎭州 25, 81, 118 천안 天安 32, 118 진주 晋州 33, 61, 63, 66, 148, 212 천안도독부사 天安都督府使 86 진천 鎭川 80,87 천안부 天安府 37,275 진천 임씨 鎭川林氏 80,81,92 천안부원군 天安府院君 118 진철대사 이엄 眞澈大師 利嚴 83 천추태후 千秋太后 208, 209 진한공 유 辰韓公 愉 227 천태종 天台宗 218, 235, 237, 238, 242 진호 眞虎 33,55,57,58 철륵 鐵勒 37. 38 진회 秦檜 272 철옹 鐵甕 96 진휼제 賑恤制 213 철원 鐵圓 1, 14, 17, 20, 22, 24, 26, 69

철원최씨 鐵原崔氏 203 $98, 99, 102, 108 \sim 110, 116, 118, 122, 124,$ 첨사부 詹事府 236, 237 147, 154~158, 161~179, 182, 203, 219 청광보살 靑光菩薩 17 최승로의 시무 28조 崔承老의 時務 28 24 청길 淸吉 條 155 청령 淸寧 219 최식 崔湜 257, 259 청송 靑松 243 최언위 崔彦撝 77,95,109,208 청연(각) 淸讌(閣) 251 최업 崔業 115 청주 靑州 $21 \sim 27, 31, 32, 44, 59, 81,$ 최연 崔淵 229 87, 128, 148, 212 최원신 崔元信 179 청주 김씨 淸州金氏 82, 92 최유청 崔惟淸 75, 203, 258, 274, 275 청주남원부인 淸州南院夫人 최유칭 崔袞偁 278 청주 이씨 淸州李氏 179, 202 최윤의 崔允儀 276 청주 한씨 淸州韓氏 203 최은함 崔殷含 88, 164, 165, 166 청천강 淸川江 70 최응 崔凝 18, 74, 75, 77 청하후 淸河侯 171, 181 최응청 崔應淸 276 청해진 淸海鎭 12.20 최이 崔怡 203 초제 醮祭 160 최자성 崔滋盛 202 **초**조대장경 初雕大藏經 211 최자영 崔子英 274 초직 初職 190, 198 최적 崔迪 233 초팔성 草八城 63 최제안 崔齊顔 179 촌주 村主 12, 142 최지몽 崔知夢 77, 87, 89, 100, 109, 총마 摠馬 33, 44 121, 123, 124, 175, 181 총신제 寵臣制 276 최질 등의 난 崔質 등의 亂 179 총혜수좌 경 聰慧首座 璟 227 최충 崔冲 202, 216, 219, 213 최거린 崔巨鱗 253 최충백 崔忠白 229 최거업 崔居業 111 최치원 崔致遠 212 최공도 崔公徒 220 최탁 崔卓 255, 256 최광균 崔光鈞 277 최항 崔沆 208, 210, 213 최광범 崔光範 111 최행 崔幸 229 최광윤 崔光胤 95 최행귀 崔行歸 109, 117, 122 최량 崔亮 $111, 170 \sim 172, 177 \sim 179$ 최홍사 崔洪嗣 248, 249 최민용 崔敏庸 249 최홍재 崔弘宰 203, 252, 254, 259 최사염 崔思琰 256 추언규 酋彦規 51 최사위 崔士威 202, 210 추향도 椎香徒 96 최사전 崔思全 256 추허조 鄒許祖 35, 63 최사추 崔思諏 202, 237, 240, 248 춘방 春坊 237 최섬 崔暹 103, 111, 170, 171, 172, 178 춘양 春讓 28, 54, 62 최숙청 崔淑淸 274 춘주 春州 최승로 崔丞魯 165 출장입상 出將入相 22 최승로 崔承老 $6,77,88 \sim 90,93,94,$ 출판인쇄문화 出版印刷文化 221

충담 忠湛 72 《忠義集》 《충의집》 263 충주 忠州 21, 22, 24, 41, 81, 82, 105, 133, 148, 210, 212 충주 유씨 忠州劉氏 82~87,122,208 친송정책 親宋政策 115 친시 親試 124 친신라 외교정책 親新羅 外交政策 친신라정책 親新羅政策 29,30,34,35, 48, 52, 54, 55, 57, 66 친왕건 親王建 30 친위군 親衛軍 108 7대사적(실록) 七代事蹟(實錄) 213 7재 七齋 249 75 도 안 무 사 七十五道 安 撫 使 210 청제건원 稱帝建元 270 청제건원론 稱帝建元論 265, 266, 268, 269

[≡]

탄령 炭嶺 38 탄문 坦文 72, 114 탐라 耽羅 214 탐수원 探守院 224 태묘 太廟 145 태복감 太卜監 212 대복경 太僕卿 50 태봉 泰封 2, 14, 15, 21, 22, 32, 41, 62, 67, 68, 69, 107 태사 太師 42, 172, 272 태사령 太史令 256 태상부 太常府 104 태수 太守 22 태위 太尉 42 태자교육제도 太子教育制度 212 태자사 太子師 212 대자첨사부 太子詹事府 236 태자 태 太子 泰 86 태자태사 太子太師 171

태조(왕건) 太祖(王建) 2,3,19,27,41, 48, 49, 50, 51, 54, 57, 60, 66, 73, 76, 77, 79, 85, 107, 126, 130, 131, 132, 135, 156, 158, 165, 172, 175 태조공신 太祖功臣 81,150,177 태조의 혼인정책 太祖의 婚姻政策 127 태학 太學 192, 194 대학조교 太學助敎 토산현 土山縣 178 토성 土姓 142 토성조 土姓條 143 토호 土豪 139 통덕 通德 96 통사 通事 236 통주 通州 211 특사음서 特賜蔭叙 197

[亚]

파진찬 波珍粲 22, 24, 26, 36 파평 坡平 243 과평 윤씨 坡平尹氏 197, 203, 216 팔관회 八關會 73, 144, 145, 159, 160, 176, 177, 219, 238 8목 八牧 249 8목체제 八牧體制 213 패강진 浿江鎭 19, 83, 84, 85, 87, 92, 98 패서도 浿西道 151, 209 《편년강목》《編年綱目》 75 평농서사 評農書史 105, 118 평량후 平凉侯 279 평산 平山 19, 133, 142 평산 박씨 平山朴氏 83, 87, 92, 94, 127, 203 평산 유씨 平山庾氏 127 평서산 平西山 35, 60 평양 平壤 67,68,69,70,222 평양공 기 平壤公 基 227, 228

평양 조씨 平壤趙氏 197 평장사 平章事 203, 210, 229, 230, 252, 263, 268, 276 평주 平州 42, 84 포정전 布政殿 67 품관 品官 194 풍수도참설 風水圖讖說 94, 95 풍수지리 도참사상 風水地理 圖讖思想 268 풍수지리사상 風水地理思想 74, 75, 76, 77, 264 풍수지리설 風水地理說 7, 221

[ㅎ]

하곡 河曲 30, 32, 36, 56, 64 하군사 下軍使 177 하남 河南 73 하남도 河南道 151 하북 河北 141 하지현 下枝縣 28, 34, 45, 54, 62,134 하지현장군 下枝縣將軍 134 학사 學士 23 학사원 學士院 108 학위 學院 137 한교여 韓皦如 252 한국화 韓國華 154,155 한륜 韓綸 253 한림박사 翰林博士 173 한림학사 翰林學士 102, 103, 109, 110, 172, 173 한4군 漢四郡 49 한산 漢山 222 한산후(균) 漢山侯(昀) 226, 227, 228, 230, 231, 235 《한서》 《漢書》 168,174 한순명 韓順明 37 한신일 韓申一 33 한안인 韓安仁 251, 252, 253, 258 한안인파 韓安仁派 274

(한)안중 (韓)安中 253 한양 漢陽 222 한언공 韓彦恭 145, 170, 175, 179, 208 한유충 韓惟忠 203, 258, 270 한인 閑人 216 한인경 韓藺卿 111 한자순 韓自純 한조 韓祚 179 한주(유충) 韓柱(惟忠) 253 (한)충 (韓)冲 253 한품서용 限品叙用 185 한품제 限品制 198 한화정책 漢化政策 173 함부 咸富 146 함서 咸舒 31, 32 함종 咸從 256 합주(합천) 陝州(陝川) 33,61,62,63, 66, 256 항렬법 行列法 216 해동갑족 海東甲族 200 해동역사 海東繹史 67,72 해동의 유종 海東의 儒宗 202 해동통보 海東通寶 239 해상세력 海上勢力 12, 19, 21, 58, 72 해상활동 海上活動 19,21,28 해안사 海安寺 175 해양도 海陽道 151 해주 海州 70,73,148,212 해주 최씨 海州崔氏 202, 216 행권 行卷 189 행이 行移 109 행적 行寂 72 행과 行波 84 행훈 行訓 28 향 鄕 140, 185, 188 향공 鄕貢 213 향공진사 鄕頁進士 173 향리 鄕吏 12,138 향리소인 鄕里小人 90 향리의 승진규정 鄕吏의 昇進規定 186

향리직 鄕吏職 호부상서 戶部尚書 233 213 향리층 鄕吏層 186 호시장 互市場 224 향병 鄕兵 호장 戶長 97, 149, 186, 213 143 향식 香寔 23 호정 戶正 186 향의귀순성주 向義歸順城主 호족 豪族 3~6,11~13,16,19,20,26, 121 향직 鄕職 $41, 43 \sim 45, 53, 57, 72, 74, 75, 77, 96, 100,$ 향호 鄕豪 138, 139, 148, 152, 155, 161, 118, 120, 125, 126, 128, 129, 135, 136, 138, 244, 245 139, 141, 143, 169, 178, 192 허경 許慶 233 호족공신 계열 豪族功臣系列 120,121 허백 許伯 호족공신 세력 豪族功臣勢力 117,118, 190 허승법 許僧法 216 120, 123 허시 虛市 218 호족내혼제 豪族內婚制 140 호족세력 豪族勢力 2,23~25,29,30, 허월 許越 28, 83 허재 許載 203, 257 $32,42\sim44,72\sim74,77$ 호족연합군 豪族聯合軍 96 헌덕왕 憲德王 13.84 헌사 憲司 190 호족연합정권 豪族聯合政權 125.127. 128, 132, 135, 136, 141, 142, 144 헌안왕 憲安王 15,16 헌애왕후 獻哀王后 208 호족연합정권론자 豪族聯合政權論者 헌종례 獻種禮 176 130, 132, 133 헌종의 獻種儀 호족의 시대 豪族의 時代 1,144 166 헌종의 선양 獻宗의 禪讓 232, 235 호족포섭정책 豪族包攝政策 46,65, 헌창 憲昌 72. 27 현율 玄律 128, 133 호족포섭책 豪族包攝策 30 현릉 顯陵 호족화 豪族化 93 19, 20 현수 賢首 219 호종단 胡宗旦 224 현종 顯宗 6, 170, 180, 210, 211 혼인정책 婚姻政策 41 현화사 玄化寺 211,230 홍견 洪見 71 현휘 玄暉 홍관 洪灌 72 255 혈구 穴口 115 홍문공도 弘文公徒 189 혈구진 穴口鎭 19,20 홍문숭화치리공신 弘文崇化致理功臣 협대무역 夾帶貿易 224 181 형순 邢順 50 홍성 홍씨 洪城 洪氏 86 혜공왕 惠恭王 13 홍술 洪術 29, 34, 45, 54, 62 혜소 禁炤 218 홍유 洪儒 18, 25, 26, 37, 42, 45, 77, 81, 142 혜종 惠宗(武) 4,79,80~82,83,87, 90, 92, 93, 99, 100, 128, 130, 157, 158 홍유후 弘儒侯 212 홍이서 洪彛敍 혜화 惠和 44 262, 263 호경 鎬京 20,207,222 홍화사 弘化寺 113 호구단자 戶口單子 247 화엄교학 華嚴敎學 73,112 호국신앙 護國信仰 74 화엄도장 華嚴道場 73

후백제 포위정책 後百濟包圍政策 화엄종 華嚴宗 112, 114, 230, 238 화엄학 華嚴學 219 60, 61, 64, 66 화전량면책 和戰兩面策 40 후삼국 後三國 22, 39, 43, 59, 61, 65, 화폐유통정책 貨幣流通政策 239 $72 \sim 75$ 후삼국시대 後三國時代 화합정책 和合政策 44 환관 宦官 274 후삼국 통일 後三國統一 환선길 桓宣吉 23, 28, 45, 129 후생참적 後生讒賊 118 환선길의 반역사건 桓宣吉의 反逆事件 후선 侯善 229 후작 侯爵 24, 126 192 환자 宦者 후주 後周 273 101, 107, 115 황도 皇都 105 《후한서》 《後漢書》 136 황문상 黃文裳 269 훈신 勳臣 203 황보금산 皇甫金山 37 훈신숙장 勳臣宿將 118 황보제공 皇甫悌恭 42, 86 훈요10조 訓要十條 70,74,76,78,145, 황산군(논산) 黃山郡(論山) 38 226, 272 황영 黃榮 229 훈전 勳田 121, 124, 198 황유현 黃兪顯 233,237 훤달 萱達 37 황주 黃州 42, 70, 84, 111, 148, 212 훤량 萱良 54 황주량 黃周亮 휘암 輝品 213 51 황주첨 黃周瞻 268 휴가제 休假制 155 황주 황보씨 黃州黃甫氏 87, 122, 208 흑산도 黑山島 273 황중보 黃中寶 233, 237 흑수 黑水 37.38 화충현 黃忠現 흑양군 黑壤郡 229 81 황형 黃瑩 237 흑창 黑倉 146 회북 懷北 31 혼강 昕康 38 횡천 조씨 橫川趙氏 202 흔계 昕繼 37 효공왕 孝恭王 16, 17, 21, 22, 72 흔악 断岳 37 효렴 孝康 흥령사징효대사보인탑비 興寧寺澄曉大 56 효봉 孝奉 38 師寶印塔碑 83 후경 侯景 163 흥달 興達 54,63 (후)고구려 (後)高句麗 15,69 흥례부 興禮府 34,156 후고려 後高麗 16,67,68 흥방공주 興芳公主 86 후광주원부인 왕씨 後廣州院夫人 王氏 홍복원부인 홍씨 興福院夫人 洪氏 86 81 흥술 與述 64 후당 後唐 흥왕사 興王寺 28, $49 \sim 51$ 218, 222 후량 後梁 흥왕사대사 지소 興王寺大師 智炤 229 50 후백제 後百濟 1,14~16,21,24,27, 흥종 興宗 63 $31 \sim 38, 44, 48 \sim 61, 63, 65, 73$ 흥화랑군 興化郞君 90 후백제 고립정책 後百濟孤立政策 48, 흥화진 興化鎭 211 66 희강왕 僖康王 13

희능 希能 177 희종 熙宗 179

집 필 자

개	요 하현강
	I.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1.	고려의 건국과 호족 박한설
2.	왕권의 확립과정과 호족김갑동
3.	고려 귀족사회의 성립김갑동
4	고려사회 지배세력의 성격론 박용운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1.	시련의 극복과 체제의 정비 박성봉
2.	귀족사회의 전개와 동요남인국

한 국 사

12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1993년 11월 25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3년 11월 30일 발행 (No. 94-14-7-38)

> 발행인 국 사 편 찬 위 원 회 위원장 박 영 석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9544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60-1 전화 730-8670